

연구보고 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좌동훈 · 남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저 자 좌동훈, 남화성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좌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남화성(시흥시정연구원 연구부 초빙연구위원) 연구보조원_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	--

차 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25-수시01

I. 서론

-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

II. 선행 연구 및 유사 전문가 양성체계

- | | |
|---------------------------------|----|
| 1. 청소년상담사의 개념 및 양성체계 | 9 |
|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선행 연구고찰 | 17 |
| 3. 국내·외 유사 전문가 자격 및 양성체계 | 39 |
| 4. 시사점 | 44 |

III. 행정통계 및 제도 개선요구 자료 분석

- | | |
|--|----|
| 1. 청소년상담사관련 행정통계 자료 분석 | 49 |
| 2. 청소년상담사 응시현황 자료 및 제도 개선요구
자료 분석 | 58 |
| 3. 시사점 | 64 |

IV. FGI 및 전문가 의견조사	
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FGI	67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84
3. 시사점	115
 V. 정책 제언	
1. 제언	123
 참고문헌	143
 부록	149

표 목차

표 I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진행일정	6
표 II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9
표 II -2. 청소년상담사 자격급수별 주요 역할과 세부내용	11
표 II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12
표 II -4.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13
표 II -5. 청소년상담사 자격 보수교육대상	13
표 II -6.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14
표 II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구성원 응시자격 요건	15
표 II -8.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관련 비교	18
표 II -9.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상담관련분야’ 정의 비교	21
표 II -10. 김창대 외(2013)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 자격 (2등급 체계)	23
표 II -11. 오익수 외(1994)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원 자격 급수별 교육과정안의 교과목 구성	26
표 II -12. 황순길 외(2000)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27
표 II -13. 황순길 외(2005)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28
표 II -14. 서영석, 김동일(2013)이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29
표 II -15. 김창대 외(2013)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30
표 II -16. 김동일 외(2017)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31
표 II -17. 최창욱과 좌동훈(2021)이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과목 개편안(연구진 안)	32
표 II -18. 김동일과 이주영(2022)이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표준과정 영역과 자격검정 교과목 구성	33

표 II-19. 김동일 외(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별 핵심 직무능력	36
표 II-20.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요건	41
표 II-21. 해외 주요국가별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의 요건	44
표 III-1. 2003~2024년 청소년상담사 양성현황	49
표 III-2. 청소년상담사 최종학력 현황	50
표 III-3. 2021~202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공 현황(직원)	51
표 III-4. 202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_근무 분야	52
표 III-5. 2021~202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격취득 현황(상담관련)	52
표 III-6. 2023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기여도	53
표 III-7. 2021~202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격 종류 현황(상담관련)	54
표 III-8. 2023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외 취득 자격증	56
표 III-9. 2023년 청소년상담사 취업 상황과 미취업 사유	56
표 III-10. 2023년 청소년상담사 현재 이직 계획과 향후 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기관	57
표 III-11. 2022~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 총 현황	58
표 III-1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 현황	59
표 III-13. 2021~202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현황	60
표 III-14. 2019~2025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규모 및 수료인원 추이	61
표 III-15. 2022~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61
표 III-16. 2022~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62
표 III-17. 2022~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시험)	63
표 IV-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FGI 일정 및 대상	67
표 IV-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질문 내용_FGI	68
표 IV-3. FGI 참여대상자	69
표 IV-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주제 유형화	70
표 IV-5.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특성	85
표 IV-6.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질문 내용_전문가 의견조사	86
표 IV-7. 학위 수준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전반적인 적절성	88
표 IV-8. 학위 수준(박사)에 따른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90

표 IV-9. 학위 수준(석사)에 따른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91
표 IV-10. 학위 수준에 따른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92
표 IV-11.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기준 선호도 : (-) 현행 학과명 중심 ↔ (+) 과목이수제 도입	94
표 IV-12. 청소년상담사 응시요건 중 실무경력 대체 방안 도입에 관한 의견	96
표 IV-13. 바람직한 자격 등급 체계 : (-) 현행 3등급 체계 ↔ (+) 2등급(1급·2급) 체계	99
표 IV-14. 현행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현장 직무 수행 연관성	102
표 IV-15.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필수·선택 구성 : (-) 현행 유지 ↔ (+) 필수 중심 개편	103
표 IV-16.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필기시험의 적절성	105
표 IV-17.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면접시험의 적절성	106
표 IV-18.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평가 결과 반영 제도 도입의 적절성	110
표 IV-19.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과 자격 갱신 연계 제도 도입의 적절성	112
표 V-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정책제언	124
표 V-2. 청소년상담사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129
표 V-3. 청소년상담사 등급체계 개정(안) 예시	134

그림 목차

그림 II-1. 청소년상담사 양성 체계	12
그림 II-2. 청소년상담사 활동분야	14
그림 II-3. 청소년상담 직무모형(안)	38
그림 IV-1. 학위 수준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전반적인 적절성	88
그림 IV-2. 학위 수준(박사)에 따른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89
그림 IV-3. 학위 수준(석사)에 따른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90
그림 IV-4. 학위 수준(학사)에 따른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92
그림 IV-5.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기준 선호도 : (-) 현행 학과명 중심 ↔ (+) 과목이수제 도입	93
그림 IV-6. 청소년상담사 응시요건 중 실무경력 대체 방안 도입에 관한 의견	95
그림 IV-7. 바람직한 자격 등급 체계 : (-) 현행 3등급 체계 ↔ (+) 2등급(1급·2급) 체계	98
그림 IV-8. 현행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현장 직무 수행 연관성	101
그림 IV-9.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필수·선택 구성 : (-) 현행 유지 ↔ (+) 필수 중심 개편	103
그림 IV-10.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필기시험의 적절성	105
그림 IV-11.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면접시험의 적절성	106
그림 IV-12.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평가 결과 반영 제도 도입의 적절성	109
그림 IV-13.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과 자격 갱신 연계 제도 도입의 적절성	111
그림 V-1.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역할 분담 방안(안)	127

그림 V-2. 청소년상담사 등급체계 개정(안)	133
그림 V-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1안)	139
그림 V-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2안)	139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3년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예방에 대한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상담사의 양성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자격검정과 자격 연수, 보수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 제도 시행 20년이 경과했으나, 사회 변화에 따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검정 과목 등 관련 내용이 별다른 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회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회 변화가 급속히 변화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 혼란을 겪는 청소년이 심리·정서적으로 적응하고 올바른 판단 아래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제도 변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등급제도 개편 및 현장실습 도입 등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운영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연구(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서영석, 김동일, 고운영, 김민선, 김애란, 최민영, 2013; 최창욱, 좌동훈, 2021; 최창욱, 좌동훈, 남화성, 정지희, 이종원, 2020)에서 청소년상담사의 3등급 제도, 응시 자격, 과목의 적정성, 연수 체계와 보수교육 운영 방식, 자격 취득 후 인력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결과를 제안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1)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7.1.1., 2023.12.28. 개정] (인출일자 2025. 03. 28.)

사회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에 대해 서도 전공 및 학력에 따라 실무경력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상담자 자격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예비 청소년상담사와 현장 청소년상담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교육 등 양성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양성체계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청소년상담사 자격(등급)제도 개정과 관련한 검토안 마련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제도와 관련한 응시 자격, 검정 과목과 면접, 제출 서류, 자격 연수, 보수교육 등에 대한 개선 논의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별다른 재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기준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변화된 사회에서 청소년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자격검정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예비 청소년상담사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 도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및 양성체계의 발전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장 청소년상담사의 직무 역량 증진과 향후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관련 선행 연구와 정부 정책 현황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청소년상담사 직무 및 역할과 자격검정 제도 운영 현황을 통해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연구(김동일 외, 2017; 김창대 외, 2013; 서영석 외, 2013; 최창욱, 좌동훈, 2021; 최창욱 외, 2020)에서 청소년상담사의 3등급 제도, 응시 자격, 과목의 적정성, 연수 체계와 보수교육 운영 방식, 자격 취득 후 인력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2) 청소년상담사 관련 행정자료 검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자격 연수,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수집·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관련 민원 사항과 통계자료 등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FGI, 전문가 의견조사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와 예비 청소년상담사를 준비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 FGI,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청소년상담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5회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 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기관 종사자 1회, 대학교수 1회, 법률 관련 종사자 2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FGI는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청소년상담사 4 집단(각 5인)을 각 1회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의견 조사는 FGI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조사 문항 및 전문가 FGI와 의견조사 논의 내용 관련 검토,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정책제언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및 양성체계의 발전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기관인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표 I-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진행일정

구분	일시	참석대상	내용
1차	2025.04.02.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수시과제 진행을 위한 사전협의
2차	2025.05.13.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쟁점 논의, 관련 행정자료 공유 요청 등
3차	2025.05.20.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쟁점 논의, 관련기관간 자료 공유 협의 등
4차	2025.10.01.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정책제안 공유 및 협의 등



제2장 선행 연구 및 유사 전문가 양성체계

- 1. 청소년상담사의 개념 및 양성체계
-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선행 연구고찰
- 3. 국내·외 유사 전문가 자격 및 양성체계
- 4. 시사점

2

선행 연구 및 유사 전문가 양성체계

1. 청소년상담사의 개념 및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공인 자격이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3급 체계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시행되어 온 20여 년간 변경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국가자격증 응시 제한 등 차별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학력 차별 철폐를 위해 비전공자인 일반학사, 전문학사, 고졸의 실무경력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표 II-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기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3)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급	응시자격 기준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③)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 관련) (인출일 : 2025. 03. 26)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등
-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참가)경력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상담 방식에 대한 추가적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시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상담 방식에 대한 추가적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별 주요 역할이 나뉘져 있는데 1급인 경우, 청소년상담사 지도 인력으로서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급인 경우, 기간 인력으로서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상담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의 전반적인 업무, 전문적 개입,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3급인 경우, 실행 인력으로서 유능한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이 주어지며,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II-2. 청소년상담사 자격급수별 주요 역할과 세부내용

급수	주요 역할	세부 내용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상담사 (기간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청소년상담사란? 급별역할 (인출일 : 2025. 03. 26.)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는 성평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의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0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검정제도 운영의 총괄 역할로서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 최종합격까지 운영을 맡고 있다. 자격연수와 관련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자격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급별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총 연수 시간을 100시간으로 청소년상담사에게 필요한 학식과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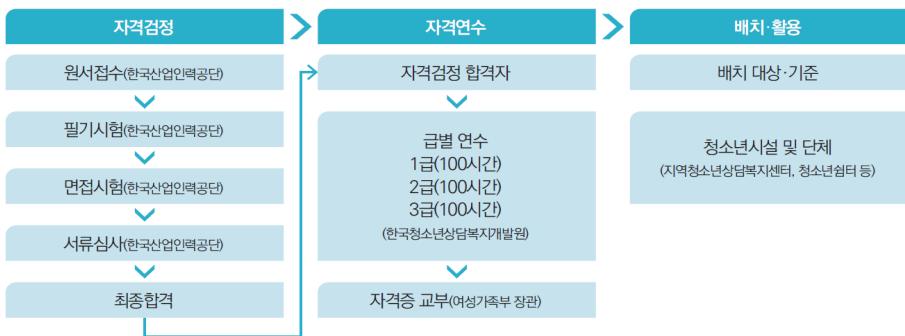


그림 II-1. 청소년상담사 양성 체계

* 출처: 여성가족부 (2024). 2023 청소년백서, p.521.

청소년상담사 각 응시 등급별 세부 자격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사 1급에서는 필수과목으로는 3과목, 선택과목으로는 4과목 중 2과목, 청소년상담사 2급은 필수과목 4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 중 2과목, 청소년상담사 3급인 경우에는 필수과목 5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 중 1과목을 정하고 필기 합격 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을 하게 된다.

표 II-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필기	면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이상심리 	필기	면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심리 상담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상담의 기초 학습이론 	필기	면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비고: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관련) (인출일 : 2025. 03. 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자 자질 향상, 차별화된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 양성, 청소년상담의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시간은 1급, 2급, 3급 모두 100시간 이상으로 연수과제 및 이러닝 연수 45시간과 집합 연수 5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모두 연수 과목을 5과목으로 정하고 있다.

표 II-4.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등급	연수과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수퍼비전 • 청소년 문제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위기개입 II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과정과 기법 • 청소년 위기개입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상담 • 청소년 진로·학업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상담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개인상담 • 청소년 상담 현장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집단상담 • 청소년 발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매체상담

* 출처: 여성가족부 (2024). 2023 청소년백서, p.521.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은 청소년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격 보수교육 대상으로 보수교육 의무 대상 기관에서 청소년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모두 포함한다.

표 II-5. 청소년상담사 자격 보수교육대상

교육대상	내용
의무대상자	<p>보수교육 의무대상 기관에서 청소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입 단체,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증 고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 종학교) 및 Wee클래스·센터·스쿨 등</p>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보수교육. (인출일: 2025. 03. 31.)

또한,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사광역사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3명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1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6.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사광역사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 시설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 관련) (인출일 : 2025. 03. 27.)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외에도 청소년상담사 배치가 필요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 법무부, 군, 학교, 대학, 개인 상담연구소, 기업상담실, 사회복지기관 등 청소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상담사 배치를 통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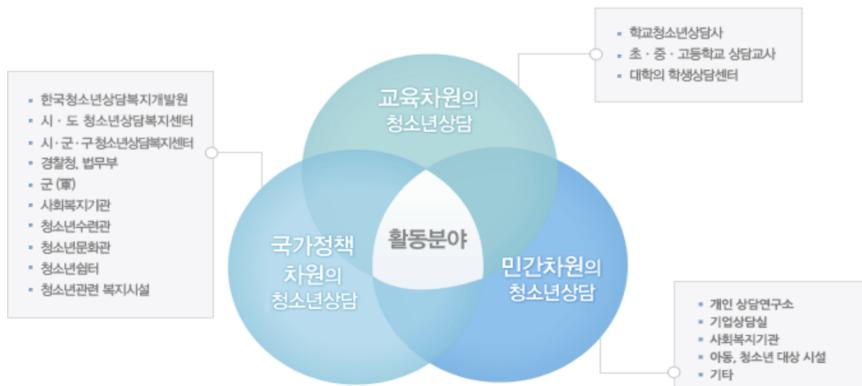


그림 II-2. 청소년상담사 활동분야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청소년상담사란? 정의 및 활동 (인출일 : 2025. 03. 27.)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응시자격 요건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은 시·도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응시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다. 응시 자격 요건의 가장 큰 차이는 학위 취득 여부보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보다 실무경력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응시 자격 요건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요건에서는 상담복지 분야 (박사/석사/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을 해당 급수에 맞게 기간을 채운다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원을 고용하는 측에서 청소년상담사 배치 기준에 맞게 인원을 고용한 후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표 II-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구성원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의 장 (센터장)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도 지사 가 인정하는 사람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도·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리 업무 수행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구 분	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팀장)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3)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p> <p>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 심리사(이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 한다)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6) 국민의 삶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성평등기족부정관이 자정하는 단체·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p>	<p>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p> <p>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p>
청소년 대상	<p>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p> <p>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p>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p> <p>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p>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p>
실무 업무 수행 직원 (팀원)	<p>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p>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p> <p>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p>	<p>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p>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p>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p> <p>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p>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p>

구 분	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8)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성평등기족부정관이 지정하는 단체·학회 *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p>	<p>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출처: 여성가족부 (2025).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Ⅱ).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서울: 여성가족부.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선행 연구고찰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자격시험(필기) 운영 시기, 응시자격 기준, 자격 취득 절차(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순서) 변경, 자격시험(필기)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조정 등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구조적·운영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 고찰 분석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며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주요 쟁점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응시 자격 요건

여러 연구자들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응시 자격 요건과 관련한 개선 필요 사항을 지적해왔다. 청소년상담 관련 자격에 관한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제정(법률 제4477호, 1991.12.31.) 당시 ‘청소년상담원 자격증’으로 명명되면서 최초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청소년기본법 제62조에서는 청소년상담원 자격증 교부가 가능한 대상으로 ‘상담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명시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상담원 자격증 교부 절차가 정해진 양성 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이후 검정 절차에 응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현행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청소년상담 관련 자격과 관련한 관계 법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소년상담 관련 자격제도의 시행은 2001년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거쳐 2003년 ‘청소년상담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이후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관련 연구를 수행한 황순길, 이창호, 안희정, 조은경(2000)은 ‘선 양성-후 검정’을 원칙으로 하던 청소년상담원자격증 교부 절차를 ‘선 검정-후 연수’ 체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선 검정’ 도입에 따른 ‘등급별 응시(지원) 자격(안)’을 포함한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응시 자격(안)의 상당 부분은 2001년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었으며, 2003년 제1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실시 이후 2025년 현재 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8.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관련 비교

등급	1991년 제정 당시 기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황순길 외(2000)가 제안한 개정안	현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개정 2019. 6. 11.〉
1급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복지학 분야 또는 기타 문화관련부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기족부 분야 또는 그 밖에 정하는 상담관련학문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상담실무경력 2년 포함)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기족부 분야 또는 그 밖에 정하는 상담관련학문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상담원으로서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체육 청소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기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급	1991년 제정 당시 기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황순길 외(2000)가 제안한 개정안	현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개정 2019. 6. 11.)
2급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학위(상담실무경력 1년 포함)를 취득한 자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원으로서 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체육 청소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기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상담실무경력 1년 포함)를 취득한 자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자로서 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 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인출일: 2025.06.02.), 황순길 외(2000) pp.80-81.

또한, 1991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 관련 법령의 제정 당시부터 황순길 외(2000)가 제안한 개정안, 그리고 현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이르는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의 중요한 기준인 ‘상담관련분야’에 관한 정의는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에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에 제시되고 있는 ‘상담관련분야’의 범위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문화관광부령 제68호, 2002. 8. 24.)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관련법 제정 당시 시행규칙의 상담관련분야 정의와 2002년 일부 개정된 시행규칙의 정의를 비교할 때,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1991년 관련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정신분석, 인지치료, 행동치료, 적응심리 등 임상심리학 관련 분야 일부 과목이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황순길 외(2000)가 상담관련 학부·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상담관련분야 교과목을 분석하여 제안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안의 과목 중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과목들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상담사를 포함한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을 연구한 한상철, 길은배, 김진호 외(2009)는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 자격요건 검증 과정에서 학과·전공의 명칭에 따른 관련 과목 이수 인정 과정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에서 전문대학 청소년 관련 학과 졸업생의 실무 경력 요건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 자격 미부여 등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과 함께 청소년지도자의 중요한 두 축을 구성하는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 청소년 관련 학과·전공보다 심리·상담 관련 학과·전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청소년 관련 학과·전공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II-9.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상담관련분야' 정의 비교

구분	1991년 관련법 제정 당시	황순길 외(2000)가 제안한 개정안	현행 법령 기준
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	제39조 (상담관련분야) 영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체육 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라 함은 상담원라상담기법면접원라청소년발달·기족상담진로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행동평가)-정신분석·인지치료·행동치료·이상심리·성격심리·적응심리·개별사회사업·상담교육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이상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제39조 (상담관련분야) 영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라 함은 필수과목으로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라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청소년발달집단상담·심리검사(행동평가)·심리측정 및 평가·이상심리·성격심리·적응심리·사회복지·자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상담교육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중 2과목 이상을, 공통과목으로 진로상담, 기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학습이론, 인간관계론, 성격이론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성평 등기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라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기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 4. 27., 2008. 3. 3., 2010. 3. 1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인출일: 2025.06.02.), 황순길 외(2000) pp.80-81.

이와 관련하여, 서영석 외(2013)는 청소년상담사 3급의 전문성과 역할 모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담관련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인증제의 중장기적 실시, 상담 관련 민간학회의 자격증과 비교하여 다소 부족한 실무경력에 관한 조건 강화, 비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상담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상담 인력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제도 도입 등의 방안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대학의 상담 관련 학과명을 포괄하고, 국가자격으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에 대한 유입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 1급 박사 이상, 2급 석사 이상, 3급 학사 이상 등 학위 수준에 따른 응시 자격 부여의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학력에 따른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김동일 외(2017)는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관련 쟁점으로서 학과명과 동일유사과목 관련 내용을 지적하였다. 학과명의 경우 기준의 9개 상담 관련 학과명 조합에 기반한 응시자격 기준은 신설 학과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표현예술치료학, 미술치료학, 불교·기독교상담학 등 신생 학문 분야와 범죄심리학, 사회복지경영학 등 인접 학문 분야의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았다(김동일 외, 2017). 또한, 자격검정 과목과 상담 관련 분야 교과목 간 불일치로 인해 응시 자격 과목과 자격검정 과목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상담관련 분야 학과 및 교과목 채택 여부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신설되는 학과와 교과목의 응시 자격 판단이 어려워지며, 동일·유사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김동일 외, 2017). 이에, 응시 자격 기준의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기존의 9개 학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 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에 상담학과 심리치료학의 2개 학과를 추가하고, 이에 포함된 11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에 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김동일 외, 2017).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청소년상담사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응시 자격, 자격검정 과목, 자격연수가 일치된 체계성을 갖추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이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대학의 학과명이나 교과목 구성과 그 응시 자격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면, 김창대 외(2013)는 학위 수준보다 실무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현행 제도가 상담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만 응시 기회를 집중시킴으로써, 타 전공자들이 상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고졸자에게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기준은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 형성 측면에서 현실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김창대 외(2013)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 자격의 개선을 위하여 학위와 학과(전공) 중심의 응시자격 기준을 실무경험과 이수 과목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한 상담 관련 학과 인증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3급 체계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2급 체계로 변경하거나, 3급 체계를 유지하되 각급수별 청소년상담 직무 수행 수준을 다시 정의하고 이에 부합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 자격 및 상담 실무경력 수련 내용 및 기준안을 제시하였다(김창대 외, 2013). 다음 표의 내용은 기존 청소년상담사 1급과 2급을 통합하여 청소년상담 지도 인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개정 1급의 응시자

격과, 학부 수준에서 일정 정도의 청소년상담 관련 과목 이수, 상담관련 경력 이수 등을 마친자로서, 업무 범위는 현행 2급과 3급에 걸치는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전제로 제안한 개정 2급 응시 자격의 내용이다.

표 II-10. 김창대 외(2013)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 자격안 (2등급 체계)

		응시 자격	상담실무경력 수련 내용 및 기준
1급 (기준 1급+ 2급)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필수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총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과목 4과목(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2.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청소년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필수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총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영역에서 4과목(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람	1) 상담수련경력 2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 (1) 개인상담(매년 120시간씩 총 240시간 이상) · 상담자 경험-10회기 이상 지속 5사례 포함 (3종 이상 심리검사 활용 5사례 포함) · 내담자 경험-지속적인 10회기 이상 상담 · 수퍼비전 경험-5회 이상 수퍼비전 (2) 집단상담(매년 60시간씩 총 120시간 이상) · 지도자 경험-15시간 이상 지속 2집단 포함 · 집단원 경험 -15시간 이상 지속 비구조화 1집단 포함 · 수퍼비전 경험-5회 이상 수퍼비전 (3) 상담행정 · 청소년상담실 행정 지원 15시간 이상 · 청소년상담관련 행사 지원 15시간 이상
			2) 기타 수련 요건 (1) 상담관련 각종 연수 (매년 20시간씩 총 40시간 이상) · 사례발표회 5회 이상 포함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 (2) 공개사례발표 · 개인상담사례발표 2사례(각 10회기 이상 지속) · 집단상담사례발표 1집단(15시간 이상 지속)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필수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총 3과목 (9학점) 이상, 선택과목 3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영역 중 필수과목 3과목 이상(9학점), 선택과목 3과목(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 상담수련경력 1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 (1) 개인상담 (120시간 이상) · 상담자 경험-5회기 이상 지속 3사례 포함 (3종 이상 심리검사 활용 3사례 포함) · 내담자 경험-지속적인 5회기 이상 상담 · 수퍼비전 경험-3회 이상 수퍼비전 (2) 집단상담(60시간 이상) · 지도자 경험-10시간 이상 지속 2집단 포함 · 집단원 경험 -15시간 이상 지속 비구조화 1집단 포함 (3) 상담행정

응시 자격	상담실무경력 수련 내용 및 기준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실 행정 지원 10시간 이상 · 청소년상담관련 행사 지원 10시간 이상 <p>2) 기타 수련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관련 각종 연수 20시간 · 사례발표회 3회 이상 포함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 (2) 공개사례발표 · 개인상담사례발표 2사례(각 5회기 이상 지속) · 집단상담사례발표 1집단(10시간 이상 지속)

* 출처: 김창대 외(2013). p.111-116의 내용을 수정하였음.

김창대 외(2013)는 기존 청소년상담사 3등급 체계에서 1급의 경우 ‘상담행정’과 ‘상담’을, 2급의 경우 ‘상담’을, 3급의 경우 ‘상담’과 ‘상담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응시 자격이 학위별로 구분되어 있어 실제 청소년상담 현장의 직무 전문성과 일치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관련 분야 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이 대학 학부 졸업자를 2급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3등급을 유지할 경우 3급에 대한 새로운 직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김창대 외, 2013). 이에, 청소년상담사 3급을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집단상담의 공동 지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을 하며,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 실행인력’으로 정의할 것을 주장하였다(김창대 외, 2013).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1급의 경우 상담관련 학회에서 상담자교육 전문가에게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 후 5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응시 자격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2급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상담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 중에서 4년 이상 청소년상담 수퍼바이저의 지도 아래 상담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창대 외, 2013).

최창욱과 좌동훈(2021)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개선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현장 청소년상담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학문적 전공 인정 기준과 상담 실무경력 관리 체계의 두 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먼저, 학문적 전공 인정 기준 측면에서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한 ‘상담관련 분야’의 포괄적 범위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즉,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

전공 이외에도 시행규칙이 정한 과목 중 4개 이상의 과목을 교육과정에 채택하고 있는 학과·전공 졸업자의 응시 자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 실습 교육 미흡 전공이나 청소년 상담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학과까지 인정되는 현행 제도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또는 과목 이수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최창욱, 좌동훈, 2021). 이는 단순 교과목 수 기준이 아닌, 청소년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정부 차원의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학문적 다양성과 전문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성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창욱과 좌동훈(2021)은 상담 실무경력 인정 범위와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현재 운영되는 자격제도에서는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개인상담, 집단 상담, 심리검사 실적 등으로 한정하고, 청소년상담사가 종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위기지원·행정업무 등은 제외하면서 상담 실무경력이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종사 경력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최창욱, 좌동훈, 2021) 또한, 경력 인정 방법이 방대한 증빙서류 및 기관장 확인서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응시자의 서류 제출 준비 어려움이 커지고, 제출 자료의 신뢰성 확인 절차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담사별 경력 데이터 통합 관리 방안이나 디지털 플랫폼 기반 실시간 경력 등록 시스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동일과 이주영(2022)의 연구에서는 응시자격의 판단 기준을 교육과정의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을 학과명 중심에서 실제 이수한 교육과정(과목·실습)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김동일, 이주영, 2022). 그리고 이를 위해서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목명·교수요목의 표준화를 선행하고 이를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검증 절차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동일·유사과목 판정 혼선과 서류 민원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설·융합 전공의 포섭성을 높이고 자격·검정·연수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김동일, 이주영, 2022).

2) 자격검정 과목 체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영역 중 응시 자격과 관련한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 양성 과정 및 자격검정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과목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주요 기관인 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지식과 소양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 도입 방안을 초기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오익수, 이명선, 남상인(1994)의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인력의 양성체계가 대학교육의 대학원 과정과 심리·상담 관련 학회를 통해 양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과정은 개설되는 과정의 수가 충분치 못하고 실습과 경험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학회 차원의 양성은 양성되는 인력의 양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청소년상담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오익수 외, 1994). 이에, 오익수 외(1994)는 당시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체육청소년부령 제21호, 1993.2.1. 제정) [별표 9]에 제시된 '청소년상담원 이수 과정별 이수 과목'과 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김택호(1993)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이수과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각 과목별 강의, 실습, 세미나 등 교육과정 소요 필요 시간을 제시하였다.

표 II-11. 오익수 외(1994)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원 자격 급수별 교육과정안의 교과목 구성

등급	교과 과목
1급	청소년행동평가, 상담교육(수퍼비전), 상담행정, 비교상담정책, 상담발달사, 한국사회와 상담, 상담 이론세미나, 상담문제세미나, 상담연구방법론, 상담자성장과정Ⅲ, 상담과정과기법Ⅲ
2급	상담과정과기법Ⅰ, 상담과정과기법Ⅱ, 상담과정과기법Ⅲ, 가족상담, 집단상담, 학교상담·산업상담·기관상담 중 택1, 청소년상담정책, 청소년이상심리, 청소년문제진단평가, 상담자성장과정Ⅱ
3급	청소년발달, 청소년생활지도, 청소년심리검사, 상담이론Ⅰ, 상담이론Ⅱ, 상담면접Ⅰ, 진로상담, 학업 상담, 청소년문화, 측정과개인차, 상담자성장과정Ⅰ, 상담자성장과정Ⅱ

* 출처: 오익수 외 (1994). p.117의 자료를 수정하였음.

황순길 외(2000)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제도의 기본적 방향과 운영방안을 연구하면서 상담관련전공(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 및 가족관련학 등)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 학부 및 대학원과 상담관련학회의 상담 교과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안을 청소년상담사 1급 5과목(선택 2과목), 2급 6과목(선택 2과목), 3급 6과목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제안하였다. 선택과

목은 1급과 2급에 한해 제시되었으며, 주로 청소년 문제 관련 과목으로써 1급이 2급에 비해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설정되었다(황순길 외, 2000).

이러한 접근은 2급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상담의 기간인력으로 보고, 상담 분야에 관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 영역별로 세분화된 전문영역 확보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황순길 외, 2000). 황순길 외(2000)가 제안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은 2002년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17681호, 2002.7.24.)에 따라 '[별표 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에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1급의 '청소년상담관련 법과 행정' 과목이 '청소년관련법과 행정'으로, 3급의 '인간 이해론'이 '청소년이해론 또는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12. 황순길 외(2000)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등급	검정과목	과목 수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사 교육 및 수퍼비전·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택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상담관련 법과 행정 5과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선택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이상심리 6과목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이해론· 상담이론· 심리측정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학습이론 6과목

* 출처: 황순길 외 (2000). p.54의 자료를 수정하였음.

황순길 외(2005)는 2002년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실시된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의 자격검정 및 연수과목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기존의 학력 기준의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별 자격검정 과목 구분을 현장 청소년상담사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새로운 자격검정 과목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자격검정 과목 개정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제안하였다.

이 개정안은 당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이 청소년 발달 특성에 기반한 실제 사례

대응 기술보다는 일반 상담이론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담현장의 실제 직무를 반영하여 각 급별로 필요 기본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들로 개정하고자 하였다는데 점에서 아주 의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이를 반영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13. 황순길 외(2005)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등급	2005년 당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황순길 외(2005) 검정과목 개정안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 교육 및 수퍼비전 ·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택: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 상담 중 2과목 	5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수퍼비전 · 청소년관련 법과 정책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상담조직운영 · 청소년위기상담 	5과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선택: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 상담 중 2과목 	6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청소년상담행정 · 선택: 진로상담, 학업상담, 가족상담 중 1과목 	6과목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론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발달심리 · 학습이론 · 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6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론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검사 · 청소년 성격 및 발달 · 청소년문제론 · 선택: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복지론 중 1과목 	6과목

* 출처: 황순길 외 (2005). p.60의 자료를 수정하였음.

서영석과 김동일(2013)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온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을 사회 변화와 청소년상담사 각 급별 역할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선택과목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과목에 따라 응시자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 간 검정 과목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등급별 직무 수행 역량의 계층적 발전 구조가 명확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서영석, 김동일, 2013).

이에 청소년상담사 자격 1급, 3급의 선택과목 중 일부를 통합하여 조정하고, 자격 급수 별 현장 직무 수행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목을 추가하는 등 과목의 구성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앞서 황순길 외(2005)가 제안한 자격검정 과목 개선안의 제안 취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상담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대학의 청소년관련 학과·전공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과목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영석과 김동일의 개정안 또한 실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의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14. 서영석, 김동일(2013)이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등급	2013년 당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별표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서영석, 김동일(2013) 검정과목 개정안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택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 상담 중 2과목 	5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통합)위기상담 	4과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선택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6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 (수정)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심리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선택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추가)부모상담 중 2과목 	6과목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 선택 :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 1과목 	6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청소년발달심리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집단상담의 기초 포함) · 학습이론 · 선택 : (통합)청소년학 개론, (추가)청소년 복지 및 행정 중 1과목 	5과목

* 출처: 서영석, 김동일(2013). pp.130-131의 자료를 수정하였음.

청소년상담 현장 직무 수행을 고려한 검정과목 개선 필요성은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2013)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김창대 외(2013)는 멜파이조사, 인력현황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콜로키움 등을 통해 도출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에 관한 쟁점 중 하나로 중복 검정 과목의 통폐합 필요성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미흡한 일부

검정 과목의 폐지와 청소년상담 현장의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과목 추가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가 자격 급수에 따라서 담당하는 직무와 주요 역할을 고려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를 2급 체계(1급 청소년상담지도 인력, 2급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로 개선하는 경우와 3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3급의 직무를 청소년상담 실행 인력으로 정의하여 청소년상담 현장 진입에 앞서 청소년의 이해를 근간으로 기본적인 청소년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등급별 검정과목 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II-15. 김창대 외(2013)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등급 (직무)	2급 체계 개선시	3급 체계 개선시	
1급 (청소년 상담 지도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자 교육 · 청소년 심리검사 · 청소년 상담정책, 청소년 상담연구 중 1 과목 선택 · 청소년 이상심리, 청소년 위기상담 중 1 과목 선택 	<p>4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교육 · 청소년상담정책 · 상담연구, 프로그램 개발 중 1과목 선택 · 청소년문제와 상담, 지역사회상담 중 1 과목 선택 	4과목
2급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발달 · 청소년 상담이론 · 청소년 집단상담, 청소년 가족상담, 청소년 학업상담, 청소년 진로상담 중 2과목 선택 	<p>4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이론 · 심리검사 · 상담정책, 상담교육 중 1과목 선택 · 청소년상담복지, 위기상담 중 1과목 선택 	4과목
3급 (청소년 상담 실행 인력)	<p>(2급으로 통합·조정)</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발달 · 상담이론 · 집단상담, 가족상담 중 1과목 선택 · 학업상담, 진로상담 중 1과목 선택 	4과목

* 출처: 김창대 외 (2013) p.130, p.120의 자료를 수정하였음.

다음으로 김동일 외(2017)는 변화하는 청소년상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급별 역할, 직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역량과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대학의 학과·전공에서 운영하는 과목을 분석하여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요건의 교과목 인정 기준과 자격검정 과목, 자격 연수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검정과목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김동일 외(2017)의 두 가지 개선안 모두 청소년상담 현장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내용등을 반영하면서 기준에 적용되어 온 각 급별 선택과목을 통합한 각 급별로 모든 5개 또는 4개 과목을 필수 검정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청소년상담사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응시 자격, 자격검정 과목, 자격 연수가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김동일 외(2017)의 개선안 또한 실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개선안으로 보인다.

표 II-16. 김동일 외(2017)가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검정과목안

등급 (직무)	1안: 전 급 공통 필수 5과목 안	2안: 전 급 공통 필수 4과목 안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교육 및 사례 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청소년위기상담(비행, 중독, 위기 성 등) · 청소년정신병리 	유지 유지 유지 통합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교육 및 사례 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청소년위기상담(비행, 중독, 위기 성 등) 	유지 유지 유지 통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이상심리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청소년상담 이론과 실제(개인, 집단, 가족) · 청소년교육상담(학업, 진로 등) 	유지 유지 수정 통합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방법(개인, 집단, 가족)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 청소년교육상담(학업, 진로 등) 	통합 유지 유지 통합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론 · 집단상담의 기초 · 발달심리 · 심리측정 및 평가 기초 · 청소년이해와 지원 	유지 유지 유지 수정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론 · 심리측정 및 평가 기초 · 발달심리 · 청소년이해와 지원 	유지 수정 유지 통합

* 출처: 김동일 외 (2017) p.276, p.278의 자료를 수정하였음.

이상의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상담 현장의 수행 직무와 청소년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 대학 학과·전공의 교육과정 구성과 응시자격 인정, 사회 변화를 반영한 청소년상담 대응 분야 등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창우, 외(2020)는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와 관련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 종사자 대상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각 급수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의 현장 활용 정도, 선택과목

폐지에 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과목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은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선택과목 폐지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최창욱 외, 2020).

이어서 최창욱과 좌동훈(2021)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21년 제1차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21.3.26.)에서 논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청소년상담사 각 급수별 현장에서의 직무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의 급수별 적절성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역량 분석과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표와 같은 자격검정 과목 개편안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의 개선안이 단순히 특정 과목을 폐지하거나 수정·추가하는 방식을 지향하기에 앞서, 청소년상담사 표준(기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 자격과 관련한 인정 전공 범위에 포함되는 교과목의 구성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필수과목이 포함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연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최창욱, 좌동훈, 2021).

표 II-17. 최창욱과 좌동훈(2021)이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과목 개편안(연구진 안)

등급	기존 검정 과목		연구진 최종(안)
1급	필수 (3)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수 (4)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청소년 위기상담 (비행, 성, 약물, 위기 통합)	
	선택 (2)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선택 (0) (선택과목 폐지)	
2급	필수 (4)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필수 (3)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청소년상담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진로와 학업 상담	
	선택 (2)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선택 (0) (선택과목 폐지)	

등급	기준 검정 과목	연구진 최종(안)	
3급	필수 (5) ·상담이론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발달심리 ·학습이론	필수 (5) ·상담이론 ·집단상담 ·가족상담 ·이상심리 ·청소년학 개론	선택 (0) (선택과목 폐지)
	선택 (1)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출처: 최창욱, 좌동훈 (2021). p.183의 자료를 수정하였음.

한편, 김동일과 이주영(2022)의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검정과목을 표준교육과정의 5개 영역(상담기초, 상담실습, 인간·청소년 이해, 영역별 상담, 상담 실무 및 행정)과 정합되도록 재구성하고, 강의목표·성과·내용·과제 등 강의계획서의 표준 요소를 도입하여 교육·검정 간 평가 준거를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동일과 이주영(2022)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의 선택과목의 과다를 축소하고 핵심역량 중심 필수화를 확대함으로써 급수 간 연계성과 NCS 정합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편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가 검정과목-표준교육과정-연수의 삼중 연계를 실질화하는 실행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김동일, 이주영, 2022).

표 II-18. 김동일과 이주영(2022)이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표준과정 영역과 자격검정 교과목 구성

영역 구분	조작적 정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교과목 명	
		필수	선택
상담 기초	상담이론, 심리평가, 집단상담 등 상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다루는 과목	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심리평가, 상담윤리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 실습	학위과정 중에서 상담을 수련하는 과목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 면접원리, 상담현장(기관) 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청소년 이해	청소년을 포함한 인간 발달, 성격, 정서적인 이해를 다루는 과목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청소년이해론

영역 구분	조작적 정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교과목 명	
		필수	선택
영역별 상담	진로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등 특수 분야의 상담을 다루는 과목	진로상담, 가족상담, 위기상담, 부모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
상담 실무 및 행정	연구방법, 프로그램 개발, 기관 운영 등 상담 실무, 연구, 행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과목	상담법제도	상담교육, 연구방법론, 프로그램 개발, 상담 행정 및 정책

* 출처: 김동일, 이주영 (2022). p.129의 자료를 수정하였음.

3) 자격 등급 체계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등급은 청소년상담사의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상담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되는 체계로 볼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도입 이전부터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된 자격인 청소년상담원은 3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체계가 학위 수준에 따라 응시 자격, 검정 과목, 연수 과정 등에서 차등을 두어 설계되는데 그치면서, 자격 급수별 청소년 상담 전문성과 현장 직무 역할 수행 상황이 상호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청소년상담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수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상철 외(2009)는 학부 졸업생 3급, 석사 졸업생 2급, 박사 졸업생 1급으로 구성된 등급별 응시 자격 체계는 학위 없이는 상담실무 경력을 갖추기 어려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 졸업생의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학별 위주와 관련 학문 중심의 체제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한상철 외, 2009).

이와 관련하여, 서영석 외(2013)는 현행 3등급으로 구분된 청소년상담사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청소년상담사 3급의 전문성과 역할 모호성 등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사 3급 취득자가 청소년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보다는 기관의 행정이나 보조 업무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서영석 외, 2013). 또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국가자격제도로서 대학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관점을 고려하여 사이버대학,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서영석 외, 2013). 그러나 청소년상담사 3급의 전문성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상담관련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인증제를 실시하고, 청소년상담사 직무분석을 통해 각 급수별 직무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서영석 외, 2013).

이와 달리, 김창대 외(2013)는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민간 자격인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3급을 전문 상담인력이 아닌 행정원이나 보조원으로만 인식하면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전문성과 상담자의 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창대 외, 2013). 이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등급 체계를 2등급 체계로 개편하되,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기회를 유지하고, 기존의 청소년상담사 3급을 2급으로, 청소년상담사 2급을 1급으로 격상하며,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일정 청소년상담 경력을 갖추면 수퍼바이저(supervisor)로서의 기능을 별도로 부여함으로써 기능적으로는 3급을 유지하되 자격 검정 체계는 2등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김창대 외, 2013).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써 상담관련 학과 인증제 도입과 청소년상담 직무능력 기준(국가직무능력표준) 마련, 청소년상담사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서영석 외(2013)가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체계를 3급으로 유지하자는 점과는 그 의견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교육과정 인증, 직무 명확화 등에서 그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일 외(2017)는 청소년상담사의 각 급별 직무 능력과 주요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 분석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별 핵심 직무능력과 이를 반영한 일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향후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보았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별 직무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격 급수별 검정 과목의 구성 조정·변경, 상담실무 경력 인정 등을 통한 급별 연수시간 차등 적용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동일 외, 2017).

표 II-19. 김동일 외(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별 핵심 직무능력

자격 급수	문헌 분석 결과	센터 실무자 주요 역량 인식 조사 결과	콜로키움 도출 직무능력 결과
1급	청소년상담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상담자 교육훈련, 사례 개념화	조직관리, 리더십, 정책개발, 비전제시, 경영관리, 마케팅
2급	청소년상담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청소년 각 문제 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상담자 윤리, 문제 영역별 지식	상담역량
3급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	내담자 응대, 상담자 윤리, 청소년발달과 문화 이해	행정업무 관련 역량

* 출처: 김동일 외(2017)의 연구 결과를 요약·정리하였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동일과 아주영(202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구분을 학위가 아닌 직무와 역량에 기초해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김동일과 아주영(202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인터뷰·FGI 결과를 바탕으로 1급은 청소년상담 기관운영·상담·코칭, 2급은 상담수행 및 3급 지원, 3급은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등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필요 시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의 2등급 체계 전환 또는 3급 ‘실행인력’의 직무 명료화와 수퍼비전 경로 분리를 병행하여 배치와 승급, 역량개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동일, 아주영, 2022). 김동일과 아주영(2022)은 이러한 재정의가 현장 인력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자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기타 쟁점사항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검정 과목, 응시 체계와 관련된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과 청소년상담사 자격 부여 이후의 연수나 청소년상담사 수급·배치 등의 측면 등에 관한 개선 방안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제도가 상담 전문가에 대한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 동시에 실제 청소년상담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 보유자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떤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즉, 청소년상담 현장의 정책 품질을 보장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과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상담관련분야 학과·전공의 인정 기준 개선 과정에서 청소년상담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자격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몇 시간이나 진행되어야 하는지, 연수 교육과정은 자격 급수별로 어떻게 달라질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영석 외(2013)는 자격 급수별 역할에 어울리는 과목을 구성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면접시험의 과정과 내용을 체계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현행 면접시험 체계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현행 집합교육 형태의 자격 연수를 개선하여 연수 형태 및 지역의 다양화, 연수과목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상담사 1급의 연수 시간을 축소하는 등 자격 급수별로 차등 적용하고, 상담실무 경력에 따른 연수시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서영석 외, 2013). 또한, 김동일 외(2017)는 온라인 기반 사전 연수 시간의 확대, 청소년상담 현장에서의 실습 시간과 상담실무 경력 인정에 기반한 자격연수 시간 조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상담사 수급과 선발, 배치와 관련한 개선방안 필요성을 지적한 연구들도 확인되고 있다. 서영석 외(2013)는 청소년상담사 수급 및 선발 인원의 개선과 조정을 위해서 자격 급수별 취득자 비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난이도 및 합격기준 조정, 청소년상담사 1급 취득자를 위한 우대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들 간의

급수별 분포가 불균형하여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가 청소년상담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별 수급과 배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창욱 외(2020)는 청소년상담사 양성 체계 전반에 관한 재구축 방안을 연구하면서 청소년상담복지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응시 자격 인정 기준 및 자격 등급 체계의 적절성, 응시 과목별 유용성, 청소년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상담사 자격 양성 체계가 청소년상담 현장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별 직무를 고려한 배치 현황 분석 및 양성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최창욱 외, 2020).



그림 II-3. 청소년상담 직무모형(안)

* 주: 겹선 표시 능력단위는 현행 NCS 능력단위를 재조정한 것이고, 점선 표시한 능력단위는 기타 응답을 토대로 추가한 것임.

* 출처: 최창욱 외 (2020). p.214

또한, 최창욱 외(202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청소년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의 구성체계와 취업 기관과 수행 직무, 자격 급수 또는 직급별 구체적인 역량의 내용과 수준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청소년상담복지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능력 단위에 기초한 직무모형안을 그림 IV-3과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역할과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와 연계한 단계적인 표준교육과정 도입 로드맵 수립 필요성을 지적한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김동일과 이주영(2022)은 청소년상담사의 정의와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역할·업무의 법적 보호와 직무 경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단계적 도입 로드맵(1단계: 교과 목·교수요목 표준화 및 응시조건 변경 → 2단계: 교수자 자격·실습 요건 → 3단계: 평가·인증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나아가 면접평가 표준화, 온라인·차등 연수, 경력 디지털 관리, 수급·배치의 정량 예측 등의 문제들과 연동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동일, 이주영, 2022).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법적 기반과 운영 측면의 정합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신뢰성과 청소년상담 현장의 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김동일, 이주영, 2022).

3. 국내·외 유사 전문가 자격 및 양성체계⁴⁾

이 장에서는 국내외 유사 전문가 자격 및 양성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손보영, 임지숙, 백상은(2024)의 연구에서 제시된 국내 심리상담 전문가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 자격 중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와 민간 자격증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심리상담 관련 자격은 대부분 학사학위 혹은 석사학위를 최소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자격 중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석사학위,

4) 손보영, 임지숙, 백상은(2024).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성: 해외 법제화 사례와 국내 자격 제도 비교 연구를 요약 정리된 내용임.

2급은 학사학위를 최소 학력으로 두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인 경우는 석사학위, 2급은 학사학위, 3급은 고졸을 최소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 자격 중 상담심리사와 전문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는데 1급은 석사학위, 2급은 학사학위를 최소 학력으로 보고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는 등급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석사학위를 최소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자격에 따라 수련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사는 자격취득을 위한 별도의 수련 과정이 없으며. 그 외 자격은 자격급별로 수련 시간이 차이가 있다. 대체로 1급 자격증은 통상 3년 정도 수련기간을 두고 최소 720시간이나 3,000시간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급 자격증은 최소 1년 이상의 수련기간에 최소 180시간이나 1,000시간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 및 시간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전체 수련에 대한 총 수련시간을 제시하기보다 개별 수련 내용에 관한 최소수련 요건을 회기 수, 사례 수, 혹은 시간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내 자격의 자격 검정은 국가 자격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지 않는 반면, 청소년상담사는 서류심사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진행하며 면접 합격 후 자격연수 과정을 거쳐 최종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민간자격인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에서는 자격시험을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자격 대부분 보수교육이 있지만, 자격 갱신 조건에는 단순히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학술행사 혹은 사례 심포지움, 윤리 교육 등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 관련 단체 종사자에게만 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격 갱신기간은 청소년상담사를 제외하고 타 자격증인 경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II-20.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요건

구분	기관 혹은 학회별 자격	최소학위	수련시간(기간)	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갱신
국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2급)	학사취득/ 석사취득	1년 1,000시간 / 3년 3,000시간	×	○ (12시간)	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1급/2급/3급)	고등졸업/ 학사취득/ 석사취득	-	○	△ (8시간)	-
민간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1급/2급)	관련 학사취득/ 관련 석사취득	1년 / 3~4년	○	○	1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1급/2급)	학사과정/ 석사취득	1년 180시간 / 3~4년 720시간	○	○	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석사취득	3년 3,000시간	○	○	1년

주.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정리함. ○는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는 필기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임.

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별도의 수련기간 없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연수 과정을 거쳐 최종 자격을 취득함.

* 출처: 손보영, 임지숙, 백상은 (2024).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성: 해외 법제화 사례와 국내 자격 제도 비교. p.1484. 재구성.

국외 심리상담 전문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캘리포니아/뉴욕주), 호주, 유럽, 영국, 대만, 일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미국인 경우, 심리사와 상담사로 자격을 구분하고 심리사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공인 심리학 분야의 대학원 박사학위(심리학박사, 철학박사, 교육학박사 등)를 수료(혹은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 면허(또는 인증)을 받은 전문가이며, 상담사는 심리학 분야의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 면허(또는 인증)를 받은 전문가이다. 심리사인 경우는 박사학위, 상담사는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사인 경우가 상담사보다 높은 학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는 일반심리학자 및 전문영역 심리학자의 자격취득 경로가 학력 조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며 ① 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논문 X), ② 학부 4년 졸업 후 2년 석사학위(논문 ○), ③ 학부 4년 졸업 후 석박사통합, ④ 학부 4년 졸업 후 박사학위), 이에 따라 수련 기간 및 자격시험 여부가 달라진다. 일반심리학자는 4년제 심리학과 학부 졸업 후 호주 심리학인증위원회(Australian Psychology Accreditation Council)가 공인하

는 대학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심리학자는 일반심리학자 취득 후 일반심리학 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레지스트라 프로그램(Register program) 과정(수련과정)을 통해 특정 전문영역에 등록된 수퍼바이저에게 수련을 받은 후 취득할 수 있다.

유럽 심리사인 경우, 유럽심리사협회의 기본 자격과 고급 자격으로 구분한다. 기본 자격은 전문 분야의 자격을 갖추기 전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자격이다. 고급 자격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위를 가지고 독립적인 실무가 가능한 자격으로서 기본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동안 심리사 경력을 갖춘 후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심리사는 Doctor of Psychology 대학원 과정 혹은 영국심리학회의 상담심리학 자격 과정(QCoP)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박사학위를 최소 학위로 요구하지만, 상담심리학 자격 과정의 경우 학사학위를 최소 학위로 요구한다.

대만의 심리사는 심리사법 아래 임상심리사와 구분된 자격으로 고선부(考選部)/Ministry of Examination)에서 주관,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 일본 심리사는 석사학위 대신, 학사학위 취득 후 문부과학성(교육부) 및 후생노동성(고용복지부)이 정하는 시설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호주, 유럽, 영국, 대만 심리사의 경우 최소 학위로 석사학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담사 도 최소 석사학위 이상,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심리사는 박사학위를 최소 학위로 요구하고 있다.

심리상담자격 관련 수련 내용으로는 미국 심리사인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 3,000시간, 뉴욕주에서는 총 3,500시간을 요구하며, 수련 인정 시작은 박사학위 취득(혹은 수료) 이후지만, 박사학위 과정 중에 실시한 수련 시간도 인정(최대 1/2까지 인정된다). 상담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 3,000시간으로 수퍼바이저 관리 하 104주를 포함한 3,000시간의 임상과 비임상 경력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임상 경력(상담)은 최소 1,750 시간, 비임상 경력(행정, 워크숍 등)은 최대 1,25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심리사의 경우, 일반심리학자는 4년제 심리학과 졸업 후 대학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고, 대학원 과정에서 심리학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 심리학 실습 총 시간은 학위별로 상이한데, ① 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 1,400시간(이후 추가적인 1,540시간 인턴십 필요), ② 학부 4년 졸업 후 2년 석사학위: 88주, ③ 학부 4년 졸업 후 석박사통합: 66주, ④ 학부 4년 졸업 후 박사학위: 44주를 실습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심리학자는 일반심리학자로 등록한 상황 하에서 레지스트라 프로그램(수련 과정)

을 통해 특정 전문영역에 등록된 수퍼바이저에게 수련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레지스트라 프로그램(수련 과정)의 총 수련시간도 학위별로 상이한데, ①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 3,000시간 혹은 2,250시간, ② 학부 4년 졸업 후 2년 석사학위: 3,000시간, ③ 학부 4년 졸업 후 석박사통합: 2,250시간, ④ 학부 4년 졸업 후 박사학위: 1,500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과정을 수료한 수련생들이 전문영역 심리학자 취득을 원하는 경우, 2년 석사 혹은 석박사통합 과정을 다시 수료한 후, 레지스트라 프로그램(수련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유럽 심리사는 기본 자격취득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 하에서 최소 1년 동안 1,500시간의 수련(수퍼비전 포함)이 해야 한다. 고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동안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해야 한다. 영국 심리사의 경우, 대학원 과정과 상담심리학 자격 과정 (QCoP) 모두 450시간의 수련시간을 갖추어야 한다.

대만 심리사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1,500시간 이상의 실습이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심리사는 자격시험 전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 중 모두 실습을 실시해야 하며,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80시간 이상,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270시간 이상을 실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석사학위 대신,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실무 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학사학위 중 80시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지정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실습을 해야 한다.

자격 시험에 대해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심리사와 상담사, 호주 일반심리학자(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 수련생), 대만 심리사와 일본 심리사는 자격시험에 필기시험 형태로 진행된다. 반대로 호주의 일반심리학자(학부 4년 졸업 후 2년 석사학위 이상의 수련생)와 전문심리학자, 유럽 심리사, 영국 심리사인 경우에는 자격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필수 학위와 수련 요건을 만족한 후 자격증 주관 기관에서 평가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평가를 받기 위해 증명자료(진술서, 수퍼바이저의 평가, 전문성 증명을 위한 서류, 학술 및 연구 능력 평가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고 자격 검정 절차를 진행한다.

미국, 호주, 유럽, 영국, 대만 심리사에 대해서는 자격 유지 및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격증 갱신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 심리사는 2~3년, 상담사는 2년, 호주 일반/전문심리학자인 경우에는 모두 1년, 유럽 심리사는 7년, 영국 심리사는 2년, 대만 심리사는 6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일본 심리사인 경우는 자격 갱신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표 II-21. 해외 주요국가별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의 요건

국가별 공인자격	최소학위	수련시간(기간)	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갱신
미국	심리사	박사 취득	3,000~3,500시간	○	○
	상담사	석사 취득	3,000시간	○	○
호주	일반심리학자	학사취득+석사취득	44~88주	○ / ×	○
	전문심리학자	학사취득+석사취득	1,500~3,000시간	×	○
유럽 심리사	학사취득+석사취득	2년	×	○	7년
영국 심리사	학사취득/석사취득	450시간	×	○	2년
대만 심리사	석사취득	1년	○	○	6년
일본 심리사	학사취득 / 학사취득+석사취득	2년/270시간	○	×	×

주. 미국 심리사는 캘리포니아/뉴욕주 심리사, 캘리포니아 상담사 기준으로 정리함.

주. 대만 심리사의 경우, 자격시험 전 실습을 기준으로 정리함.

주. 일본 심리사의 경우, 자격시험 전 실습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학사 과정 중 80시간 실습은 표에서 제외함.

* 출처: 손보영, 임지숙, 백상은 (2024).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성: 해외 법제화 사례와 국내 자격 제도 비교. pp.1477-1478. 재구성.

4. 시사점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을 전문성 강화와 현장 적합성 제고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청소년상담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지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역량을 응시자가 이수한 학위 수준이나 교육 내용(과목)에 따라 볼 것인지, 상담 실무경험(시간, 경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대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에 대해서는 현장 직무 중심의 검정과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급수별 역할과 직무에 따른 검정과목의 체계성 확보, 선택과목 통폐합을 통한 연계성 강화, 청소년상담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과목 구성 등을 핵심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응시자격 인정 교과목과 자격검정 과목, 자격연수 간의 일관성 있는

연계 체계 구축과 표준 교육과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등급은 청소년상담원 때부터 3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체계가 학위 수준에 따라 응시 자격, 검정 과목, 연수 과정 등에서 차등을 두어 설계되는데 그치면서, 자격 급수별 청소년상담 전문성과 현장 직무 역할 수행 상황이 상호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청소년상담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수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에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 3등급 체계의 유지 또는 2등급 체계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도 찬반이 팽팽하고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급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응시자격 요건의 적절성, 자격검정 과목의 체계성, 자격 등급 체계의 합리성 강화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면서 이들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변화해야 할 연수·보수교육 운영 방식이나 선발·수급·배치 기준 개선 등에 관한 논의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질적 요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상담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실무능력 중심의 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외 심리상담관련 자격증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내인 경우는 최소학위 기준을 학사 또는 석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 학위 취득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의 수련시간(기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제외하고는 타 자격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모두 실시하고 있다. 자격갱신과 관련해서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에서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파악되었다.

국외인 경우에는 최소학위로는 학사학위 취득자가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일종의 수련과정과 석사과정 중이거나 학위 취득이 전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가로 수련시간(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격시험이 있는 경우는 반반 정도이나, 보수교육과 자격 갱신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조사한 국가에서는 모두가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 행정통계 및 제도 개선요구 자료 분석

- 1. 청소년상담사관련 행정통계
자료 분석
- 2. 청소년상담사 응시현황
자료 및 제도 개선요구
자료 분석
- 3. 시사점

1. 청소년상담사관련 행정통계 자료 분석

청소년상담사는 2003년 684명으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3,822명까지 한 해에 응시하는 응시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상담사 양성 총 인원은 41,091명이 배출되었다. 청소년상담사 1급 1,836명, 청소년상담사 2급 16,123명, 청소년상담사 3급 23,132명이 각각 양성되었고 남성은 4,577명, 여성은 36,514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9배가 넘게 양성되었다.

표 III-1. 2003~2024년 청소년상담사 양성현황

(단위: 명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연도	총 계	등급별			성별	
		1급	2급	3급	남	여
2003	684	107	293	284	67	617
2004	214	21	90	103	21	193
2005	343	21	171	151	45	298
2006	407	30	171	206	33	374
2007	474	1	177	296	28	446
2008	691	47	194	450	68	623
2009	771	15	239	517	79	692
2010	486	14	140	332	34	452
2011	735	19	298	418	44	691
2012	1,292	29	335	928	99	1,193
2013	1,227	12	225	990	114	1,113
2014	1,982	15	409	1,558	184	1,798
2015	2,147	52	564	1,531	192	1,955

연도	총 계	등급별			성별	
		1급	2급	3급	남	여
2016	3,010	39	830	2,141	318	2,692
2017	2,724	88	1,042	1,594	301	2,423
2018	2,411	109	787	1,515	292	2,119
2019	3,303	87	1,593	1,623	395	2,908
2020	3,463	179	1,824	1,460	408	3,055
2021	3,949	84	1,558	2,307	510	3,439
2022	3,504	225	2,137	1,142	403	3,101
2023	3,452	250	1,296	1,906	462	2,990
2024	3,822	392	1,750	1,680	480	3,342
합계	41,091	1,836	16,123	23,132	4,577	36,514

* 출처: 여성가족부 (2025.03.28.). 청소년상담사 양성현황,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78 (인출일: 2025.06.17.)

1) 청소년상담사 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학력 현황을 살펴보면, 석사학위를 취득자가 직원 중 56%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자인 경우는 22% 이상으로 차지고 있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전문대졸, 고졸자의 비율은 전체 직원 중 2%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의 최종 학력은 “석사졸업” 53.8%, “학사 졸업” 24.3%, “박사 재학(휴학/수료)” 9.5%, “석사 재학(휴학/수료)” 7.6%, “박사 졸업” 4.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사 재학(휴학/수료)”, “전문학사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는 0.4%, 0.2%, 0.0%로 매우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사 이상 졸업자인 경우가 99.4%를 차지고 있다.

표 III-2. 청소년상담사 최종학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직원)*				2023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박사 졸업	22(1.5)	25(1.7)	27(1.8)	26(1.8)	222(4.3)
박사과정 및 수료	116(8.2)	112(7.7)	113(7.5)	108(7.3)	490(9.5)
석사 졸업	812(57.1)	847(58.3)	853(56.7)	882(59.4)	2,778(53.8)

구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직원)*				2023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석사과정(수료)	102 (7.2)	101 (7.0)	106 (7.0)	90 (6.1)	391 (7.6)
대학 졸업	327 (23.0)	327 (22.5)	361 (24.0)	349 (23.5)	1,254 (24.3)
대학 재학	5 (0.4)	6 (0.4)	7 (0.5)	3 (0.2)	21 (0.4)
전문대 졸업	35 (2.5)	30 (2.1)	25 (1.7)	24 (1.6)	9 (0.2)
고졸	3 (0.2)	5 (0.3)	2 (0.1)	1 (0.1)	1 (0.0)
무응답	1 (0.1)	-	10 (0.7)	1 (0.1)	-
합계	1,423	1,453	1,504	1,484	5,166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5).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자료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202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전공은 “심리학”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담학” 18% 이상, “교육학” 17% 이상, “사회복지학” 14% 이상 순으로 전공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대상자의 주전공은 “상담학” 34.9%, “심리학” 24.9%, “교육학” 12.2%, “사회복지(사업)학” 9.1%, “청소년(지도)학” 8.5% 순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응시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분야 관련에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심리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대상자로 조사한 바로는 상담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3. 2021-202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공 현황(직원)

(단위: 명, (%))

구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직원)*				2023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담학	257 (18.1)	279 (19.2)	298 (19.8)	296 (19.9)	1,802 (34.9)
교육학	267 (18.8)	258 (17.8)	280 (18.6)	271 (18.3)	632 (12.2)
심리학	404 (28.4)	445 (30.6)	441 (29.3)	435 (29.3)	1,287 (24.9)
청소년(지도)학	57 (4.0)	69 (4.7)	85 (5.7)	76 (5.1)	437 (8.5)
사회복지(사업)학	253 (17.8)	227 (15.6)	219 (14.6)	224 (15.1)	470 (9.1)
아동(복지) 및 가족학	65 (4.6)	62 (4.3)	64 (4.3)	61 (4.1)	250 (4.8)
기타	115 (8.1)	113 (7.8)	112 (7.4)	116 (7.9)	288 (5.6)

구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직원)*				2023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무응답	5 (0.4)	-	5 (0.3)	5 (0.3)	-
합계	1,423	1,453	1,504	1,484	5,166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5).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자료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3). 202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가 근무하는 분야 중 “상담복지 분야” 73.1%, “상담 외 분야” 9.7%로 총 82.8%가 업무를 보고 있으며, “미취업자”인 경우는 17.2%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4. 202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_근무 분야

구분	사례수	비율
상담복지 분야	3,777명	73.1%
상담 외 분야	502명	9.7%
미취업자	887명	17.2%
전체	5,166명	100.0%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3). 202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대상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은 “자격증 소지자”는 94% 이상, “무소지자” 4% 이상으로 상담관련 직원은 모두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5. 2021-202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격취득 현황(상담관련)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격증소지자	1,166 (95.4)	1,187 (94.4)	1,259 (94.2)	1,239 (95.6)
무소지자	56 (4.6)	70 (5.6)	77 (5.8)	57 (4.4)
합계	1,222 (100.0)	1,257 (100.0)	1,336 (100.0)	1,296 (100.0)

※ 행정원과 기타인력은 제외

※ 비상담자격증만 소지한 경우는 무소지자로 분류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5).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자료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자신에게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현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나, “현 직장 내에서 추가 수당 지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14.6%, 12.3%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다양한 기관에 지원할 자격요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59.5%, 77.2%로 이직을 준비하는 데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소년상담 전문가로서의 대내·외적인 인정”, “청소년상담에 대한 지식 및 능력 향상”, “청소년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78.9%, 93.1%, 95.1%로 높은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현 직장에서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략 12~14%,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대략 60~77%, 청소년상담으로서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대략 79~95%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상담을 하는 전문가로의 성취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청소년상담사의 이직 방지 및 현 직장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6. 2023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기여도

(단위: 명, %)

구분	기여함*	기여하지 않음	평균(4점만점)
현 직장 내에서 승진	753 (14.6)	4,413 (85.4)	1.21
현 직장 내에서 추가 수당 지급	636 (12.3)	4,530 (87.7)	1.21
새로운 직장을 구함	3,075 (59.5)	2,091 (40.5)	2.13
다양한 기관에 지원할 자격요건 마련	3,990 (77.2)	1,176 (22.8)	2.37
청소년상담 전문가로서의 대내·외적인 인정	4,076 (78.9)	1,090 (21.1)	2.37
청소년상담에 대한 지식 및 능력 향상	4,811 (93.1)	355 (6.9)	2.75
청소년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	4,915 (95.1)	251 (4.9)	2.99

* 기여함: 매우 기여, 꽤 기여, 약간 기여를 모두 포함함.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3). 202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상담관련 자격 종류 현황을 보면, 국가자격증으로는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순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자격증인 경우에는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순으로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2021-202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격 종류 현황(상담관련)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계	자격증 소지자 종 해당자격증 비율 (n=1,166)	계	자격증 소지자 종 해당자격증 비율 (n=1,187)	계	자격증 소지자 종 해당자격증 비율 (n=1,259)	계	자격증 소지자 종 해당자격증 비율 (n=1,239)	
국 가 자 격 증	청소년상담사1급	77	6.9	67	5.6	60	4.8	81	6.5
	청소년상담사2급	310	27.8	354	29.8	431	34.2	443	35.8
	청소년상담사3급	278	24.9	288	24.3	283	22.5	263	21.2
	사회복지사1급	250	22.4	255	21.5	294	23.4	289	23.3
	사회복지사2급	353	31.6	324	27.3	350	27.8	326	26.3
	사회복지사3급	2	0.2	3	0.3	3	0.2	5	0.4
	직업상담사1급	1	0.1	1	0.1	4	0.3	-	-
	직업상담사2급	53	4.7	59	5	96	7.6	109	8.8
	임상심리사1급	3	0.3	8	0.7	17	1.4	19	1.5
	임상심리사2급	87	7.8	112	9.4	173	13.7	181	14.6
	전문상담교사1급	2	0.2	2	0.2	3	0.2	3	0.2
	전문상담교사2급	40	3.6	33	2.8	50	4	44	3.6
	보육교사1급	31	2.8	25	2.1	12	1	15	1.2
	보육교사2급	41	3.7	39	3.3	23	1.8	17	1.4
	중등정교사	51	4.6	64	5.4	60	4.8	64	5.2
	유치원정교사	6	0.5	6	0.5	12	1	6	0.5
	청소년지도사1급	35	3.1	35	2.9	41	3.3	50	4
민 간 자 격 증	청소년지도사2급	339	30.4	352	29.7	423	33.6	406	32.8
	청소년지도사3급	22	2	22	1.9	26	2.1	19	1.5
	기타	-	-	-	-	-	68	5.5	
	합계	1,981	-	2,049	-	2,361	-	2,408	
	전문상담사1급	2	0.2	6	0.5	12	1	7	0.6
	전문상담사2급	45	4	106	8.9	120	9.5	95	7.7
	전문상담사3급	0	0	1	0.1	-	0	0	-
	상담심리사1급	25	2.2	23	1.9	23	1.8	20	1.6

구분	2021		2022		2023		2024	
	계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자격증 비율 (n=1,166)	계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자격증 비율 (n=1,187)	계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자격증 비율 (n=1,259)	계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자격증 비율 (n=1,239)
상담심리사2급	109	9.8	141	11.9	144	11.4	148	11.9
가족상담사1급	6	0.5	8	0.7	1	0.1	-	-
가족상담사2급	20	1.8	17	1.4	2	0.2	1	0.1
놀이치료사	18	1.6	14	1.2	9	0.7	13	1
미술치료사	100	9	85	7.2	88	7	91	7.3
모래놀이치료사	26	2.3	25	2.1	13	1	13	1
기타	127	11.4	115	9.7	112	8.9	177	14.3
합계	478	-	541	-	524	-	565	
총 합계	2,459	-	2,590	-	2,885	-	2,973	

※ 행정원과 기타인력은 제외

※ 센터 기본인력+사업비 인력임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자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의 자격증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외 취득 자격증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사 2급”인 경우, 47.1%, “청소년상담사 3급”인 경우, 46.9%, “청소년상담사 1급”은 6.0%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외 취득자격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43.1%, “임상심리사” 31.8%, “청소년지도사” 23.4% 순으로 많이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의 총 5,166명 중 82.8%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 중 “초/중/고등학교 Wee 스쿨/센터/클래스” 25.4%, “정부산하공공기관” 15.8%, “민간상담기관” 14.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6% 순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미취업 사유로는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26.4%,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중”이라서 23.3%, “학업을 위해서” 14.7%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미취업 사유 중 가장 높은 것은 청소년상담사가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8. 2023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외 취득 자격증

(단위: 명,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외 취득자격증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해당없음
자격급수 ¹⁾	1급	310 (6.0)	초중등 교사자격	819 (15.9)	4,347 (84.1)
			전문상담교사	682 (13.2)	4,484 (86.8)
			전문상담사	599 (11.6)	4,567 (88.4)
	2급	2,433 (47.1)	상담심리사	683 (13.2)	4,483 (86.8)
			임상심리사	1,642 (31.8)	3,524 (68.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21 (2.3)	5,045 (97.7)
	3급	2,423 (46.9)	직업상담사	1,070 (20.7)	4,096 (79.3)
			사회복지사	2,226 (43.1)	2,940 (56.9)
			청소년지도사	1,209 (23.4)	3,957 (76.6)

주: 1) 상담사 1명당 1개의 자격 급수만 활용, 종복 취득 시 상위 등급만 인정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3). 202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표 III-9. 2023년 청소년상담사 취업 상황과 미취업 사유

(단위: 명, (%)

청소년상담사 취업 상황			현재 미취업 사유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현재 근무 상황	예	4,279 (82.8)	육아 및 가사를 위해서	234 (26.4)
	초/중/고등학교 ¹⁾	1,085 (25.4)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중이라서	207 (23.3)
	정부산하공공기관	675 (15.8)	학업을 위해서(진학을 위해서)	130 (14.7)
	민간상담기관	608 (14.2)	휴식을 위해서	117 (1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4 (13.6)	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 중이라서	82 (9.2)
	상담 외 분야	502 (11.7)	상위자격 취득을 위해서	33 (3.7)
	대학학생상담센터	201 (4.7)	기타	84 (9.5)
	병원	172 (4.0)		
	그 외 ²⁾	452 (10.6)		
	아니오	887 (17.2)		

주: 1) Wee 스쿨/센터/클래스

2)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3). 202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대상자의 이직 계획 사유로는 “급여 및 근무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52.8%, “근무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11.7%, “상담실무경력을 쌓기 어려워서” 9.6% 순으로 이직 계획 사유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향후 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는 “정부산하공공기관” 20.7%, “초/중/고등학교 Wee 스쿨/센터/클래스” 14.7%, “민간상담기관” 11.2% 순으로 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청소년상담사 취업 상황과 향후 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기관을 단순 수치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초/중/고등학교 Wee 스쿨/센터/클래스 25.4% → 14.7%, 정부산하공공기관 15.8% → 20.7%, 민간상담기관 14.2% → 1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6% → 9.6%, 상담 외 분야 11.7% → 5.5%, 대학학생상담센터 4.7% → 9.2%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III-10. 2023년 청소년상담사 현재 이직 계획과 향후 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기관

(단위: 명, (%))

현재 이직 계획		향후 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기관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급여 및 근무환경이 더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싶어서	856 (52.8)	초/중/고등학교 ¹⁾	238 (14.7)
근무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189 (11.7)	정부산하공공기관	335 (20.7)
상담실무경력을 쌓기 어려워서	156 (9.6)	민간상담기관	181 (11.2)
새로운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99 (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5 (9.6)
상담사 소진이 커서	98 (6.1)	상담 외 분야	89 (5.5)
안정적인 직업 분야가 아니어서	79 (4.9)	대학학생상담센터	150 (9.2)
직장의 복지수준이 낮아서	57 (3.5)	기업체 상담 기관	133 (8.2)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기 어려워서	25 (1.5)	그 외 ²⁾	339 (20.9)
적성에 잘 맞지 않아서	22 (1.4)		
기타	39 (2.4)		

주: 1) Wee 스쿨/센터/클래스

2) 병원, 연구기관, 군 상담기관 등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3). 202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2. 청소년상담사 응시현황 자료 및 제도 개선요구 자료 분석

1)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응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등급별 기준에 따른 연도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응시 자격 기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2025.4월 기준)을 각 사안별로 내용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 77건, 2023년 78건, 2024년 89건, 2025년(4월 이전) 42건으로 70건~90건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표 III-11. 2022-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 총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4월이전)	합계
신문고 민원현황	77건	78건	89건	42건	286건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2025).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2) 자료 분석

(1) 청소년상담사 응시 지원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관련하여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지원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가장 많은 인원이었고,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지원하는 응시자가 많은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는 석사학위 취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지원하는 응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인 경우는 2020년 14명이 가장 많았고, 10명대 이하로 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는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인 경우는 24년 17명으로 나타났다. 3급 응시자격 기준에 있는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와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과 비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와 상담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고졸과 상담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20년~24년까지 응시자가 없거나 5명 이내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급에서 4번, 2급에서 2번과 4번, 3급에서 2번, 4번, 5번, 6번인 경우는 기존 5년가 응시자가 절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 현황

(단위: 명)

등급	응시자격 기준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7	36	98	91	176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47	21	36	76	79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55	27	91	83	137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	-
	소계	179	84	225	250	392
2급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769	1,547	2,083	1,286	1,702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4	3	11	1	6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1	8	43	9	3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	3 (내역없음)
	소계	1,824	1,558	2,137	1,296	1,750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453	2,301	1,137	1,894	1,662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4	-	-	-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	2	5	11	17

등급	응시자격 기준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1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기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1 (내역없음)	-
소계		1,460	2,307	1,142	1,906	1,680
합계		3,463	3,949	3,504	3,452	3,822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2025). 청소년상담사 응시 지원현황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0,077명이 응시했으며, 최종 합격자는 4,314명으로 최종 합격률은 40.06%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에는 12,245명이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는 6,256명으로 최종 합격률은 51.09%로 과반수를 넘는 합격률을 보였다.

표 III-13. 2021-202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현황

(단위: 명, (%))

구분	응시인원	필기시험 합격 인원(합격률)	면접시험 합격 인원(합격률)	최종 합격 인원(합격률)
2024년	12,245	7,894 (64.5)	6,320 (77.0)	6,256 (51.1)
2023년	9,774	5,088 (52.1)	4,498 (81.8)	4,498 (46.0)
2022년	10,219	5,184 (50.7)	4,364 (79.7)	4,364 (42.7)
2021년	10,770	4,621 (42.9)	4,315 (84.4)	4,314 (40.1)

* 합격률: 해당연도 응시인원 대비 최종 합격인원의 비율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 현황(2021~2024)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규모와 수료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자격검정 합격인원은 3,495명이며, 자격연수 수료 인원은 3,303명으로 총 36회 개설된 교육을 통해 수료하였다. 2025년 자격검정 합격 인원은 6,256명이며, 자격연수 수료 인원은 6,78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55회 개설된 교육을 통해 수료할 예정이다.

표 III-14. 2019-2025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규모 및 수료인원 추이

(단위: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격검정 합격인원*	3,495	3,264	4,434	4,315	4,364	4,498	6,256
수료인원**	3,303	3,463	3,949	3,504	3,452	3,822	6,780(예정)
개설규모	36회	45회	38회	36회	40회	39회	55회

* 자격검정 합격인원은 해당년도에 발표된 최종 합격인원임. 예 '23년 자격시험 응시→'24년 최종 합격발표

** 수료인원: '03년~'24년 41,084명(1급 1,836명, 2급 16,122명, 3급 23,126명)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5).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규모 및 수료 인원 추이(2019~2025)

(2) 제도 개선 민원 자료 분석

국민신문고로 2022년~2025년(4월)까지 접수된 총 286건 중 응시자격 기준과 관련해서는 129건이며,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해서는 131건이 접수되어 각 내용에 대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2022-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4월이전)	합계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기준	32	38	35	24	129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시험	37	33	48	13	131
민원취소	8	7	6	5	26
합계	77	78	89	42	286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2025).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상담관련 분야인 학과와 관련한 문의가 총 75건이며, 실무경력 관련해서는 총 53건으로 나타났다. 학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정보호학과, 산업심리학과, 정신건강복지전공 등과 졸업 예정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실무경력 관련한 내용은 기간 기준, 증빙서류, 인정 기간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III-16. 2022-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4월이전)	합계
상담관련분야(학과) ¹⁾	17	29	15	14	75
실무경력 관련 ²⁾	15	9	19	10	53
기타	-	-	1	-	1
합계	32	38	35	24	129

주: 1) 학과관련: 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정보호학과, 산업심리학과, 정신건강복지전공, 졸업예정자 등

2) 기간기준, 증빙서류, 인정기관 등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2025).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요약

● 학위에 따른 응시자격 서류 제출 관련

-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해진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 내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응시 가능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위 10개 학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나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①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 면접원리, ③ 발달이론, ④ 집단상담, ⑤ 심리측정 및 평가, ⑥ 이상심리, ⑦ 성격심리, ⑧ 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 상담교육, ⑩ 진로상담, ⑪ 가족상담, ⑫ 학업상담, ⑬ 비행상담, ⑭ 성상담, ⑮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전공 과목으로만 4과목 이상 이수 여부 관련: 전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전공선택, 전공필수 등도 인정 가능(부전공)
 - 성적증명서 상 과목 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성적증명서 상 과목구분에 전선, 전필 등 전공 표시가 안되어 있을 경우, 학칙 또는 해당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공문 등 과목 구분 ‘교보’가 전공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 **대학원 석사학위취득자의 응시자격심사:**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위 10개 학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상담관련학과로 인정가능(*대학원‘교육학’학위의 경우 교육학과만 인정, 학과명만으로 인정)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 검토

● 실무경력 시작일

-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일자부터 만 1년간의 경력으로 인정(예를 들어 '18년 3월1일 실무경력을 시작한 경우, '18. 3. 1 ~ '19. 2. 28 기간으로 1년 경력을 인정하여, 이 기간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대해 1년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정 가능)

● 표준화 검사

- 전국 표준화 검사의 의미는 어디서든(전국) 동일하게 표준화 된 척도(5점 척도, 4점 척도 등)를 활용한 검사, 투사검사(예: MMPI-2 RF, 한국형에니어그램 성격검사, 스트롱 검사 인정가능. MMSE(점수 환산 시 2점 척도(0,1)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SGDS-K(점수 환산 시 2점 척도(0.1)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 CERAD-K(CERAD 검사를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검사 판단), CIST(점수 환산 시 2점 척도(0,1) 활용으로 판단)

● 집단상담 인정 기준

- 집단상담 인정 기준: 5명 이상의 구성원(리더/코리더 포함)+리더나 코리더(보조리더),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이 5인 미만의 경우 집단상담으로 인정 불가(또래상담프로그램 등의 구조화집단상담 가능)

● 기관 승인(인증) 기준

- '다인정원'이라는 기관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인정 가능
- 상담을 실시(진행)한 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아야 하므로, 센터장(보건소장) 직인 또는 기관 직인만 인정 가능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시험 관련하여 총 131건 중 이의제기, 점수 공개, 불합격 사유 공개 등 시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총 86건, 자료·정보 공개, 시험 장소 확대, 원서 재접수, 장애인 편의 제공, 감독관 관리 등 시험 편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28건, 응시 서류, 면제 서류 등 관련 서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16건이 접수되었다.

표 III-17. 2022-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시험)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4월이전)	합계
(필기, 면접) 시험결과 ¹⁾	28	18	28	12	86
(필기, 면접) 시험편의 ²⁾	5	13	9	1	28
(필기, 면접) 관련서류 ³⁾	3	2	11	-	16
기타	1	-	-	-	1
합계	37	33	48	13	131

1) (필기, 면접) 이의제기 점수공개, 불합격 사유 공개 등

2) 자료, 정보 공개, 시험장소 확대, 원서 재접수, 장애인 편의제공, 감독관 관리 등

3) 응시확인서, 면제서류 등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2025).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3. 시사점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총 4만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추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학력을 보면, 대학원에서 석사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이 비중이 대략 60%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학 졸업자 수인 경우에는 대략 2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로 전문대 졸업, 고졸인 경우에는 많게는 2.7%이거나 작게는 0.2%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에 따르면, 고졸부터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자신에게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이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60% 이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도움을 제공하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직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50%가 넘는 대상자가 응답을 하고 있어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청소년상담사들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징검다리 역할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숙련된 청소년상담사가 타 기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 응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청소년 상담자 지원자 중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 취득자와 비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비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 취득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인 경우 일정부분 상담 실무경력을 갖추고 지원한 사람이 최근 5년 이내에 없거나 매우 미미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한국에서 상담관련 자격증 응시 기준이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과 상담 실무경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응시 자격 기준을 유지하거나 완화 또는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장 FGI 및 전문가 의견조사

- 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FGI
-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 3. 시사점

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FGI

1) FGI 개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계획서, 대상자 선정, 질문지 등에 대해 연구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2025년 8월 13일 최종적으로 심의통과⁵⁾하였다.

표 IV-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FGI 일정 및 대상

	FGI 1차	FGI 2차	FGI 3차	FGI 4차
일시	2025.08.18.(월)	2025.08.18.(월)	2025.08.19.(화)	2025.08.22.(금)
방식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대학생 5인	대학원생 5인	교수 5인	청소년상담사 5인
대상	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4학년 4인 대학교 졸업자 1인	상담심리전공 4(3)학기 3(1)인 교육상담 4학기 1인	교육학부 1인 심리학과 1인 상담학과 1인 교직과 1인 청소년지도학 1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 5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예비 청소년상담사(대학원생/대학생), 학계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 사전 연락을 통해 선정하였다.

FGI 참여 대상 기준으로는 예비 청소년상담사(대학원생/대학생)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준비를 하는 대상자이며, 학계 전문가(대학 교수)를 통한 추천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5) 승인번호: 202508-HR-수시-001

학계 전문가는 대학교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 교육을 하는 교수가 대상이며, 현장 전문가인 경우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총 4회로 각 회기에 5인으로 예비 청소년상담사인 대학원생 5인, 대학생 5인, 학계 전문가(대학교수) 5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 청소년상담사(관리자) 5인으로 총 20인을 온·오프라인에서 FGI를 실시하였다.

표 IV-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질문 내용_FGI

질 문 내 용
1. 현재 청소년 상담자 자격제도 관련 '학과 전공' 및 '실무경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의견 1) '학과 중심'에서 '과목이수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 2) '실무경력'을 대체할만한 대안에 대한 의견
2.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중 3급 응시기준 관련 학력에 상관없이 실무경력 인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1) 현 자격등급체계 3등급 체계로 유지할 경우 필요한 것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2등급 체계로 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건
3.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 1) 필기시험 개선 방향 2) 면접시험 개선 방향
4.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방식에 대한 의견 1) 청소년 상담사 자격연수 시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2) 청소년 상담사 자격연수 시간 확대 시 필요한 조건
5.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의견
6.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질문지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전문성 향상 방안(학과 전공, 실무 경력 등), 자격 3등급 체계, 자격검정(필기/면접), 자격 연수, 보수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듣고, 그 외 전문성 향상 방안을 파악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대상자로서 하여금 청소년상담사의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 대한 쟁점과 전문성 향상, 등급체계 등에 관한 녹취된 내용을 전사하여 내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각 주제에 해당하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

고 계시는 학계 전문가와 현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청소년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청소년상담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대학생인 예비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각 질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각 대상에 따른 의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주제별로 맞게 분류하고 각 내용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다시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최종 확인된 내용을 통해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정과 관련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2) FGI 분석 결과

FGI에 참여한 대상자는 교수 5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 5인, 청소년관련 학과생 5인,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 5인으로 총 4회 진행하였다. 각 FGI는 오프라인으로 1회 온라인 방식으로 3회를 진행하였고, 전반적으로 FGI 진행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 IV-3. FGI 참여대상자

ID	성별	연령대	소속	ID	성별	연령대	소속
P_1	남	50대	교육학부 교수	C_1	여	50대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
P_2	여	50대	심리학과 교수	C_2	여	60대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
P_3	여	50대	상담학과 교수	C_3	여	40대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
P_4	남	50대	교직과 교수	C_4	남	50대	○○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
P_5	여	60대	청소년지도학 교수	C_5	남	50대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자
U_1	남	20대	청소년지도학 재학생	G_1	여	40대	상담심리전공 석사생
U_2	남	20대	청소년학 재학생	G_2	여	40대	상담심리전공 석사생
U_3	여	20대	청소년학 재학생	G_3	여	20대	상담심리전공 석사생
U_4	여	20대	청소년지도학 졸업생	G_4	여	30대	상담심리전공 석사생
U_5	여	20대	청소년지도학 재학생	G_5	여	20대	교육상담전공 석사생

청소년상담사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녹취된 내용을 전사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5가지 주제로 분류하였고, 각 주제별로 3~5개의 세부 주제로 분류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IV-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주제 유형화

주제	세부주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가. 상담사 취지, 역할, 위상
	A. 청소년상담사 역할과 직무 이중성
	B. 청소년상담사 인식과 위상
	C. 청소년상담사 역량 강화
	나. 자격기준
	A. 상담관련 교육과정 도입
	B. 실습/수련 등 제도 도입
	C. 현 자격기준의 안정성
다. 상담실무능력 강화	A. 실습/수련 등 상담역량 강화
	B. 상담지도인력 양성
	C. 실습/수련 등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D. 자격검정제도 보완
라. 자격검정	B. 면접 운영 및 방식 내실화
	C. 필기/면접 기출문제 관리
	D. 적정 합격률 관리
	A. 자격연수/보수교육 예산 확보
마. 자격연수/보수교육	B. 교육내용 현실화
	C. 자격연수/보수교육방식 다변화
	D. 자격연수평가/자격갱신제 도입

가. 상담사 취지, 역할, 위상

A. 청소년상담사 역할과 직무 이중성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은 상담관련 분야인 20개 학과의 조합을 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과인 경우는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다수의 청소년상담사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직무와 유사 기관의 직무를 살펴볼 때 상담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상담 외 관련 업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상담의 전문성을 논하는 제도 개선만을

언급하는 것은 상담사로서의 역할과 직무에 혼선이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역할과 직무를 명확히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P_5

청소년 상담사의 이런 직무는 청소년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라면 여기서는 꼭 상담 실습 제도가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의 직무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터를 생각하면 완전 전문 상담사하고는 좀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B. 청소년상담사 인식과 위상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더불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전문직 상담가로서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취업에 필요한 조건 정도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실제 전문자격으로서 청소년상담사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도 개정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청소년상담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

P_3

상담 관련 학과들은 상담사라는 아이덴티티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 아이덴티티가 윤리적인 거라든지 전문성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라든지 그런 걸 끊임없이 수련하게 하는, 커리어에서 중요한 게 아이덴티티일 수 있는데 학과가 빠지고 과목으로만 해서 흘어지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G_1

상담센터에서 청소년 상담하시는가 경력을 쌓고 이제 민간 자격증 오히려 수련을 하셔가지고 상담학회나 상담심리학 자격증을 따서 본인이 독립을 하신다면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상담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뭔가 좀 잘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구멍이 있구나

G 2

3급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할 때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이 상담사라는 직업의 취지와는 안 맞지 않나요? 왜 지금 내담자한테 어떤 상담을 제공하고 얼마큼 전문성을 키울 것인지가 아니라 왜 취업 준비생한테 초점이 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C. 청소년상담사 역량 강화

청소년상담사로서 기본적인 상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방안에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내고 있었다. 모든 상담이 내담자를 위한 활동이겠지만 청소년 시기의 상담은 인생 전반에 걸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요구는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의 역량 중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 기관 등과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C 2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와서 상담을 하다가 오히려 상담을 한 것이 내담자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위기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 위기 사례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배정을 하고서는 이게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G 4

한 기관에서 대상자가 들어와도 다른 기관에서 연계받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청소년 문제라고 해도 그 가정에서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의료적인 정신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상담사의 역량 교육을 할 때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서로가 협업할 때 각 기관에서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대하기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상담 잘하고 기술 잘 쓰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에 있으면 오히려 다른 기관하고 더 협력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

나. 자격기준

A. 상담관련 교육과정 도입

청소년상담사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학과 및 전공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보니 청소년상담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서 학과가 다양화되고 포괄화되는 상황 속에서 상담관련 교과목에 대한 정리를 요구되면서 과목이수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_5

지금 학과목이 뭐 상담학과나 심리학과로 제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소년 상담사는 사회사업,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학과나 전공에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필수적인 과목들은 다 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저도 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했는데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담 쪽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G_1

실제 청소년 상담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분들이 제공하시는 상담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군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학습의 어떤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과목은 최소한 대학 수준에서 이수할 필요가 있다 혹은 대학원 수준에서 이수할 필요가 있다

U_4

졸업생인데요. 이 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옆에 말한 것처럼 이 과목을 안 들은 게 훨씬 많고, 약간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많아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이 과목 이수제로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성 확보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B. 실습/수련 등 제도 도입

실무경력, 실습, 수련 등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이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실무경력, 실습, 수련 등을 하고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는 각 등급에 맞는 학위를 취득했을 때는 별다른 상담 경험이 없어도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고, 취업하는 것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 청소년을 대면하고 상담을 할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P_3

학과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땅땅 학과 박사, 그러니까 1급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박사인데 상담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자격 요건이 돼서 1급을 연수받고 따버리게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1급을 팔면 본인이 현장에 나와도 사실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어디 상담 기관에 센터를 내거나 아니면 어디 취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상담이 효과가 없으면 내담자를 떠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커리어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U_5

상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앞서서 얘기했던 뭔가 과목 이수제나 실습 과정이 뒷받침된다면 이 3급 청소년 상담사 응시 기준 자체에도 실무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이수했느냐 또는 이 과목을 이수했느냐로 취득 조건을 바꾸면

C. 현 자격기준의 안정성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사 자격기준은 20여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자격기준의 적용하게 된다면,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도의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자격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C_2

지금 교육으로도 학과에 학교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상태인데 과목에 있어서 그걸 확대를 한다고 하면 현재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P_5

아주 심도 있는 심리상담을 하기보다는 접수하고 연계하고 사례 관리하고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는 그런 중간 역할들을 하면서 3급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현장이 특히 상담이나 복지 현장이 이제 대상별로 세분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3등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청소년 현장에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 상담실무능력 강화

A. 실습/수련 등 상담역량 강화

앞서 자격 기준에서도 언급했었던 내용 중에 상담관련분야의 학위 취득여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에 대한 교육/훈련 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나는 의문이 있다. 이에 상담실무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담실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상당히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상담실습/수련의 기회 제공(시간 확대, 참여 기회 등)이 부족하다는 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자격제도에서 추진하는 대상자와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C_4

현장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 가지고 오셔도 심지어는 저희 센터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오신 팀원이 계셨거든요. 근데 해야 할 것은 똑같아요. 수련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청소년 상담사 1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박사하고 나서 자격 응시해 가지고 이론 자체를 다 무장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상담 자체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경험적으로 저는 선형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련 과정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U_1

선생님들이 집단 상담이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코리더로 계속 참관을 하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가서 직접 아이들이랑 집단 상담하시는 거를 직접 보고 하는 건데, 했었는데 저는 그것 자체로도 꼭 어렵게 느낄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실습을 차라리 아예 센터 쪽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좀 참관한다거나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U_3

청소년 학과 실습 외에 다른 학과 실습을 봤을 때, 같은 경우 교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 봉사도 해야 되고 실습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다른 사범학부는 관찰 실습이라는 것도 있는 걸 봤었는데, 뭔가 시간을 딱 정해서 딱 그때 실습 나가는 거 외에도 관찰 실습이든 상담센터에서 봉사를 하든 이런 식으로 좀 또 나눠서 하면은 실습 시간이 조금 적게 느껴져도 다른 걸로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U_5

상담 분야에서는 사실 대학생에게 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대학생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이 현장 전반에서 이 학부생들과 그리고 이런 상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제공할 수 있는지를 좀 더놓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B. 상담지도인력 양성

상담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 중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상담

지도 인력에 대한 요구이다. 통상 수퍼바이저라든지, 멘토라든지 등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에 대한 관점, 개입, 평가 등등 상담사로서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담지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인력을 지속으로 늘어나고 있고, 심각한 문제행동 등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퍼비전을 받지 못하고 상담사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내담자를 위해서도 상담사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못한 것일 수 있기에 상담지도 인력 양성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C_2

상담 센터에서 일이 많고 그리고 그들이 상담 센터에 와가지고 실습을 할 때 사례를 그들에게 주고 사례에 대한 피드백과 슈퍼비전을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력이 사실 현재 없어요. 그럴 여유가 사실 없고, 수련을 받으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한테 배정한 사례가 그렇게 충분치도 않아요

P_3

청소년 상담 센터들은 사실은 운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고 상담사 숫자도 많기 때문에 슈퍼비전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응시하려는 사람들, 청소년 상담사 자격 3급이든 2급이든 이걸 따려는 사람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시군구 차원의 센터가 감당을 못할 거예요.

C. 실습/수련 등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실습/수련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인력 문제 등과 더불어 어떤 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현장 실습 또는 수련 등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현장 적용에 있어서는 공간, 예산, 수행 인력, 지도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습/수련 등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일 것이다. 예산을 확보를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상담관련 공간 확보, 수행인력 확보, 수퍼비전 교육 예산 등을 투입하여 실습/수련 등 수행기관의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으로서 공신력이 담보될 수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투입하여 기존 센터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C_4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전 시험을 보기 전에 수련기관으로서 해야 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자체를 만들어야죠

C_2

(학생이) 오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실제로 맞습니다. 만들어두려면은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학생이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고

G_4

사실은 학점보다도 실제로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습 수련을 하고 이제 좀 그런 현장의 그런 틀을 좀 표준화시켜 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학점보다는 수련의 좀 더 질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C_5

이제 저는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역할 모색이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물론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후배들을 기르고, 또 그런 교육하는 기능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점점 그 인력난들은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커리큘럼 안에 사회복지처럼 상담도 실습을 의무적으로 좀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 썼는데, 적어도 예를 들면 한 학기면 120시간이고 두 학기면 240시간 정도를 의무적으로 학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저는 입장이고요

P_3

학부 기준으로 보면은 청소년 상담센터가 좋은 실습처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 가까운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슈퍼바이저를 확보해서 4년 동안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거는 이제 석사 수준의 수련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라. 자격검정

A. 자격검정제도 보완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교과목에 대해 각 등급별 영역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교과목에 대해 현실적으로 최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접시험인 경우,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평가자가 주관적이다” 등등 논란이나,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논술형 문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G_1

주관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거라면,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애초에 어떤 기준으로 그 구술인 면접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된 어떤 기준을 공표를 하던가 아니면 논술 형식이나 서술형으로 그냥 제출을 받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P_2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전에 했던 과목들 중에 일부 교과목은 너무 오래된 교과목이고 과목 분류에도 맞지 않으니까 1급과 2급의 과목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 많이 바뀐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중독이라든가 청소년의 새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교과목에 반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B. 면접 운영 및 방식 내실화

자격검정 중 면접 시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정을 통해 면접시험이 보다 내실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면접관에 대한 평가의 주관성, 지역별 차이, 면접 문항에 대한 차이 등 적절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관성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G_2

일단 상담에서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비언어적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나 목소리, 말투, 뉘앙스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면접에서는 그런 부분도 보실 것 같아요.

C_3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이거 억지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출제자가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푸느냐에 따라서, 또 특히 위기 상담은 더 해요. 정말 위기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건 운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였고요. 면접도 제가 두 번 다 떨어졌는데, 이게 지역 차도 너무 큰 걸 제가 느꼈어요. 다른 지역은 상호 조정을 해요. 면접관들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 하지만 이게 좀 불어줘도 되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역적 정보를 얻어서 어떤 대전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너무 좋거든요. 면접관들이 근데 또 서울에 엄청 많이 몰리는 곳은 그냥 자기들이 평가를 바로 해버려요. 그럼 한 명이라도 점수를 낮게 쳐버리면 자기 취향에 안 맞거나 이 사람이 좀 그런 게 걸려서 해버리면 그냥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편차가 너무 심하다.

G_4

면접 시험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면접관에 따라서 되게 주관성이 엄청 많이 개입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합격자분들 답안 봐도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답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주관성이 너무 많이 개입된다고도 많이 들었어 가지고. 이런 주관성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평가할 때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C. 필기/면접 기출문제 관리

청소년상담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만을 준비하기보다 다른 상담관련 시험을 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국가자격증 모두를 시기 차이가 있을 뿐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단순히 문제가 좋다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격증을 보는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 제출 시 이론적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이 적절히 관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C_1

제가 같은 해에 학회 시험하고 청소년 상담사 1급을 같이 봤는데 학회 시험지를 보면서 문제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회는 공개를 안 하고 문제를 풀면서도 이게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가 되면서 그게 같은 문제가 되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좀 말씀을 여러 개 드렸는데, 하나는 그런 면접이나 출제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하고

P_1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필기시험과 구분되는 형태의 면접 질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나 판단 능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좀 더 세련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오셨던 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면 좋겠고요

D. 적정 합력을 관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지면서 청소년상담사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가 자격증 배부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상담사의 긍정적인 인식 확대와 전문성 강화라는데 무게 중심이 있다는 점에서 합격자가 많아지면서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질적 관리와 상담자의 취업처와 처우에 대한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자격제도 운영체계에서 합격자 관리 감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높은 자격증 합격률을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자격제도 및 청소년상담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P_3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지금 현재의 문제는 숫자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발생시키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컨트롤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그 안에 부적절한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부적절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 자체가 되게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1차 2차를 다 높여가지고 자격 연수 안에 적정 숫자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연수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마. 자격연수/보수교육

A. 자격연수/보수교육 예산 확보

상담관련 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향에 맞는 교육 받거나 또한 자신의 속한 분야에서 꾸준한 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의 기본 취지를 다시금 뒤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체성 고취 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평생 교육받고 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상담 관련기관에서 소속되어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교육비 등은 확보하여 관련 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센터운영비로 추가 확보하거나 관련 정부 또는 민간 등에서의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C_4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노동부에 있는 계좌제하고 연계했어요. 노동부의 계좌제 자체를 연계해서, 이 재직자들 연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부의 예산 자체를 받아서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금 직원들의 보수 교육이나 이런 대부분 많은 예산 자체를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개인의 부담 자체는 몇만 원 수준이에요

C 2

보수 교육뿐 아니라 연수도 지금 100% 대면이 없어요. 대면이 0%란 말이에요.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이러닝 그다음 과제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효율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소를 빌릴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수 교육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이게 제대로 굴러가고 전문가가 양성되고 유지가 되는 거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해라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B. 교육내용 현실화

청소년상담사는 등급별로 수행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청소년상담관련 교육도 필요하지만, 등급별 역할 차이가 있는 직무 영역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이후에 교육체계는 보수교육 외에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자격 연수인 경우는 자격 취득 전 마지막 단계로서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청소년 상황/문제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P 4

제가 자격 연수를 하면서 늘 항상 드는 생각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연수를 통해서 자격을 만들어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중략- 시험에 통과하고 면접에 통과한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예전히 자격 기준이 충분히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격 기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자격 연수가 꼭 필요한 것인가? 정말 해야 되는 자격 연수라면 실무 중심의 자격 연수, 정말 리더로서, 그러니까 1급이라고 한다면 상담 센터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상담 센터장으로서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실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2급이라고 한다면 2급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격 연수의 목적도 지금 정확하게 모호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 5

보수 교육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지금 보수 교육에 대한 교육들을 예전에 다 열어놨기 때문에 거의 다 들었었어요. 근데 또 돈을 내고 보수 교육을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청소년 쪽에 접근해야 될, 예를 들면 자해 자살 쪽은 생기긴 했지만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사실은 좀 현장에서 좀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을 좀 배우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C. 자격 연수/보수교육 방식 다변화

현재 자격 연수와 보수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의 대체로 강의식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차, 경력 등에 따라 사례 등을 통한 토론식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에 대한 운영 주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개발원에서 전체 운영하기보다 개발원과 지역거점센터와의 교육의 성격이나 특성 등에 따라 분리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담사 교육에 대해서 전체 기획·운영·관리는 기존 개발원에서 주도하지만, 지역별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C_4

좀 추가하고 싶었던 게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비대면에 대한 교육 있잖아요.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역에서 거점 형태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거점형 형태로, 꼭 한 곳에서 모여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산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이 거점을 두고 이 거점에 있는 곳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더 넘긴다면 도 광역센터들의 역할 자체를 지금 해서 추가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광역의 사업으로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만드는 건 어떨까? 굳이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면 개발원에다가 예산을 주고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광역센터가 이러한 보수 교육 자체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C_3

이들이 모여서 함께 좀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수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이든 이렇게 좀 모여서 좀 집중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응집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수도 좀 필요한데 너무 다 온라인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냥 틀어 놓고 듣는 이런 보수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필요하고 진입의 용이성을 위해서 필요 하지만 좀 그런 집중력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D. 자격연수평가/자격갱신제 도입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 취득 과정을 살펴보면, 응시 → 자격검정(필기시험→면접시험) → 자격 연수 → 자격증 발급 순으로 자격연수를 받지 않으면 자격증은 발급이 되지 않는다. 자격 연수는 100시간을 다 수료하면 되며 평가 과정은 없다.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과 취득 과정이 타 상담사 조건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다양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청소년상담사가 갖춰야 할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면접 이후 자격 연수 과정에서 평가제로 도입하여 청소년상담사로서의 태도, 인간관계 등의 다면적 과정평가를 거쳐 최종 자격증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격 연수에 평가제 도입과 더불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단순히 보수교육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 등과 연계된 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P_1

연수 가면 그래도 많이 걸려졌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연수할 때 걸려낼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줘라. 그 장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줄 수 없어 그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접으로까지 걸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연수에서 역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 놓으면 전혀 아닌 사람들을 청소년 상담사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자격증을 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P_4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자격증을 유지하는 과정의 어떤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 교육이 모든 자격 취득자에게 의무는 아니거든요. 일단 취득하고 나면 장롱면허증처럼 장롱 자격증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가 필요에 따라서 또 실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어도 자격증 취득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의 상응하는 어떤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보수 교육 시스템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계획서, 대상자 선정, 조사지 등에 대해 연구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심의를 요청하여 2025년 9월 3일 최종적으로 심의에 통과⁶⁾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 대상은 FGI에 참여한 대학생, 대학원생, 학계전문가(교수), 현장 전문가(청소년상담사) 중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 상담 실무를 맡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현장의 청소년상담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학생, 대학원생인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일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청소년상담사의 실무경력이나 보수교육 등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부분에 있어 인지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였다. 또한 학계전문가(교수)인 경우는 관련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어 그 주요 의견과 주장들이 선행 연구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집중하였다.

조사 대상의 선정은 FGI에 참여한 5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으로부터 각 5인을 추천 받아 청소년상담사 총 25인을 모집하였다. 참여자 추천 기준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교 등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로서 청소년상담 실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활용된 조사지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전반의 핵심 요소를 다루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자격 요건, 자격 등급 체계, 자격검정 과목 구성과 운영 방식, 자격검정 전형 절차와 평가 방법, 그리고 자격검정 제도의 미래적 발전 방향 다섯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6) 승인번호: 202508-HR-수시-001

표 IV-5.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전체		25	100.0
성별	남성	7	28.0
	여성	18	72.0
연령대	20대	7	28.0
	30대	10	40.0
	40대	3	12.0
	50대	5	20.0
소속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	84.0
	초·중·고교	2	8.0
	기타	1	4.0
	무응답	1	4.0
경력	2년 이하	5	20.0
	2년 초과 ~ 5년 이하	6	24.0
	5년 초과 ~ 9년 이하	8	32.0
	9년 초과	6	24.0
청소년 상담사 자격 보유	1급	4	16.0
	2급	10	40.0
	3급	10	40.0
	기타(무응답)	1	4.0

조사자는 이러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질문지 형식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응답자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을 적절히 병행하였다. 객관식 문항을 통해서는 응답자들의 인식 수준이나 전반적인 경향을 수치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식 문항을 통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된 조사자는 응답자들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뿐만 아니라 개선 가능성 까지 폭넓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가 단순한 현황 진단을 넘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6.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질문 내용_전문가 의견조사

자격제도 구분	세부 구분	비고
응시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수준에 따른 응시자격 부여 방식(세부 학위에 대한 의견조사) - '학과·전공 기준'과 '과목이수제'에 대한 의견 - 실무경력에 대한 의견 	객관식 객/주관식 객/주관식
자격 등급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체계 유지 및 개편에 대한 의견 - 등급체계 유지 및 개편에 대한 보완 사항 	객관식 주관식
자격검정 과목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과목과 현장 직무수행과의 적절성 - 검정과목의 필수선택 구성에 대한 의견 	객관식 객/주관식
자격검정 전형 및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의견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개선점 	객관식 주관식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연수와 평가반영제도에 대한 의견 - 자격연수에 대한 개선점 - 보수교육과 자격증 갱신과 연계에 대한 의견 -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점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자격검정 제도의 미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제도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 청소년 자격제도의 비전 	주관식 주관식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성별, 기관유형, 청소년상담 관련 경력,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크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양적 자료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기관 유형, 자격 등급, 경력 등)과 5점 Likert 척도 및 양극형 Likert 척도 응답이 포함되었으며, 질적 자료는 주관식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양적 자료의 경우, 우선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Likert 척도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필요할 경우, 자격 등급이나 경력과 같은 집단 특성에 따라 응답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이나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와 공통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주관식 응답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진은 먼저 응답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한 뒤, 주제별로 범주화(coding)를 진행하였다. 이후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범주화 과정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들은 빈도 분석 결과와 함께 정리되었으며, 대표적인 응답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맥락을 풍부하게 전달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양적·질적 분석 결과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즉,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경향과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타당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결과

(1)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요건

- ①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학위 수준(학사·석사·박사)에 따른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현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의 학위 수준 설정의 전반적인 적절성에 대한 응답에서 전체 25명 중 68.2%가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13.6%는 ‘매우 적절하다’로 답해 긍정 응답 비율은 81.8%에 달하였다. 반면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는 4.5%, ‘보통’은 13.6%였으며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83.4%, 여성의 81.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경력별로는 2년 이하 집단의 80%, 10년 이상 집단의 100%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 자격 등급별로는 1급 소지자의 66.6%, 2급 소지자의 90%, 3급 소지자의 77.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특히 2급 소지자에서 긍정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위 수준을 응시 자격 기준으로 두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현재의 응시 자격 부여와 학위 수준의 설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응답도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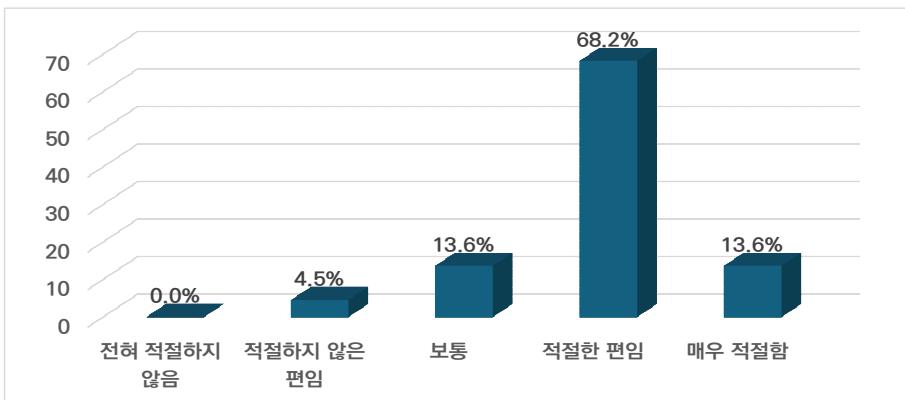


그림 IV-1. 학위 수준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전반적인 적절성

표 IV-7. 학위 수준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전반적인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0.0	4.5	13.6	68.2	13.6	4.5	81.8	3.91	0.684	-
성별	남성	7	0.0	0.0	16.7	66.7	16.7	0.0	83.4	4.00	0.632
	여성	18	0.0	6.3	12.5	68.8	12.5	6.3	81.3	3.88	0.719
연령대	20대	7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0.753
	30대	10	0.0	0.0	22.2	77.8	0.0	0.0	77.8	3.78	0.441
	40대	3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50대	5	0.0	20.0	0.0	60.0	20.0	20.0	80.0	3.80	1.095
소속 기관	상담복지센터	21	0.0	0.0	11.1	72.2	16.7	0.0	88.9	4.06	0.539
	기타	4	0.0	25.0	25.0	50.0	0.0	25.0	50.0	3.25	0.957
경력	2년 이하	5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0.707
	2년초과~5년이하	6	0.0	0.0	33.3	50.0	16.7	0.0	66.7	3.83	0.753
	5년초과~9년이하	8	0.0	0.0	0.0	83.3	16.7	0.0	100.0	4.17	0.408
보유 자격 등급	9년 초과	6	0.0	20.0	0.0	80.0	0.0	20.0	80.0	3.60	0.894
	1급	4	0.0	0.0	33.3	33.3	33.3	0.0	66.6	4.00	1.000
	2급	10	0.0	0.0	11.1	88.9	0.0	0.0	88.9	3.89	0.333
	※ 3급	10	0.0	11.1	11.1	55.6	22.2	11.1	77.8	3.89	0.928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별로 학위 수준 설정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상담사 1급 응시 자격으로서 박사학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25명 중 긍정 응답은 64.0%(적절한 편 56.0%+매우 적절 8.0%), 부정 응답은 24.0%였고 평균은 3.48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7.2%, 여성 66.7%가 긍정으로 응답했다. 경력별 긍정 비율은 2년 이하 60.0%, 2~5년 50.0%, 5~9년 62.5%, 9년 초과 83.3%였고, 자격 등급별로는 1급 보유자 75.0%, 2급 70.0%, 3급 50.0%로 상위 등급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박사 기준”的 타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이 우세하지만, 경력과 보유 등급이 높을수록 수용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1급 응시 요건으로서 박사학위 기준이 제도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요건으로 인정되지만, 일부에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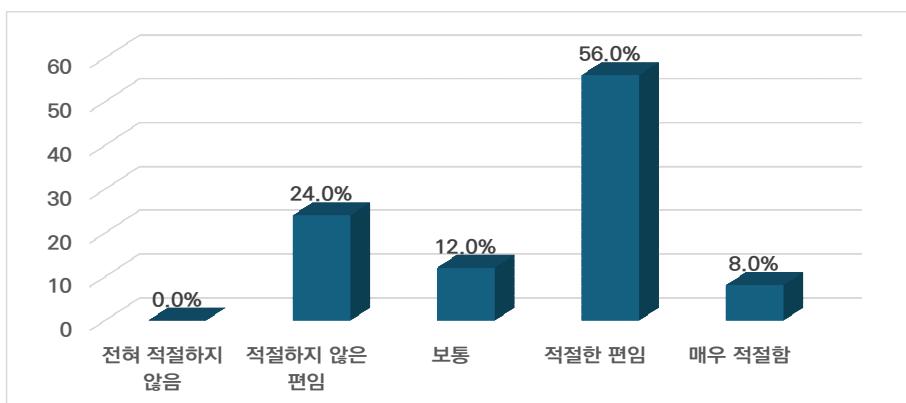


그림 IV-2. 학위 수준(박사)에 따른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표 IV-8. 학위 수준(박사)에 따른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임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0.0	24.0	12.0	56.0	8.0	24.0	64.0	3.48	0.963	-
성별	남성	7	0.0	14.3	28.6	28.6	14.3	57.2	3.71	1.113	0.752
	여성	18	0.0	27.8	5.6	66.7	0.0	27.8	66.7	3.39	
연령대	20대	7	0.0	28.6	14.3	42.9	14.3	28.6	57.2	3.43	1.134
	30대	10	0.0	30.0	20.0	40.0	10.0	30.0	50.0	3.30	1.059
	40대	3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50대	5	0.0	20.0	0.0	80.0	0.0	20.0	80.0	3.60	0.894
소속기관	상담복지센터	21	0.0	23.8	9.5	57.1	9.5	23.8	66.6	3.52	0.981
	기타	4	0.0	25.0	25.0	50.0	0.0	25.0	50.0	3.25	0.957
경력	2년 이하	5	0.0	20.0	20.0	40.0	20.0	20.0	60.0	3.60	1.140
	2년초과~5년이하	6	0.0	16.7	33.3	50.0	0.0	16.7	50.0	3.33	0.816
	5년초과~9년이하	8	0.0	37.5	0.0	50.0	12.5	37.5	62.5	3.38	1.188
	9년 초과	6	0.0	16.7	0.0	83.3	0.0	16.7	83.3	3.67	0.816
보유 자격 등급	1급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0.816
	2급	10	0.0	20.0	10.0	70.0	0.0	20.0	70.0	3.50	0.850
	3급	10	0.0	40.0	10.0	40.0	10.0	40.0	50.0	3.20	1.135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이어서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 자격으로서 석사학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긍정 응답은 88.0%(적절한 편 80.0%+매우 적절 8.0%), 부정 4.0%, 평균 3.92점으로 가장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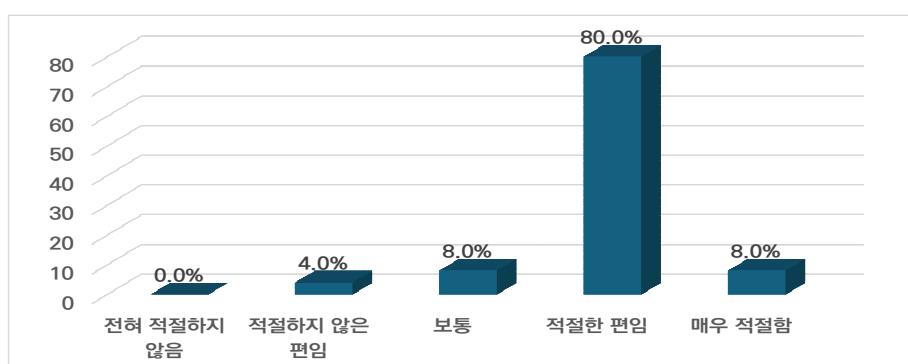


그림 IV-3. 학위 수준(석사)에 따른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성별로는 남성 85.7%, 여성 88.9%가 긍정이었고, 경력별로는 2년 이하 100.0%, 2~5년 66.7%, 5~9년 100.0%, 9년 초과 83.3%였다. 자격 등급별 긍정 비율은 1급 보유자 75.0%, 2급 90.0%, 3급 9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전반적으로 “석사 기준”은 대다수 집단에서 높은 타당성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3급 보유자와 일부 경력 구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9. 학위 수준(석사)에 따른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0.0	4.0	8.0	80.0	8.0	4.0	88.0	3.92	0.572	-
성별	남성	7	0.0	0.0	14.3	71.4	14.3	0.0	85.7	4.00	0.577
	여성	18	0.0	5.6	5.6	83.3	5.6	5.6	88.9	3.89	0.583
연령대	20대	7	0.0	0.0	0.0	85.7	14.3	0.0	100.0	4.14	0.378
	30대	10	0.0	0.0	20.0	80.0	0.0	0.0	80.0	3.80	0.422
	40대	3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50대	5	0.0	20.0	0.0	60.0	20.0	20.0	80.0	3.80	1.095
소속기관	상담복지센터	21	0.0	0.0	9.5	81.0	9.5	0.0	90.5	4.00	0.447
	기타	4	0.0	25.0	0.0	75.0	0.0	25.0	75.0	3.50	1.000
경력	2년 이하	5	0.0	0.0	0.0	80.0	20.0	0.0	100.0	4.20	0.447
	2년초과~5년이하	6	0.0	0.0	33.3	66.7	0.0	0.0	66.7	3.67	0.516
	5년초과~9년이하	8	0.0	0.0	0.0	87.5	12.5	0.0	100.0	4.13	0.354
	9년 초과	6	0.0	16.7	0.0	83.3	0.0	16.7	83.3	3.67	0.816
보유자격 등급	1급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0.816
	2급	10	0.0	0.0	10.0	90.0	0.0	0.0	90.0	3.90	0.316
	3급	10	0.0	10.0	0.0	80.0	10.0	10.0	90.0	3.90	0.738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 자격으로서 석사학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긍정 응답은 84.0%(적절한 편 68.0%+매우 적절 16.0%), 부정 8.0%, 평균 3.92점이었다.

성별 긍정 비율은 남성 85.7%, 여성 83.4%였고, 경력별로는 2년 이하 100.0%, 2~5년 83.4%, 5~9년 75.0%, 9년 초과 83.3%였다. 자격등급별 긍정 비율은 1급 보유자 75.0%,

2급 90.0%, 3급 80.0%로, 2급 보유자에서 특히 높았다. 종합하면 “학사 기준”도 대체로 긍정이 우세하며, 실무 초기~중기 경력층과 2급 보유자에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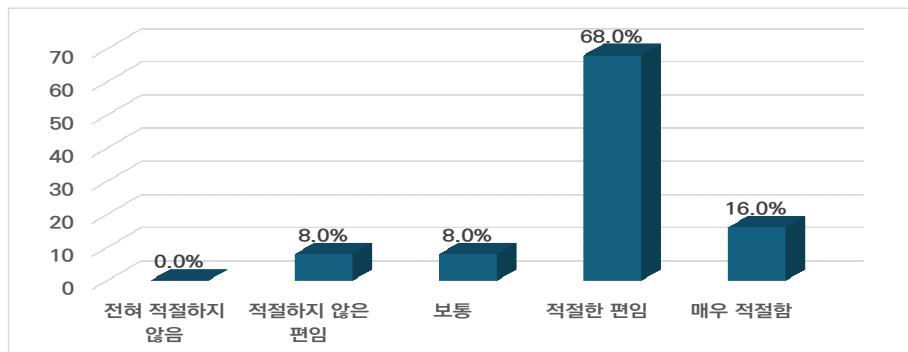


그림 IV-4. 학위 수준(학사)에 따른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표 IV-10. 학위 수준에 따른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0.0	8.0	8.0	68.0	16.0	8.0	84.0	3.92	0.759	-
성별	남성	7	0.0	0.0	14.3	71.4	14.3	0.0	85.7	4.00	0.577
	여성	18	0.0	11.1	5.6	66.7	16.7	11.1	83.4	3.89	0.832
연령대	20대	7	0.0	0.0	14.3	42.9	42.9	0.0	85.8	4.29	0.756
	30대	10	0.0	0.0	10.0	90.0	0.0	0.0	90.0	3.90	0.316
소속 기관	40대	3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50대	5	0.0	40.0	0.0	40.0	20.0	40.0	60.0	3.40	1.342
경력	상담복지센터	21	0.0	4.8	4.8	76.2	14.3	4.8	90.5	4.00	0.632
	기타	4	0.0	25.0	25.0	25.0	25.0	25.0	50.0	3.50	1.291
보유 자격 등급	2년 이하	5	0.0	0.0	0.0	60.0	40.0	0.0	100.0	4.40	0.548
	2년초과~5년이하	6	0.0	0.0	16.7	66.7	16.7	0.0	83.4	4.00	0.632
	5년초과~9년이하	8	0.0	12.5	12.5	62.5	12.5	12.5	75.0	3.75	0.886
※	9년 초과	6	0.0	16.7	0.0	83.3	0.0	16.7	83.3	3.67	0.816
	1급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0.816
	2급	10	0.0	10.0	0.0	90.0	0.0	10.0	90.0	3.80	0.632
	3급	10	0.0	10.0	10.0	50.0	30.0	10.0	80.0	4.00	0.943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②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인정 요건의 적절성 : 학과·전공 기준 / 과목이수제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인정 방식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양극(음(-) 학과·전공 기준, 양(+) 과목이수제 도입)으로 설정하고 -5점에서 +5점 사이로 응답하도록 제시한 설문 조사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평균값이 0을 상회하여 과목이수제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었다. 특히 보유 자격이 2급인 집단(n=10)은 전반적 의견 1.50, 1급 1.40, 2급 1.40, 3급 1.10으로 네 항목 모두에서 양(+)의 평균을 보였고, 3급 보유 집단(n=10) 역시 전반적 의견 1.22, 1급 0.70, 2급 0.90, 3급 1.70으로 나타나 과목이수제 선호가 일관되게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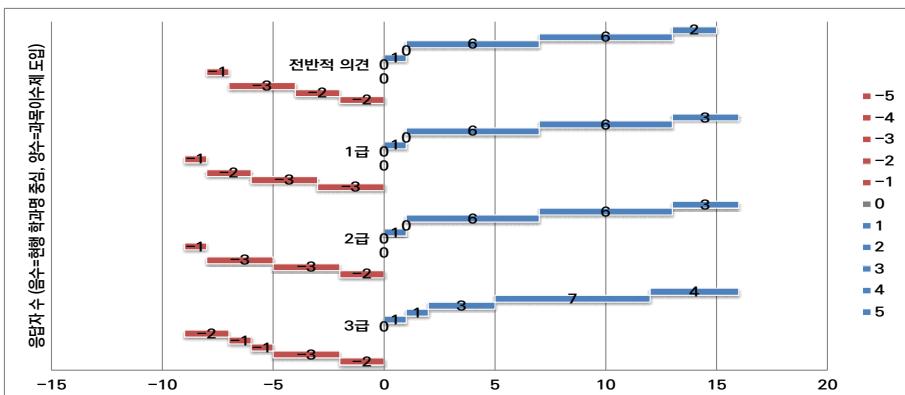


그림 IV-5.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기준 선호도 : (-) 현행 학과명 중심 ↔ (+) 과목이수제 도입

반면 1급 보유 집단(n=4)의 경우 전반적 의견 0.33, 1급 -0.25, 2급 0.25, 3급 0.25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음수로 나타나, 최상위 등급을 보유한 전문가들은 전공 중심 기준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제도의 응시 자격을 특정 전공으로 한정하기보다, 관련 과목 이수를 충족한 경우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는 인식이 다수임을 시사하며, 특히 중·하위 등급 응시 자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1.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기준 선호도 : (-) 현행 학과명 중심 ↔ (+) 과목이수제 도입

구분	사례 수	전반적인 의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상담사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1.09	3.592	-	0.96	3.791	-	1.04	3.680	-	1.12	3.643	-	
성별	남성	7	0.33	3.882	0.589	0.86	3.805	0.083	0.86	3.805	0.152	0.14	3.891	
	여성	18	1.35	3.570		1.00	3.896		1.11	3.740		1.67	3.565	-0.987
연령대	20대	7	2.17	3.601	2.072	1.29	4.386	1.901	1.57	3.952	2.114	2.71	3.592	
	30대	10	1.78	3.456		2.00	3.333		2.00	3.333		1.90	3.510	
	40대	3	2.33	1.155		2.33	1.155		2.33	1.155		1.00	2.000	
	50대	5	-2.20	3.564		-2.40	3.647		-2.40	3.647		-2.00	3.536	
소속기관	상담복지센터	21	1.00	3.667	-0.248	0.86	3.890	-0.305	0.95	3.761	-0.267	1.24	3.740	
	기타	4	1.50	3.697		1.50	3.697		1.50	3.697		1.25	3.594	-0.006
경력	2년 이하	5	1.80	3.834	0.232	2.00	4.000	0.384	2.00	4.000	0.313	2.00	4.062	
	2년초과~5년이하	6	0.83	3.971		0.83	3.971		0.83	3.971		0.83	3.971	
	5년초과~9년이하	8	0.17	4.309		-0.134	4.486		0.13	4.224		1.25	4.200	0.094
	9년 초과	6	1.67	2.944		1.67	2.944		1.67	2.944		1.00	3.033	
보유 자격 등급	1급	4	-1.67	3.055	0.918	-0.25	3.775	0.259	-0.25	3.775	0.265	-0.25	3.775	
	2급	10	1.50	3.375		1.40	3.534		1.40	3.534		1.10	3.446	0.381
	3급	10	1.22	4.024		0.70	4.373		0.90	4.122		1.70	4.084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3) 선택한 방식의 제도 운영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나 보완 사항(주관식)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기준의 선호도와 관련하여, 현행 학과명 중심 제도를 선택한 응답자와 과목이수제 도입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제도 운영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나 보완 사항에 관한 주관식 응답을 분석하였다.

먼저, 응시 자격을 현행 학과·전공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 응답자들($n=11$)은 제도적 틀의 안정성과 교육과정 단위의 품질 보증을 강점으로 보면서도, 운영은 표준화·인증·슈퍼비전 축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두었다. 구체적으로, 전공 인정 범위, 핵심 기초과목의 최소 학점·이수 기준, 증빙 요건을 명확히 고시하여 기관·지역 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학교 현장과 응시자에 대한 안내나 학과·전공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인된다. 동시에 일부는 “기존 학과 단위 인정은 교육과정 전반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전제를 들어, 구조 자체의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과목이수제 개편을 지지한 응답자들(n=16)은 개방성과 검증가능성의 동시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과목이수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핵심·공통과목 목록과 학점·성적·증빙의 표준화, 실습·수련·슈퍼비전·평가의 연계를 통해 실제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인정 과목의 요건을 명확히 하되 포함 범위의 유연성”을 병행하고, 학점은행제 이수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두 입장은 접근법이 다르지만, 무엇을 어떻게 이수·검증·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규준의 구체화, 현장 실습과 슈퍼비전의 제도화, 응시자 대상 안내의 표준화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전공 중심은 구조의 안정성을, 과목이수제는 역량 기반의 개방성을 각각 장점으로 보되, 양측 모두 명확한 기준·인증·평가·환류 체계의 구축이 제도 신뢰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④ 청소년상담사 응시요건 중 실무경력 대체 방안 도입에 관한 의견

청소년상담사 응시요건 중 실무경력 대체 방안 도입에 대한 전체 응답은 전혀 적절하지 않음 4.0%, 적절하지 않은 편 20.0%, 보통 12.0%, 적절한 편 44.0%, 매우 적절함 20.0%로, 긍정 응답(‘적절한 편’ 이상) 64.0%, 부정 응답 24.0%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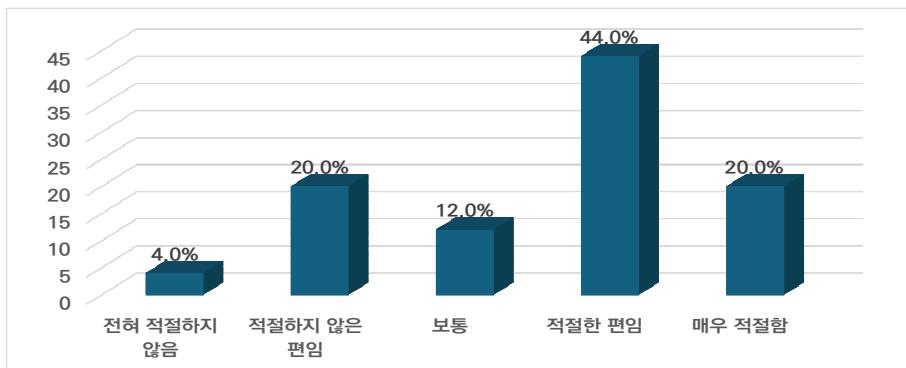


그림 IV-6. 청소년상담사 응시요건 중 실무경력 대체 방안 도입에 관한 의견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평균 3.43, 여성 평균 3.61로 모두 긍정 영역이며, 연령대는 20대 평균 3.86(긍정 71.4%), 30대 3.50(긍정 60.0%), 40대 3.00(긍정 33.3%), 50대 3.60(긍정 80.0%)으로 20대·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도가 나타났다.

한편, 소속별로는 상담복지센터 평균 3.48(긍정 57.1%), 기타 기관 4.00(긍정 100.0%)으로, 센터 외 기관 응답자에서 도입 타당성 인식이 특히 높았다. 경력별로는 2년 이하 평균 3.40(긍정 60.0%), 2~5년 3.50(긍정 50.0%), 5~9년 3.88(긍정 87.5%), 9년 초과 3.33(긍정 50.0%)으로 5~9년 구간에서 긍정 응답과 평균치가 모두 가장 높았다. 보유 자격 등급별로는 1급 평균 4.50(긍정 100.0%), 2급 3.30(긍정 50.0%), 3급 3.40(긍정 60.0%)로 파악되어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도입에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실무경력 대체 방안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나, 경력 9년 초과나 일부 연령·등급 집단에서는 중립·보수적 시각이 병존함을 보여주며, 제도 설계 시 집단별 기대·우려를 반영한 품질관리 장치(실습·수련 기준, 인증·평가 절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12. 청소년상담사 응시요건 중 실무경력 대체 방안 도입에 관한 의견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작용하지 않음	작용하지 않은 편임	보통	작절한 편임	매우 작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4.0	20.0	12.0	44.0	20.0	24.0	64.0	3.56	1.158	-
성별	남성	7	0.0	42.9	0.0	28.6	28.6	42.9	57.2	3.43	1.397
	여성	18	5.6	11.1	16.7	50.0	16.7	16.7	66.7	3.61	1.092
연 령 대	20대	7	0.0	0.0	28.6	57.1	14.3	0.0	71.4	3.86	.690
	30대	10	10.0	30.0	0.0	20.0	40.0	40.0	60.0	3.50	1.581
	40대	3	0.0	33.3	33.3	33.3	0.0	33.3	33.3	3.00	1.000
	50대	5	0.0	20.0	0.0	80.0	0.0	20.0	80.0	3.60	.894
소속 기관	상담복지센터	21	4.8	23.8	14.3	33.3	23.8	28.6	57.1	3.48	1.250
	기타	4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경력	2년 이하	5	0.0	20.0	20.0	60.0	0.0	20.0	60.0	3.40	0.894
	2년초과~5년이하	6	0.0	33.3	16.7	16.7	33.3	33.3	50.0	3.50	1.378
	5년초과~9년이하	8	12.5	0.0	0.0	62.5	25.0	12.5	87.5	3.88	1.246
	9년 초과	6	0.0	33.3	16.7	33.3	16.7	33.3	50.0	3.33	1.211
보유 자격 등급	1급	4	0.0	0.0	0.0	50.0	50.0	0.0	100.0	4.50	.577
	2급	10	0.0	40.0	10.0	30.0	20.0	40.0	50.0	3.30	1.252
	※ 3급	10	10.0	10.0	20.0	50.0	10.0	20.0	60.0	3.40	1.174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⑤ 청소년상담사 실습·수련제도 도입시 운영 조건(시간, 인증 방식 등) 고려 필요사항 (주관식)

이 문항은 청소년상담사 실습·수련 제도 도입을 전제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운영 조건과 품질관리 측면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주관식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응답 전반에서는 실습·수련 제도를 도입할 때 요구되는 최소 요건과 실습·수련 품질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상담사 실습·수련은 인증기관 중심 운영을 전제로 최소 이수시간·내용의 명문화, 슈퍼비전 제도화, 기록-평가-환류 절차의 내재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특히, 형식적 이수가 아니라 학습성과의 증명을 중시하는 기조가 뚜렷했는데, 실습기관의 공공성과 절차 일관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에서 인정한 공공기관에서만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팀장급 이상의 직위자가 실습 상담 시간을 인증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인정 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응답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실습·수련의 품질 관리를 구체화하는 장치도 제안되었다. 예컨대 “1급 이상의 인증된 슈퍼바이저에게 개인과 집단상담을 각 20시간 이상 슈퍼비전을 받았는지와 상담활동 기록지와 사례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자는 요구는 증빙 표준화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지도자 역량 기준 역시 핵심 축으로 드러났으며, “실습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급 자격증 취득자와 3년 이상 경력 같은 식으로 실습 지도자의 역량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와 같은 응답이 이를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실습·수련의 신뢰도는 인증-기준-평가-안전-보상이 끊김 없이 연결된 전주기 설계의 구체화 수준에 좌우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⑥ 청소년상담사 실습/수련제도 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 (주관식)

이어서 청소년상담사 실습/수련제도 이외에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를 묻는 주관식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가능한 추가 제도 아이디어를 수집·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추가 도입 제도에 관한 응답은 자격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운영·관리 장치를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핵심 축은 실무 단계에서의 체계적 지도와 복귀 경로 관리, 그리고 새로운 훈련 방식의 탐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장에서의 역량 유지를 위해 의무적 슈퍼비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는데, 한 응답은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경력 기간 동안 일정 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전문가로부터 받는 상담지도)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것은 상담사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함”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력단절 및 직무공백에 대한 재적용 교육 필요성도 반복되어, “경력이 단절이 된 경우나 관련 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1~2년공백) 현장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한다고 생각함. (30~50시간)”이라는 구체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훈련 방식의 혁신과 관련해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언급되었는데, “현재 상담은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AI를 활용하여 실습과 수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에 관련된 AI 형성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응답은 비용·시간 제약을 완화하는 보완 경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이해될 수 있다.

(2)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체계

① 바람직한 청소년상담사 등급 체계 : 현행 3등급 체계 / 2등급(1급·2급) 체계

바람직한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체계를 -5점(현행 3등급 체계 선호)~+5점(2등급 [1·2급] 체계 선호)로 평가한 단일 문항의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이 -2.12점으로 나타나 응답자 전반이 현행 3등급 체계 유지 쪽으로 기울어 있음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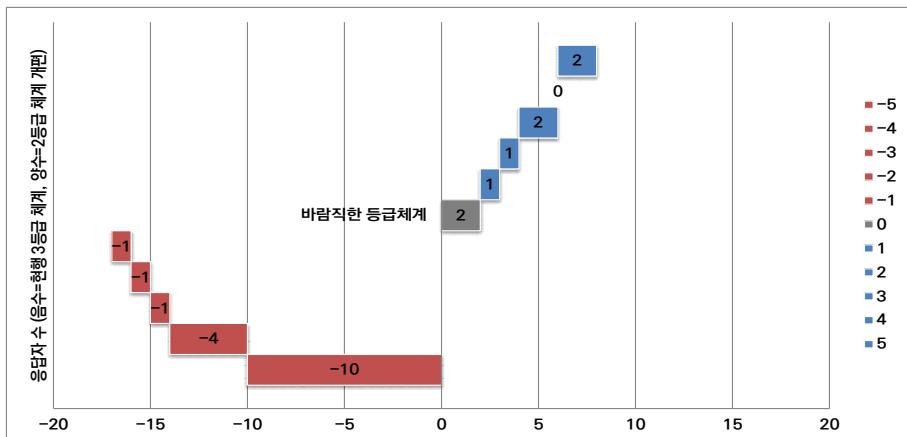


그림 IV-7. 바람직한 자격 등급 체계 : (-) 현행 3등급 체계 ↔ (+) 2등급(1급·2급) 체계

집단별로는 남성 -0.29점에 비해 여성 -2.83점으로 부정영역 절대값이 더 커 여성에서 현 체계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연령대별 평균은 20대 -2.14점, 30대 -1.90점, 40대 -2.00점, 50대 -2.60점으로 모든 연령대가 3등급 유지에 우호적이었다. 소속별로는 상담 복지센터 -2.24점, 기타 기관 -1.50점이었고, 경력별로는 2년 이하 -0.60점, 2~5년 -3.00점, 5~9년 -1.63점, 9년 초과 -3.17점으로 경력이 길수록 3등급 체계 선호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보였다. 보유 자격 등급별 평균은 1급 -1.75점, 2급 -1.30점, 3급 -2.90점으로 집단 모두 3등급 유지에 우호적이되, 3급 보유 집단에서 선호 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분포는 자격 단계에 따른 역할·숙련도의 구분을 유지하려는 현장 인식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일부 집단(예: 남성, 경력 2년 이하)에서는 절대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체계 개편 논의 여지도 제한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관련 막대분포(그림 IV-9) 역시 음(-) 구간의 빈도가 양(+) 구간보다 우세한 형태로 시각화되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표 IV-13. 바람직한 자격 등급 체계 : (-) 현행 3등급 체계 ↔ (+) 2등급(1급·2급) 체계

구분		사례수	전반적인 의견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5	-2.12	3.468	-
성별	남성	7	-0.29	3.904	1.715
	여성	18	-2.83	3.111	
연령대	20대	7	-2.14	2.968	0.041
	30대	10	-1.90	3.985	
	40대	3	-2.00	3.000	
	50대	5	-2.60	4.278	
소속기관	상담복지센터	21	-2.24	3.562	-0.383
	기타	4	-1.50	3.317	
경력	2년 이하	5	-0.60	3.782	0.656
	2년초과~5년이하	6	-3.00	3.162	
	5년초과~9년이하	8	-1.63	4.307	
	9년 초과	6	-3.17	2.317	
보유자격 등급 ※	1급	4	-1.75	3.775	0.510
	2급	10	-1.30	4.244	
	3급	10	-2.90	2.726	

* $p < 0.05$, ** $p < 0.01$, *** $p < 0.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② 선택한 방향의 체계 추진시 고려해야할 조건 또는 보완사항 (주관식)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체계를 현행 3등급 체계 유지와 2등급 체계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입장별로 선택한 입장에서 등급 체계를 운영해 나갈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3등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들(n=21)은 등급 간 직무·난이도·역할의 차별화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초급 진입의 통로와 단계적 숙련 경로라는 기능적 장점이 강조되었으며, “3급은 예방적·보편적 상담, 2·1급은 위기 개입·심화 상담·전문 사례관리”로 역할을 구분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현행 3등급 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며, … 현장 유입을 용이하게 해 경험을 쌓고 2급, 1급으로 승급”한다는 응답처럼, 진입→성장→숙련의 단계성을 제도 설계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립 응답자들(n=2)은 선택의 기준을 현장성·운영 가능성·품질관리에 둬야 한다고 보며, “자격증 발급 목적의 명확성”과 신뢰성 담보 장치의 선행을 주문한다. 반면 2등급 체계 개편을 지지하는 응답자들(n=6)은 기능의 명료화와 역량 기준의 일관성을 중점에 두고 있었다. “3급은 학부 졸업 후 응시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상·하위 등급의 역할을 “1급(전문가/관리자/수퍼바이저)-2급(실무자)”로 재정의하고 승급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응답들을 종합하면 유지론은 단계적 경력경로와 역할 구분을 통해 현장 안정성을, 개편론은 불일치·중복의 정리와 기준 일관성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모두 승급 기준의 명료화, 연수·평가와의 접합, 운영 표준의 정교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대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고 있었다.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체계

① 현행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현장 직무 수행 적절성

현행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이 현장 직무 수행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 25명 기준 ‘적절한 편’ 68.0%, ‘매우 적절함’ 8.0%로 긍정 응답 합계 76.0%, 부정(‘전혀/적절하지 않음’) 8.0%, 보통 16.0%가 나타났고, 평균은 3.72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100.0%가 ‘적절’ 이상으로 평가해 평균 4.00점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긍정 66.7%·평균 3.61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긍정 71.4% 평균 3.71점,

30대 긍정 80.0% 평균 3.70점, 40대 긍정 66.7% 평균 3.33점, 50대 긍정 80.0% 평균 4.00점으로 30·50대에서 수용도가 높고 40대에서 평균이 다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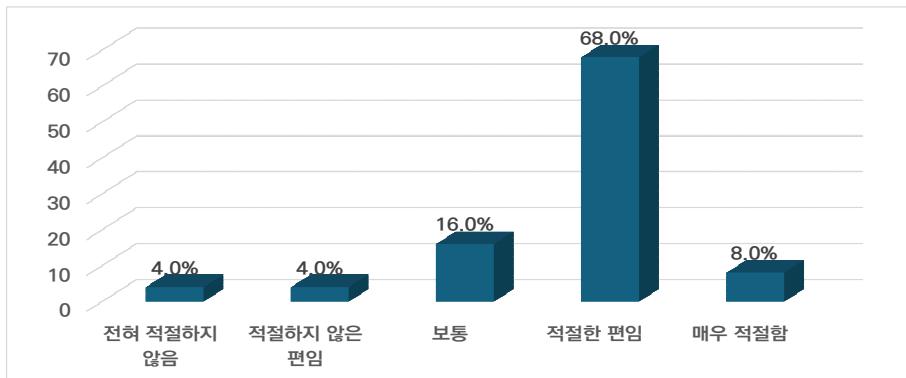


그림 IV-8. 현행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현장 직무 수행 연관성

소속별로는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긍정 80.9%·평균 3.76점, 기타 기관 50.0%·3.50점으로, 센터 종사자에게서 현장 연관성 인식이 더 높았다. 그리고 경력별로는 2년 이하 응답자의 모두가 4점을 응답했으며, 2~5년 응답자의 긍정 비율 83.4% 평균 4.00점, 5~9년 응답자의 긍정 비율 62.5% 평균 3.50점, 9년 초과 응답자의 긍정 비율 66.7% 평균 3.50점으로 초기~초·중기 경력 층에서 현행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과 현장 직무 수행 간 연관성 인식이 특히 높고, 중·상경력으로 갈수록 ‘보통’ 응답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유 자격 등급별로는 1급 긍정 75.0% 평균 3.75점, 2급 긍정 90.0% 평균 4.00점, 3급 긍정 70.0% 평균 3.50점으로 2급 보유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3급은 긍정이 우세하되 ‘보통’과 일부 부정 응답이 섞여 분포가 넓었다.

종합하면, 현행 검정 과목은 대체로 현장 직무와의 연결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며, 특히 남성·30·50대·상담복지센터 종사자·초기 경력 및 2급 보유자 집단에서 긍정이 강하다. 반면 40대·중·상경력·일부 3급 보유자에서는 ‘보통’ 또는 제한적 부정 응답이 확인되어, 과목 구성의 실제 업무 적합성을 더 세분화·정교화(예: 과목 간 중복 정리, 현장 사례·실습 요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4. 현행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현장 직무 수행 연관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직무보다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4.0	4.0	16.0	68.0	8.0	8.0	76.0	3.72	0.843	-
성별	남성	7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여성	18	5.6	5.6	22.2	55.6	11.1	11.2	66.7	3.61	0.979
연 령 대	20대	7	0.0	0.0	28.6	71.4	0.0	0.0	71.4	3.71	0.488
	30대	10	10.0	0.0	10.0	70.0	10.0	10.0	80.0	3.70	1.059
	40대	3	0.0	33.3	0.0	66.7	0.0	33.3	66.7	3.33	1.155
	50대	5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0.707
소속 기관	상담복지센터	21	4.8	4.8	9.5	71.4	9.5	9.6	80.9	3.76	0.889
	기타	4	0.0	0.0	50.0	50.0	0.0	0.0	50.0	3.50	0.577
경력	2년 이하	5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2년초과~5년이하	6	0.0	0.0	16.7	66.7	16.7	0.0	83.4	4.00	0.632
	5년초과~9년이하	8	12.5	0.0	25.0	50.0	12.5	12.5	62.5	3.50	1.195
	9년 초과	6	0.0	16.7	16.7	66.7	0.0	16.7	66.7	3.50	0.837
보유 자격 등급	1급	4	0.0	25.0	0.0	50.0	25.0	25.0	75.0	3.75	1.258
	2급	10	0.0	0.0	10.0	80.0	10.0	0.0	90.0	4.00	0.471
	3급	10	10.0	0.0	20.0	70.0	0.0	10.0	70.0	3.50	0.972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②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필수·선택 구성 : 현행 유지 / 필수과목 중심 개편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과목의 선택·필수 등 구성에 대해 -5점(현행 유지)~+5점(필수 중심 개편)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0.28점으로 소폭이나마 현행 구성을 유지하는 쪽에 기울어 있었다.

집단별 평균을 보면 남성 0.00점, 여성 -0.39점으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에서 약한 ‘현행 유지’ 성향이 관찰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0.14점, 30대 0.00점, 40대 1.00점, 50대 -2.20점으로, 40대는 ‘필수 중심 개편’ 쪽(+1.00)으로 이동한 반면, 50대는 ‘현행 유지’ 선호(-2.20)가 뚜렷했다. 소속별로는 상담복지센터 -0.81점, 기타 기관 2.50점으로, 센터 종사자는 현행 유지, 기타 기관 종사자는 필수 중심 개편을 선호하는 양상이 대비된다. 경력별 평균은 2년 이하 -0.80점, 2~5년 -1.00점, 5~9년 0.00점, 9년 초과 0.50점으로, 경력 9년 초과에서만 개편 쪽(+0.50)으로 다소 기울었고, 그 외 구간은 대체로 현행 유지 혹은 중립에 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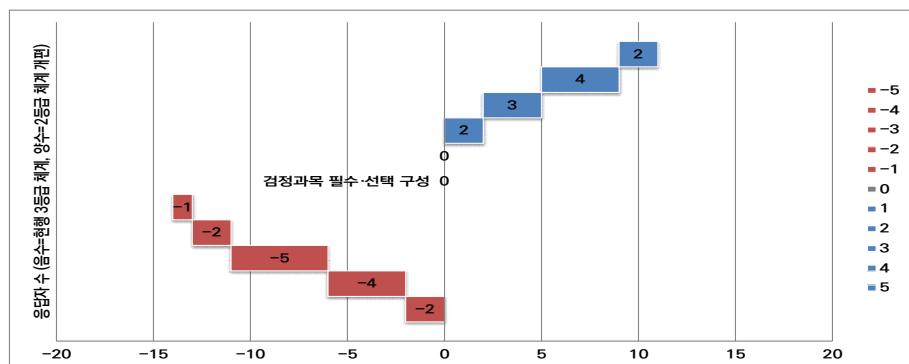


그림 IV-9.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필수·선택 구성 : (-) 현행 유지 ↔ (+) 필수 중심 개편

보유 자격 등급별로는 1급 -2.00점, 2급 -0.30점, 3급 -0.10점으로 1급 보유자에서 현행 유지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종합하면, 전반적 경향은 현행 구성 유지에 우세해지되, 기타 기관 종사자·40대·경력 9년 초과 집단에서는 ‘필수 중심 개편’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집단 특성에 따라 과목 구성의 경향성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표 IV-15.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필수·선택 구성 : (-) 현행 유지 ↔ (+) 필수 중심 개편

구분	사례수	전반적인 의견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25	-0.28	3.623	-
성별	남성	0.00	3.162	0.236
	여성	-0.39	3.867	
연령대	20대	0.14	4.220	0.613
	30대	0.00	3.162	
	40대	1.00	3.606	
	50대	-2.20	4.087	
소속기관	상담복지센터	-0.81	3.444	-1.744
	기타	2.50	3.697	
경력	2년 이하	-0.80	3.962	0.200
	2년초과~5년이하	-1.00	2.828	
	5년초과~9년이하	0.00	4.629	
	9년 초과	0.50	3.271	
보유자격 등급*	1급	-2.00	2.944	0.420
	2급	-0.30	3.199	
	3급	-0.10	4.175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필수 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과목 또는 역량 (주관식)
이 문항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개편을 전제로, 필수 과목과 핵심 역량을 어떤 원칙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파악하고자 제시한 문항이다. 텍스트를 코딩한 결과, 필수 과목은 상담이론·기법, 윤리, 법, 발달·이상심리, 평가·측정, 연구방법의 공통 축 위에, 핵심역량 매트릭스→과목-역량 맵핑→사례·실습 기반 평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편, 역량의 단계화와 1급의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요구도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위기 관리와 상담의 핵심 역량, 청소년 정책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 상담 기록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급의 경우, 슈퍼비전, 상담 윤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진술이 그것이다. 동시에 교육과 현장의 접점을 넓히라는 목소리가 꾸준했다. “청소년 이슈의 최근 동향과 중독, 마약과 같은 주제를 보완하고 청소년기관 및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응답은 교과의 최신성·현장성 고려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목 구체화 제안으로는 “상담 기법과 면접, 청소년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위기상담, 이상심리, 비행상담, 사례지도 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라는 의견이 다수의 응답 방향과 맞닿아 있었다. 요컨대, 핵심역량-과목-평가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어질 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구성의 타당성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의 현장 적합성이 동시에 강화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전형 및 평가 방식

①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적절성

다음으로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적절성에 관한 현직 청소년상담사들의 평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 25명 기준 적절하지 않은 편 4.0%, 보통 8.0%, 적절한 편 68.0%, 매우 적절함 20.0%로 나타나 긍정 응답(‘적절한 편’ 이상) 비율이 88.0%, 평균은 4.04점이었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평균 3.71점(긍정 71.4%)과 여성 평균 4.17점(긍정 94.4%)으로 모두 긍정 영역에 분포하되 여성 집단에서 수용도가 더 높았다. 연령대별 평균은 20대 4.00점, 30대 4.00점, 40대 4.00점으로 유사하며, 각 집단 내에서도 ‘적절’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종합하면 필기시험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평가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문항 난이도·내용 타당성·출제 영역의 적합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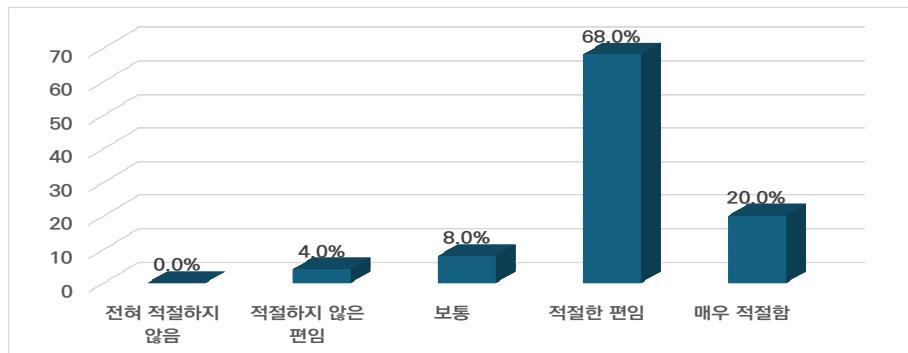


그림 IV-10.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필기시험의 적절성

표 IV-16.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필기시험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0.0	4.0	8.0	68.0	20.0	4.0	88.0	4.04	0.676	-
성별	남성	7	0.0	14.3	14.3	57.1	14.3	71.4	3.71	0.951	-1.56
	여성	18	0.0	0.0	5.6	72.2	22.2	0.0	94.4	4.17	
연 령 대	20대	7	0.0	14.3	0.0	57.1	28.6	14.3	85.7	4.00	1.000
	30대	10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0.667
	40대	3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50대	5	0.0	0.0	0.0	80.0	20.0	0.0	100.0	4.20	0.447
소속 기관	상담복지센터	21	0.0	4.8	9.5	61.9	23.8	4.8	85.7	4.05	0.740
	기타	4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경력	2년 이하	5	0.0	20.0	0.0	80.0	0.0	20.0	80.0	3.60	0.894
	2년초과~5년이하	6	0.0	0.0	16.7	50.0	33.3	0.0	83.3	4.17	0.753
	5년초과~9년이하	8	0.0	0.0	12.5	50.0	37.5	0.0	87.5	4.25	0.707
	9년 초과	6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보유 자격 등급	1급	4	0.0	0.0	25.0	25.0	50.0	0.0	75.0	4.25	0.957
	2급	10	0.0	0.0	0.0	90.0	10.0	0.0	100.0	4.10	0.316
	3급	10	0.0	10.0	10.0	60.0	20.0	10.0	80.0	3.90	0.876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이어서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면접시험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응답 25명 중 ‘적절한 편’이 68.0%, ‘매우 적절함’이 20.0%로 합산 88.0%가 긍정 응답을 보였으며, 면접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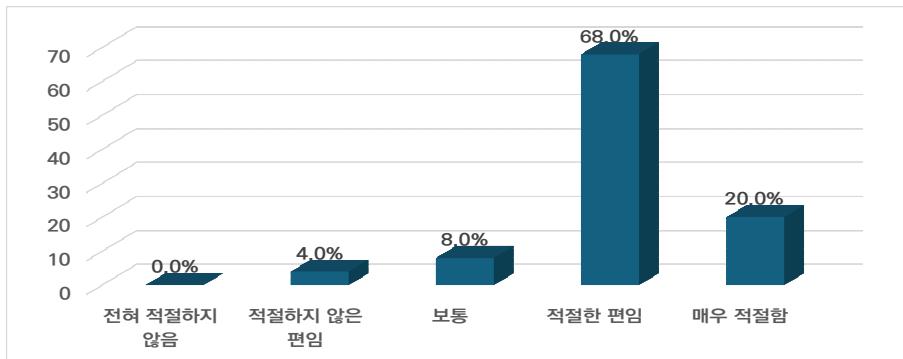


그림 IV-11.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면접시험의 적절성

자격등급별로 보면 1급 응답자의 평균 평점이 3.25로 상대적으로 낮고, 2급과 3급은 각각 3.80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1급 집단에서 면접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현장 실무와 고난도 전문성 평가가 중요한 상위 등급일수록 면접 문항의 난이도·내용 타당도·평가 일관성 등에 더 엄격한 기대가 작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7.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면접시험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0.0	8.0	28.0	52.0	12.0	8.0	64.0	3.68	0.802	-
성별	남성	7	0.0	14.3	28.6	57.1	0.0	14.3	57.1	3.43	0.787
	여성	18	0.0	5.6	27.8	50.0	16.7	5.6	66.7	3.78	0.808
연 령 대	20대	7	0.0	0.0	28.6	42.9	28.6	0.0	71.5	4.00	0.816
	30대	10	0.0	20.0	30.0	40.0	10.0	20.0	50.0	3.40	0.966
	40대	3	0.0	0.0	0.0	100.0	0.0	0.0	100.0	4.00	0.000
	50대	5	0.0	0.0	40.0	60.0	0.0	0.0	60.0	3.60	0.548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작동하지 않음	작동하 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소속 기관	상담복지센터	21	0.0	9.5	23.8	52.4	14.3	9.5	66.7	3.71	0.845
	기타	4	0.0	0.0	50.0	50.0	0.0	0.0	50.0	3.50	0.577
경력	2년 이하	5	0.0	0.0	40.0	60.0	0.0	0.0	60.0	3.60	0.548
	2년초과~5년이하	6	0.0	16.7	16.7	33.3	33.3	16.7	66.6	3.83	1.169
	5년초과~9년이하	8	0.0	12.5	25.0	50.0	12.5	12.5	62.5	3.63	0.916
보유 자격 등급	9년 초과	6	0.0	0.0	33.3	66.7	0.0	0.0	66.7	3.67	0.516
	1급	4	0.0	25.0	25.0	50.0	0.0	25.0	50.0	3.25	0.957
	2급	10	0.0	0.0	30.0	60.0	10.0	0.0	70.0	3.80	0.632
	※ 3급	10	0.0	10.0	20.0	50.0	20.0	10.0	70.0	3.80	0.919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의 개선 필요 사항 (주관식)

이어서 필기시험이 지식 확인을 넘어 현장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전형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응답에서는 필기시험의 역할을 지식 확인에서 현장 역량 측정으로 확장하려면, 항목 품질과 평가 방식의 동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특히, 다수의 응답에서는 문항은행·출제표준에 기초한 품질관리와 난이도·출제범위 관리의 체계화, 사례·현장성 강화, 필요 범위의 서술형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었다.

우선 내용 타당성을 확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특성과 현재 이슈에 대한 현장 중심의 문항이 필요함. 상담이론 또한 기존의 상담뿐만 아니라 최근 이론이나 기법,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계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시험이 되어야 함”과 같은 진술이 보고되었다. 동시에 형식 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례에 대한 이해와 종합적인 평가를 묻는 서술형 질문이 추가되면 현장 중심의 검정이 가능해 보임”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등급별 책무에 부합하는 차등화 방향을 제안한 의견으로는 “3급은 이론 중심 문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2급부터는 현장과 사례 중심 문항, 직무역량 기반 문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과 같은 응답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안에 따르면 문항은행·출

제표준·난이도/범위·현장성·서술형의 결합을 통해 필기시험의 문제해결 역량을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체계로 재정렬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면접시험의 개선 필요 사항 (주관식)

이 문항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면접시험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평정 장치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였다. 응답 전반에서는 루브릭·표준화·채점 기준표, 다중면접·복수 면접관, 블라인드 처리, 면접관 사전 훈련·교정, 사례/상황 기반 역량평가를 결합한 개선 패키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접관 요건과 구조화가 핵심으로 지목되어, 한 응답자는 “면접관의 자격부터 개선해야 하며 1급 자격과 현장 경력을 가진 면접관을 배치하고 표준 매뉴얼을 구조화하여 평가항목을 구체화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라고 하였다. 시험 환경과 배정 요인에 따른 편차 우려도 확인되었는데, 한 응답자는 “배정된 고사장이나 면접관의 요인에 따른 합격 비율의 편차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함”이라고 지적하면서, 면접의 신뢰도와 공정성은 결국 기준과 원칙의 명확화, 평가 교육·훈련 강화, 사례평가 등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방법의 도입 등이 청소년상담사 면접시험의 신뢰도 제고 방안 모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평가 반영 제도 도입의 적절성

이어서,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에 관한 문항을 조사하였다. 먼저,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평가 결과를 자격증 교부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전체 분포는 전혀 적절하지 않음 4.0%, 적절하지 않은 편 8.0%, 보통 8.0%, 적절한 편 44.0%, 매우 적절함 36.0%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긍정(‘적절한 편’ 이상) 80.0%, 부정 12.0%, 중립 8.0%, 평균 4.00점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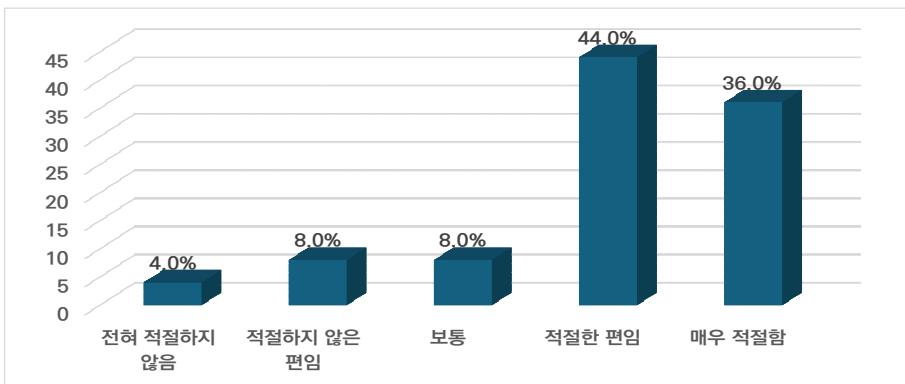


그림 IV-12.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평가 결과 반영 제도 도입의 적절성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평균 점수는 4.00으로 동일하나, 긍정응답 비율에서는 남성이 71.5%, 여성은 83.3%으로 나타나 여성 집단에서 도입 타당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은 20대 4.57점(긍정 85.7%), 30대 3.70점(긍정 70.0%), 40대 3.33점(긍정 66.7%), 50대 4.20점(긍정 100.0%)으로, 20·50대에서 가장 높은 수용이 확인되고 있다. 소속별로는 상담복지센터와 기타 기관 모두 평균은 4.00점이나 긍정응답 비율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1.0%, 기타 기관 75.0%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응답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자격연수 평가 결과를 최종 자격증 교부 여부에 반영하는 제도에 관한 의견은 도입 찬성(80%)이 우세하며, 특히 20·50대,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집단에서 수용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정에 ‘평가—환류—자격 부여’의 연계성을 부여해 실질 역량을 확인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일부 부정 응답(12%)이 존재한다는 점은 연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한 공정한 기준 등 품질관리 장치를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표 IV-18.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평가 결과 반영 제도 도입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작절하지 않음	작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작절한 편임	매우 작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4.0	8.0	8.0	44.0	36.0	12.0	80.0	4.00	1.080	-
성별	남성	7	0.0	14.3	14.3	28.6	42.9	14.3	71.5	4.00	1.155
	여성	18	5.6	5.6	5.6	50.0	33.3	11.2	83.3	4.00	1.085
연 령 대	20대	7	0.0	0.0	14.3	14.3	71.4	0.0	85.7	4.57	0.787
	30대	10	10.0	10.0	10.0	40.0	30.0	20.0	70.0	3.70	1.337
	40대	3	0.0	33.3	0.0	66.7	0.0	33.3	66.7	3.33	1.155
	50대	5	0.0	0.0	0.0	80.0	20.0	0.0	100.0	4.20	0.447
소속 기관	상담복지센터	21	4.8	9.5	4.8	42.9	38.1	14.3	81.0	4.00	1.140
	기타	4	0.0	0.0	25.0	50.0	25.0	0.0	75.0	4.00	0.816
경력	2년 이하	5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1.000
	2년초과~5년이하	6	0.0	16.7	0.0	66.7	16.7	16.7	83.4	3.83	0.983
	5년초과~9년이하	8	0.0	0.0	0.0	37.5	62.5	0.0	100.0	4.63	0.518
	9년 초과	6	16.7	16.7	0.0	50.0	16.7	33.4	66.7	3.33	1.506
보유 자격 등급	1급	4	0.0	25.0	0.0	25.0	50.0	25.0	75.0	4.00	1.414
	2급	10	10.0	10.0	10.0	50.0	20.0	20.0	70.0	3.60	1.265
	※ 3급	10	0.0	0.0	10.0	40.0	50.0	0.0	90.0	4.40	0.699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 연수의 개선 필요 사항 (주관식)

청소년상담사 자격 연수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연수의 실효성-접근성-품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제시된 주관식 응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격연수 평가 결과를 자격 부여에 연계하고, 인증기관·표준화 과정 위에서 사례·프로젝트 기반 실습과 멘토링·슈퍼비전을 강화하며, 제공 방식은 온라인-오프라인 혼합으로 유연하게 설계하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격 연수과정에서 실무역량을 평가하고 결과가 자격 교부에 직접 반영되도록 조정했으면 한다”는 응답은 자격 연수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필기와 면접 합격 후 실시되는 자격 연수는 정해진 일정과 시간에 참여해야 하므로 직장인의 경우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 온라인 강의 대체와

과제 대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청소년상담사 자격 연수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온라인 과정과 과제형 연수 등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례 중심, 체험 중심의 교육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지역별로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주면 상담사들 간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은 현장성·연결성을 동시에 높이는 프로그램 구성 필요성을 제시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③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과 자격 갱신 연계 제도 도입의 적절성

보수교육 결과를 자격 갱신에 연계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전체 분포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0.0%, 적절하지 않은 편 4.0%, 보통 16.0%, 적절한 편 48.0%, 매우 적절함 32.0%로 확인되었으며, 긍정(‘적절한 편’ 이상) 80.0%, 부정 4.0%(‘적절하지 않은 편’ 이하), 중립 16.0%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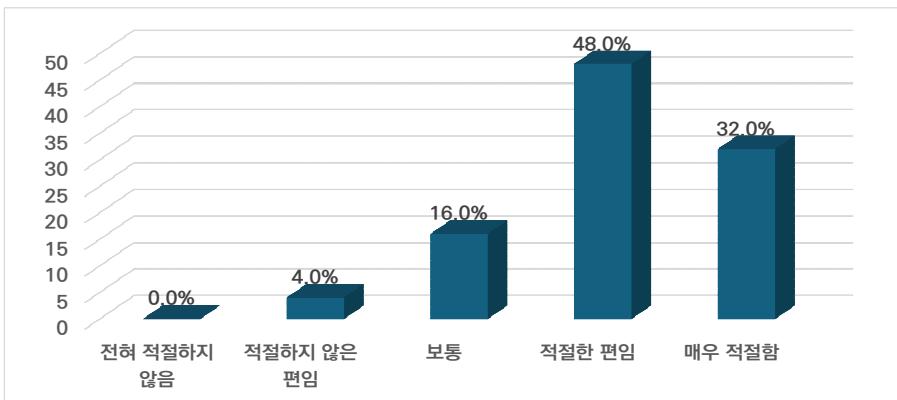


그림 IV-13.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과 자격 갱신 연계 제도 도입의 적절성

이러한 응답 분포는 뚜렷하게 긍정 쪽으로 치우쳐 있어, 보수교육의 이수·평가 결과를 자격 갱신과 연동해 실제 역량의 유지·점검 기능을 강화하자는 인식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립(16.0%)과 소수의 부정(4.0%) 응답은 제도 설계 시 교육 참여 기회 및 접근성(지역·기관 간 편차),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재교육 및 보완 조치를 포함한 환류 체계와 같은 품질관리 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9.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과 자격 갱신 연계 제도 도입의 적절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작용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 부적절	* 적절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5	0.0	4.0	16.0	48.0	32.0	4.0	80.0	4.08	0.812	-
성별	남성	7	0.0	0.0	14.3	57.1	28.6	0.0	85.7	4.14	0.690
	여성	18	0.0	5.6	16.7	44.4	33.3	5.6	77.7	4.06	0.873
연 령 대	20대	7	0.0	0.0	28.6	14.3	57.1	0.0	71.4	4.29	0.951
	30대	10	0.0	10.0	10.0	60.0	20.0	10.0	80.0	3.90	0.876
	40대	3	0.0	0.0	0.0	66.7	33.3	0.0	100.0	4.33	0.577
	50대	5	0.0	0.0	20.0	60.0	20.0	0.0	80.0	4.00	0.707
소속 기관	상담복지센터	21	0.0	4.8	9.5	47.6	38.1	4.8	85.7	4.19	0.814
	기타	4	0.0	0.0	50.0	50.0	0.0	0.0	50.0	3.50	0.577
경력	2년 이하	5	0.0	0.0	40.0	20.0	40.0	0.0	60.0	4.00	1.000
	2년초과~5년이하	6	0.0	0.0	0.0	83.3	16.7	0.0	100.0	4.17	0.408
	5년초과~9년이하	8	0.0	0.0	25.0	37.5	37.5	0.0	75.0	4.13	0.835
	9년 초과	6	0.0	16.7	0.0	50.0	33.3	16.7	83.3	4.00	1.095
보유 자격 등급	1급	4	0.0	0.0	25.0	25.0	50.0	0.0	75.0	4.25	0.957
	2급	10	0.0	10.0	0.0	70.0	20.0	10.0	90.0	4.00	0.816
	3급	10	0.0	0.0	20.0	40.0	40.0	0.0	80.0	4.20	0.789

* p<.05, ** p<.01, *** p<.001

※ 보유 자격 등급 무응답 1명 분석 제외

④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 개선 필요 사항 (주관식)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 응답 분석 결과에서는 보수교육의 목적을 단순 이수 확인이 아니라 전문성 유지와 자격 신뢰의 주기적 갱신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재정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평가·환류를 포함한 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사례 중심의 구성과 참여·몰입을 유도하는 운영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이 드러났다.

특히, 현행 보수교육 운영상의 한계에 관한 진술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개선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저명한 교수님들의 양질의 강의지만, 리뉴얼 간격이 생각보다 길어 같은 강의를 중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현재 이러닝 강의형식으로 대부분 진행되다 보니 강의만 쳐두고 다른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와 같은 응답이 제시되었고, 이는 콘텐츠 갱신 주기와 참여 방식이 학습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제도의 위상과 연계 측면에서는 “청소년상담사는 전문성을 갚고 닦아야 하는 윤리가 중요한 자격 기준이므로, 보수교육 이수 여부로 5년 정도 단위의 갱신을 통해 본 자격증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과 같은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보수교육이 콘텐츠의 적시성, 참여·몰입을 담보하는 운영, 평가·환류를 통한 성과 확인, 자격 체계와의 연계를 함께 갖출 때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제도의 미래 방향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견 (주관식)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주관식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문성 강화, 현장 적합성 제고, 평가 전환의 세 축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교육·연수·슈퍼비전의 연계를 강화해 역량을 실제로 드러내는 구조를 만들자는 의견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전문성 강화 : 급수별로 교육 강화, 취득 연수, 인성적 검사 / 체계화 : 면접기준, 자격연수 등 / 현장 및 사례중심 : 자격시험이나 연수에서 현장 사례중심 내용 강화”와 같은 응답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교육·시험·연수의 접점을 넓히고, 급수별 책무에 맞춘 학습·평가 체계를 정렬해야 한다는 방향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현장 적합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청소년상담 현장에서의 실무 맥락에서의 적용력·대응력을 검증 하자는 요구로 나타난다. 예컨대 “전문성 강화, 현장 적합성, 또 하나 상담사 개인의 인성검사 필수 예를 들어 MMPI등 실시”와 같은 응답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역량과 태도까지 포함하는 평정 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미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핵심은 체계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을 통한 전문성 강화, 사례 중심, 실습 기반 자격검정 과정을 통한 현장성 강화, 역량 중심 자격검정 평가 체계의 도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전문자격으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공공성(권위, 신뢰 등)과 실무 적합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주장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② 향후 10년을 고려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비전의 지향점에 관한 의견 (주관식)
응답자들이 제시한 향후 10년을 고려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중장기 비전은 대상 범위의 재설계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인구 변화와 청소년상담 수요 구조 변화를 고려해 서비스의 경계를 확장하자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만을 고정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응답으로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해 상담 서비스의 수요 기반이 축소되어 개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하기보다는 청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은 아동·청소년·청년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조치가 요구됨”과 같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진술은 서비스 수요의 변동을 제도 설계에 반영해 대상-역할-역량의 삼박자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비전의 두 번째 축은 연계·협력 생태계 구축이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위상을 높이고 현장 효용성을 키우기 위해, 타 전문자격 및 공공 부문과의 기능적 연결을 강화하려는 요구가 반복하여 제시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응답으로 “앞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의 비전은 타 전문자격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구심점의 역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와 같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자격-정책-현장을 묶는 거버넌스와 데이터 흐름을 정비해, 중복과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 여건과 위상 개선이 비전 달성의 토대로 언급되었다. 이는 인력 유지·역량 강화·서비스 품질이 맞물린 문제로, 자격의 권위와 처우가 동반 상승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예컨대 “학회 자격증 만큼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국가 자격증으로의 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해당 자격 취득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람”과 같은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응답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응답자들이 제시한 향후 10년을 고려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비전과 지향점은 대상 확장-연계·협력-현장 지원을 삼각 축으로, 자격의 정체성과 생태계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3. 시사점

FGI를 통해 도출된 내용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현장 실무자인 청소년상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 대한 주제를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FGI에서 나온 의견을 5가지의 큰 주제로 구분해 보았을 때, 청소년상담사 취지, 역할, 위상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였다.

FGI에서 나온 의견 중 핵심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자격 기준을 높이자는 의견과 청소년상담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현 자격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자격 기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상담 실무경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며, 상담 실무경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 또는 수련제도를 도입과 그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교육과정, 실습 또는 수련제도 시행 여건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다. 그밖에 자격검정 관련한 보완과 이와 연계된 자격연수에서의 평가 도입, 보수교육 강화 등이 추가 보완되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동시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등급 체계와 관련하여 2등급, 3등급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정부 부처,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청소년상담 관련 학회, 청소년상담 관련기관(청소년상담사) 등의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된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의된 안을 통해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예산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전문가 의견 조사는 FGI에서 나온 주요 내용에 대해 질문지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조사한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결과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조사는 자격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응시 자격부터 등급 체계, 검정 방식, 연수 및 보수교육, 그리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에 이르기까지, 현장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인식을 심도 있게 담아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들은 현재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1) 역량 중심의 응시 자격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현행 학위 중심의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긍정 응답 81.8%)를 받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넘어,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보장하는 역량 중심 체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다수는 특정 학과 졸업으로 응시 자격을 한정하기보다,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과목이수제’ 도입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전체 평균값 +1.09). 특히 2급과 3급 자격 보유자 집단에서 이러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우수 인재의 진입을 유도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1급 자격 보유자 집단에서는 오히려 현행 유지를 선호하며 ‘과목이수제’ 전환에 강한 반대를 보였다는 점이다(평균값 -1.67).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숙련된 전문가일수록 특정 학위 과정이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제도의 유연성과 접근성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책 설계 시 세대와 등급 간의 시각차를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실무경력 대체 방안에 대한 높은 수용성. 실무경력을 표준화된 ‘실습·수련’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반(긍정 응답 64.0%)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1급 자격 보유자와 5~9년차 경력자 집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기관별·지역별 편차가 큰 현행 실무경력 인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슈퍼비전과 평가를 통해 예비 상담사의 현장 역량을 담보하자는 현장의 강력한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 신뢰성을 담보할 보완 장치의 필요성. ‘과목이수제’나 ‘실습·수련제’ 도입을 지지하는 의견과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 모두,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통적인 보완 사항으로 ‘명확한 기준 설정’, ‘표준화된 인증 및 평가’, ‘체계적인 슈퍼비전’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는 응시 자격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든, 그 신뢰성은 구체적인 품질관리 기전 설계에 달려있다는 점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현행 응시 자격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되, ‘과목이수제’와 표준화된 ‘실습·수련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자격제도의 개방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응시 자격이 잠재적으로 확장될수록, 전문성의 기준을 유지하고 명확

한 경력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각 자격 등급별 고유한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2) 등급별 역할과 경력 경로 명료화를 통한 자격 체계 안정화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대다수는 현행 3등급 체계(1·2·3급) 유지를 강력하게 선호하는 것(전체 평균 - 2.12)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등급 체계가 자격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도 개선의 방향은 단순히 등급의 수를 조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등급별 역할과 책무를 명료화하고 그에 맞는 역량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더욱 더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현행 3등급 체계가 ‘진입(3급)-성장(2급)-숙련(1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경로로서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관식 응답에서 “3급은 예방적·보편적 상담, 2·1급은 위기 개입·심화 상담”으로 역할을 구분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등급 체계가 상담사의 전문성이 심화되는 과정을 유도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등급 체계 유지에 대한 높은 지지 이면에는, 등급 간 직무 난이도, 역할, 책무의 차별성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1급은 ‘슈퍼바이저/관리자’, 2급은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에 맞춰 자격검정, 연수, 보수 교육 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등급별 위계와 역할이 명확할 때 자격의 전문성과 공신력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현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 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결국 각 등급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자격 취득 및 관리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등급별 역할과 필요 역량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각 등급의 자격검정 과목과 평가 방식을 그에 맞게 정교화해야 한다는 과제로 이어진다.

3) 현장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자격검정 및 연수 과정의 질적 고도화

현행 자격검정 제도는 필기시험의 적절성에 대해 높은 평가(긍정 88.0%)를 받고 있으나, 면접시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긍정 64.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격차는 자격검정 과정이 단순 지식 확인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장성’과 ‘실질 역량 검증’ 강화라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며, 시험부터 연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 지식 암기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필기시험에서는 “현장 중심의 사례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면접시험에서는 “표준화된 루브릭”에 기반한 “사례 기반 역량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마주할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해야 자격의 변별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현장의 분명한 신호이다.

나아가 자격 취득 후에도 상담사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자격 연수 평가 결과를 자격증 교부에 직접 연계하는 방안(긍정 80.0%)과 보수교육 이수를 자격 갱신과 연동하는 방안(긍정 80.0%)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일회성 자격 취득이 아닌,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검증을 통해 상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책임 의식을 반영한다.

조사 응답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면, 자격 연수와 보수교육은 이론 전달을 넘어 “사례 중심·체험 중심”的 실습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유연한 참여 방식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한 실습·수련”이나 “경력 단절자 재적용 교육”과 같은 새로운 훈련 방식의 도입 검토는 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신뢰성은 평가와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달려있다. 지식 검증을 넘어 실제적 역량을 평가하고, 일회성 취득이 아닌 지속적 갱신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도 내실화 노력은 단기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자격제도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틀의 비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비전과 생태계 구축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단기적 개선을 넘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의 지속가능성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타 전문 영역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며, 현장 전문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총체적 노력에 달려있다.

서비스 대상의 확장과 재정의. 청소년 인구 감소와 같은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의 대상을 기존의 ‘청소년’에서 ‘아동·청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시장을 넓히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격증의 사회적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연계·협력을 통한 전문 생태계 조성. 자격제도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타 전문자격과 연계하고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를 통해 정책과 현장을 잇는 견고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소년 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자격제도가 전문 인력 양성을 넘어, 청소년 지원 정책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제도의 최종적인 성공은 자격 취득자의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에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자격의 공신력과 현장 전문가의 처우가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는 시대적 변화를 읽고 서비스 대상을 유연하게 확장하며,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격의 권위와 현장 처우를 함께 높이는 총체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소년상담사는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정책 제언

— 1. 제언

1. 제언

2003년 시작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는 2025년까지 큰 개정없이 운영되어져 왔지만 그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관련기관, 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서로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오랜 기간동안 평행선을 유지하며 20여 년을 지내온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에서는 국가자격증 응시 제한 등 차별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서도 응시에 제한을 두는 차별제도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금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청소년상담사 관련 선행 연구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행정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신문고 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FGI, 전문가 의견 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1.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과 2.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크게 2가지를 제안하였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자체만을 개선하기보다 현재 청소년상담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제 상담 현장의 보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자격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세부 정책 제언으로는 1-1. 청소년상담 인력 충원, 1-2. 청소년상담 시설 개선, 1-3. 청소년상

답 실습수련·교육·연수 확대·강화, 1-4. 청소년상담 우수 인력 확보 및 소진 방지 대책 마련으로 총 4가지를 제시하였다.

2.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 정책제언으로 2-1. 청소년상담사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2-2. 청소년상담사 등급체계 개선, 2-3. 자격검정 개선, 2-4. 자격연수 평가제도 도입 등 자격연수 강화, 2-5. 자격갱신제 도입 등 보수교육 강화로 총 5가지를 제시하였다.

표 V-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관련 정책제언

정책제언	세부 정책제언
1.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1-1. 청소년상담 인력 충원 1-2. 청소년상담 시설 개선 1-3. 청소년상담 실습수련·교육·연수 확대·강화 1-4. 청소년상담 우수 인력 확보 및 소진 방지 대책 마련
2.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1. 청소년상담사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2-2. 청소년상담사 등급체계 개선 2-3. 자격검정 개선 2-4. 자격연수 평가제도 도입 등 연수 강화 2-5. 자격갱신제 도입 등 보수교육 강화

1)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1-1. 청소년상담 인력 충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향상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상담 실습이나 수련 제도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기관에서 실습생, 수련생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청소년상담 지도 인력 즉, 수퍼바이저와 같이 실습 및 수련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할 수 있는 인력과 센터 내에서의 실습생, 수련생 등에 대한 교육 지도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적정 수준의 실습생이나 수련생 등 받았다 하더라도 수퍼바이저가 1대1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지도 감독 인력의 업무로 수행되기보다 센터 전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실습생 한 명을 받아 교육 및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1명을 지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명을 위해 전체 센터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사후 준비 사항이 많다.

그런데 기존 센터 인력에게 상담 실습과 같은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현재 과중한 상담 업무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상담 인력을 충원하여 실습, 수련 등의 업무에 대비하여 청소년 상담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한 청소년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예비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공적기관 및 센터에 상담인력 충원을 통해 상담 실습/수련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1-2. 청소년상담 시설 개선

청소년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과 기자재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상담에 있어 공간이 주는 분위기는 상담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맞춤 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 집단상담실 등의 마련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 상담을 교육할 수 있는 물리적인 부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담실 ONEWAY MIRROR, 영상 시설,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기구 등 다양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ONEWAY MIRROR인 경우는 숙련된 청소년상담사의 상담 과정을 관찰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초보(예비) 청소년상담사의 상담 과정을 살펴보면서 수퍼비전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실 시설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1-3. 청소년상담 실습수련·교육·연수 확대·강화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이전과 취득 이후로 구분하여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상담사 취득 이전 예비 청소년상담사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상담 실습/수련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청소년상담을 위해 직간접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육 및 훈련 방안으로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상담 실습/수련 교육이 개설되어 예비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교육적 지도·훈련이 필요하며, 상담 실습/수련 등과 관련해서는 수퍼비전 체계가 구축되어 예비 청소년상담사 및 현장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청소년상담 관련기관 내부 수퍼비전 체계를 갖추거나, 외부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 연계를 통한 수퍼비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담 실습/수련 교육 및 수퍼비전 체계는 민간에서의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성을 도모하는데 무리가 있어 국가 정책적 지원방안을 통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도입과 수퍼비전 체계 구축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과정을 통해 점차 관계성을 높이는 과정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상담 자체에 집중하기에 앞서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친밀해지는 과정을 몸으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상담적 접근 이전에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 과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예비 청소년상담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방안으로 적용해 볼만한 예로서 교원자격증 관련으로 교육실습 외에 교육봉사⁷⁾ 활동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해 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7) “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

* 교육봉사활동 실시기능학교(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또는 과목)에서 실시할 수 있음)

①『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②『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③『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④『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⑤ 타 법령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⑥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재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키움센터 돌봄(아이꿈누리터) 제외(사유: 이용료 청구 기관으로 봉사의미 부적합)

* 출처: 한양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교육봉사. (인출일: 2025.09.04.)

<서울 주요 대학 등 21개 대학, 기초학력 협력강사 교육봉사 학점 인정>

서울교육청은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수도권 소재 21개 대학의 교원양성기관과

30일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교육봉사(학점인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업무협약(MOU)'

업무협약 체결 대학: 가천대, 기독교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삼육대, 서울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신한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총신대, 한양대, 흥익대(21개 대학)

* 출처: 서울교육소식 보도자료 (2021.03.29.). 서울시교육청-교원양성기관 간 기초학력 지원 업무 협약.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이후 시행되는 자격 연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과, 전공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상담의 이론과 같은 공통 교육과정에서부터 최신 사회현상을 반영한 상담 이론 및 적용 사례 등과 같은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격 연수가 현재는 온·오프라인 교육에 강의식 수업에 치중되어 있지만 등급별, 영역별 사례 논의 등 세미나, 집단 토의 방식의 다양한 방법을 채택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청소년상담 교육 현장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에서도 교육 내용이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교육 훈련으로는 개별적으로 교육 수강을 찾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보수교육이 전부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이 현실화와 꾸준한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과 청소년상담에 대한 교육 및 경력 등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격 연수와 보수교육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주도하는 형태에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 연수와 보수교육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주도·운영하는 것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거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전반적인 기획이나 운영 관리는 맡아서 전체 총괄은 하지만, 교육 내용과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은 거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보수교육 등의 형태로 지역에서 요구에 대응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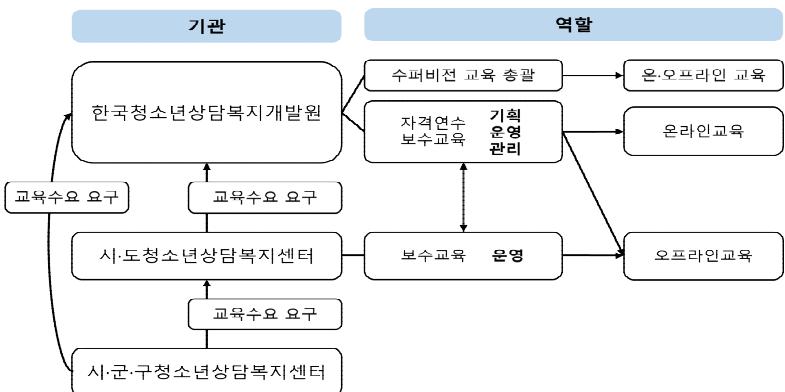


그림 V-1.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역할 분담 방안(안)

1-4. 청소년상담 우수 인력 확보 및 소진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

전문성을 확보한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상담 현장에 있다는 것은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회현상 및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에서도 조사되었듯이 이직에 대한 욕구가 50% 이상의 수치를 보인다는 점과 전문적인 상담 분야로 가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도 70%가 넘게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유능한 청소년상담사의 이직이 늘고 있다거나 향후 늘어날 확률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청소년상담 관련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청소년상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처우 중 임금적인 요소도 중요한 요인으로 외부 상담 인력과의 차이, 내부 상담 인력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청소년상담사의 근로의욕을 낮추는 시인이다. 단적인 예로서, 성평등가족부 자립지원과 소속이나, 성평등가족부 보호과의 인터넷중독예방해소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의 특별지원사업, 교육부의 꿈이음사업(미취학학교밖) 등 같은 부처 내에서도 여러 과의 일들을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와 사업에 따라 내리는 지침이 다르고, 급여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어 실무자 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 관련기관에서 과중한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소진과 이직도 빨리 찾아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최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청소년상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청소년상담 현장의 열악한 조건에 대한 개선은 무관심 속에 있는 상황이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인재를 적절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모든 일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유능한 청소년상담사가 오랫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2)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1. 청소년상담사 관련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 관련법 중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은 5개 조항,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은 6개 조항과 관련성이 있다.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정책제언으로 제시된 청소년 상담사 등급 체계(3급 내용 수정·보완 또는 3급→2급 전환에 따른 내용 수정·보완), 자격검정(등급별, 영역별 등 검정 과정 변화), 자격 연수 평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연수 강화와 자격갱신제 도입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아래 표 V-2.에 제시된 조항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표 V-2. 청소년상담사 관련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기본규칙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5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3단 비교. (인출일: 2025. 09. 23.)

2-2. 청소년상담사 등급 체계

청소년상담사 등급 체계는 2003년 이래로 지금까지 줄곧 3등급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국가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학력차별 요소가 있는 자격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소년상담사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유지되던 등급제를 개정하자는 제언은 있었으며, 3등급 제도에 대한 응시 자격 조정하거나 3등급제에서 2등급제로의 전환 등 청소년상담사 등급 체계를 개정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는 있었다. 현재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등급을 3등급 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2등급 체계로의 변화를 꾀하자는 의견이 어느 등급 체계의 유불리를 떠나 각자의 타당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현재 등급 체계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학위 취득 여부에 따라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 청소년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와 상담 실무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로 압축할 수 있다.

대체로 학위 취득 여부만으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는 점에서 학위 취득 외에 상담 실습 또는 수련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부분 상담 실무경력을 쌓은 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점은 3등급 체계, 2등급 체계에 대한 주장과 관계없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단, 상담 실습 및 수련 등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며, 이는 대학을 포함한 전문교육기관과 청소년기관 현장에서 실습이나 수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감당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추가적인 물음에 막히게 된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시점, 추가적인 보완책 등이 마련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도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교육기관과 청소년상담 관련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대학에서 청소년상담사를 준비하는 대학생인 경우, 상담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기에 적정한 유예기간(개정년도부터 4년 유예기간 설정)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 자격증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석사/박사 대학원 과정에서는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청소년 동반자⁸⁾ 등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점이 있어 기존 제도와 병행하고 상담 실습 및

8) 청소년동반자 자격요건 중 일부: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수련 등의 제도를 같이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 실무경력 경험 및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쟁점은 청소년상담사에서 상담 관련 분야에서의 학위 취득 여부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이다. 1급 청소년상담사인 경우, 청소년상담사에서 1급이라는 자격이 가지는 위상을 볼 때,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상담 자격을 취득해서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가와 2급과 3급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수퍼비전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학위 취득 여부보다 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것이 청소년 상담 전문성 요건으로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1급인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을 상당 기간 가진 후 1급 청소년상담사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급 청소년상담사의 위상과 상담 수련도, 상담 지도인력 등의 역할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등급 체계 개정을 위해서는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에서 각 학과마다 배우는 과목에 차이가 있어 청소년상담사 자격에 필요한 표준교과목을 규정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상담사 자격에 있어 다양한 학과, 전공이 차이를 줄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등급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호부터 제○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기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조항을 현재 학문 분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과목이수제와 상담 실무경력을 도입하자는 제언과 관련해서도 청소년상담관련 표준교과목을 정하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작용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국가자격증에 학력 차별관련 시정 요청 건과 관련하여 상담관련분야 학위 취득자 외에 비상담관련분야 학사 취득자, 전문학사 취득자,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게도 규정된 과목을 이수하고 상담 실무경력을 채우기만 하면 응시 자격을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목이수제 도입하여 최소 청소년상담을 하기 위한 교육적 기초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실습/수련 등 제도를 추가하여 청소년 상담의 실무 상담경험을 갖춰 청소년상담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갖출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출처: 여성가족부 (2025).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Ⅱ). p.171)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 청소년상담사에게는 상담 실무경력을 갖추는 방안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담 실습(수련) 등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상담 경험이 확대되어야 하며, 상담 실습(수련) 외 상담관련 활동을 통한 추가 경력 산정(교육부-교육봉사 / 학술대회, 세미나, 사례회의 등 참석 및 발표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추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 청소년상담사가 실습기관⁹⁾으로부터 적절한 대우와 교육,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실습생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실습 과정 관리, 실습 대상자의 인권 보호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도인력을 두고, 예비 청소년상담사가 적절한 상담 실무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4)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인출일: 2025. 09. 29.)

기존 등급체계	3등급체계 (1안)	2등급체계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실무경력 4년 이상 → 2급 청소년상담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실무경력 α 년 이상 → 2급 청소년상담사 + 실무경력 α 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실무경력 α 년 이상 → 2급 청소년상담사 + 실무경력 α 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실무경력 3년 이상 → 3급 청소년상담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α(실습/수련 등 시간) → 3급 청소년상담사 + 실무경력 α 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α(실습/수련 등 시간)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α(실습/수련 등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취득자 + 실무경력 2년 이상 → 비상담관련분야 학사 취득자 + 실무경력 2년 이상 → 비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취득자 + 실무경력 4년 이상 → 고졸 취득자 + 실무경력 5년 이상 → 제O호부터 제O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α(실습/수련 등 시간) → 제O호부터 제O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p>제O호부터 제O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p> <p>※ 개정: “학문분야” → “과목이수 + α(실습/수련 등 시간 or 기간 설정)” 전환 개정 필요</p>
<p>※ 현재 고시내용 - 제O호부터 제O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빌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p>		

그림 V-2. 청소년상담사 등급체계 개정(안)

표 V-3. 청소년상담사 등급체계 개정(안) 예시

구분	기준 등급체계	3등급체계 (1안)	2등급체계 (2안)
1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 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상담 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삭제 -	- 삭제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 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상담 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 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상담 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급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1,000시간 이상(대학원과정의 수련/실습 등과 학술대회, 세미나 등 참여 시간 포함)인 사람 - 삭제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500시간 이상(대학원 과정의 수련/실습 등과 학술대회, 세미나 등 참여 시간 포함)인 사람 2.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800시간 이상(학부과정의 수련/실습 등과 학술대회, 세미나 등 참여 시간 포함)인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삭제 -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구분	기준 등급체계	3등급체계 (1안)	2등급체계 (2안)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 인정 기관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500시간 이상(학부과정의 수련/실습 등과 학술대회, 세미나 등 참여 시간 포함)인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삭제 -	<p>→ 8시간: 1일로 간주 → 30주×2일×8h =480시간 → 52주×2일×8h =832시간 교육기간: 학사(4)-석사(2)-박사(2)</p>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삭제 -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삭제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삭제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각 등급별에 마지막 항에 적시된 규정 개정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로 학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필수·선택 과목 등 표준교과목 규정하여 과목이수제 도입과 상담실무 경력 포함하여 개정 필요.

→ 학과중심과 과목이수제 병행 필요.

※ 수퍼바이저 자격요건: 1급(2급) 청소년상담사 취득 후 상담 실무경력 1년(6년) 이상

2-3. 자격검정 개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기시험인 경우, 교과목에 대해 등급별, 영역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시험문제 출제가 되어야 하고, 필기시험

내용과 면접에서 제시되는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반면 필기시험 문제와 면접 문항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기 문항과 면접 문항 각각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출제 위원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회 등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이의제기 등 많은 내용은 대부분 면접 과정에서 기준 등의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면접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면접관 자격 기준 강화, 면접관 교육, 면접 장소 확대 등이 주로 나오는 의견이다.

필기시험은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없는 객관식이라는 점과 면접은 평가자의 주관성, 응시자의 의견 전달이 한계성 등이 있다는 점에서 필기/면접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도입하여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응시자 간 토론 및 평가자의 추가 질의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더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면접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기와 면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 중 하나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합격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합격률이 2021년 40.1%에서 2024년 51.1%로 4년간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격검정 합격 인원이 2024년 4,489명에서 2025년 6,256명으로 1년 동안 2천명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자격연수, 취업처 등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청소년상담사 합격자 수를 늘려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위상, 제도, 처우 개선 등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지만, 자격 수요 등 제반 여건 등이 같이 수반되지 않고 인력만 늘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자격증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20여년 동안 별다른 개정없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한 향후 사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고 예비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 확대를 동시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남발을 막고 적정선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상담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2-4. 자격 연수 평가제도 도입 등 연수 강화

청소년상담사 자격 연수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섭외하여 좋은 내용으로 연수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연수제도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자격 연수에서 온라인 교육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강의식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 영역별 교육의 다양화와 사례에 대한 논의, 토론 수업 방식으로 연수가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격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앞선 자격검정 중 면접에서 청소년상담사로서의 자질이나 태도를 갖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청소년상담사가 타 상담관련 자격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격증 취득이 쉬워서 취득하는 자격이 아니라 학식과 인성,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평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격 연수에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을 상담하는 전문가로서 자질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검정에서 합격하고 자격 연수를 수강만 하면 자격증이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형태에서 평가제도 도입으로 자격 연수에서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에서 최종 탈락을 한다거나 또는 자격검정의 유효성을 1회~2회를 인정하고 자격 연수를 재수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5. 자격갱신제 도입 등 보수교육 강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별적으로 교육을 듣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하는 방법은 보수교육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은 청소년의 변화만큼이나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교육의 현실 사회를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상담 일선 현장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교육 기회, 수퍼비전 등을 통해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자격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상담 경력이 오랫동안 중단되거나 현재의 상담 수준에 만족하여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상담가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불안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상담사는 자격 갱신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상담관련 자격증인 경우, 자격 갱신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 심리관련 자격증 기간은 없는 나라도 물론 있으나, 조사된 대부분 해외 사례인 경우는 1년에서 7년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자격 갱신 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청소년상담사도 자격 갱신과 관련하여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사인 경우 갱신 기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으로 바로 추진하기보다 3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다가 사회의 변화 속도, 청소년 문제에 신속한 접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갱신 기간을 짧게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1안(참조. 그림 V-3)과 2안(참조. 그림 V-4)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안과 2안의 큰 차이는 3등급제와 2등급제에 대한 개정이다. 등급제 개정을 제외하고서는 1안과 2안은 동일하게 제안되고 있다. 등급제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담 실무경력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 기존 학위 취득 여부에 따라 주어지던 응시 자격에 추가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제기된 학력 차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비상담관련 분야 학사와 전문학사, 고졸을 제외하고 이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고시한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학력 차별에 대한 부분을 없도록 하고자 한다.

등급제 내용의 개정되면 그에 따른 자격증 이전/이후 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변화, 상담 실습/수련 등의 교육훈련제도에 따른 교육기관과 청소년상담 현장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격검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면접에 서술형/논술형 도입 등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도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격연수에서의 평가제 도입, 보수교육에서 자격갱신제 운영 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도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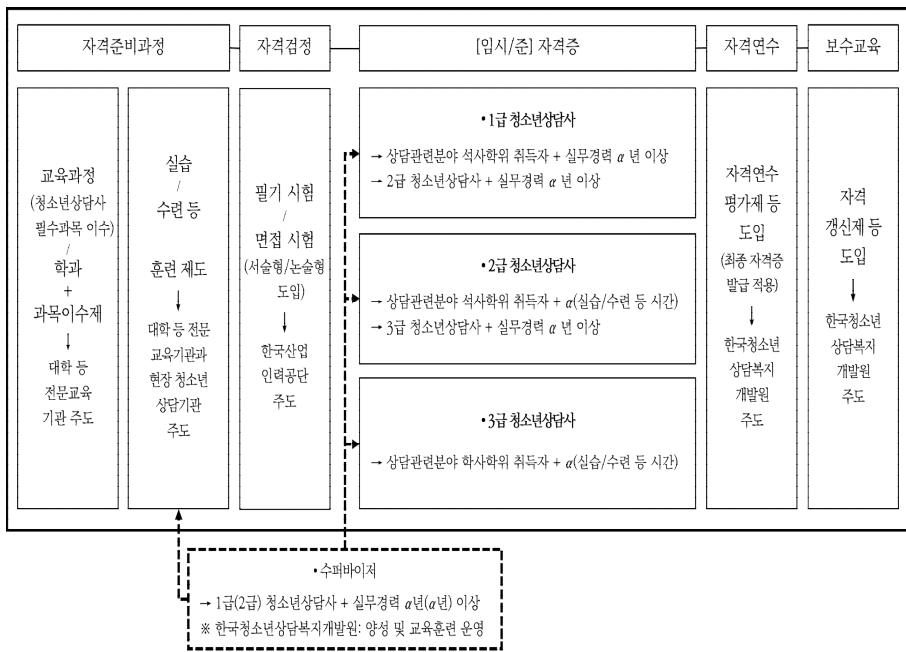


그림 V-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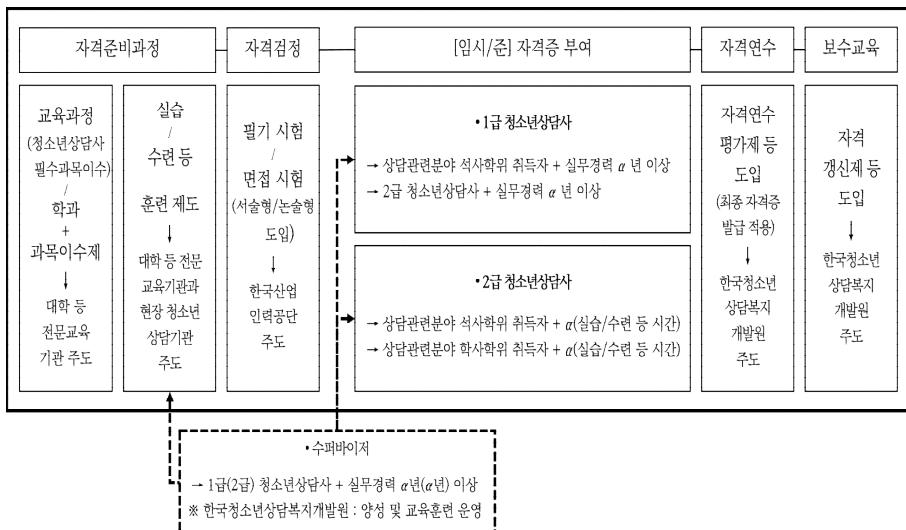


그림 V-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2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과 저서]

-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동일, 이주영 (2022).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연구 (2013-105)**.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김택호 (1993). **청소년상담교육과정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
- 서영석, 김동일, 고운영, 김민선, 김애란, 최민영 (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2-58)**. 서울: 여성가족부.
- 손보영, 임지숙, 백상은 (2024).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성: 해외 법제화 사례와 국내 자격제도 비교.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36(4), 1471-1498.
- 여성가족부 (2024). **2023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 (2025).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II)**.
- 오익수, 이명선, 남상인 (1994). **청소년 상담인력개발 정책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최창욱, 좌동훈 (202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21-R54)**.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최창욱, 좌동훈, 남화성, 정지희, 이종원 (202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20-R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자료 (2025). **청소년상담사 응시 지원현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01.). **2023년 1분기(2~3월)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연수생 지침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 현황(2021~202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5).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규모 및 수료 인원 추이(2019~202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5).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자료.**

한상철, 길은배, 김진호, 김혜원, 문성호, 박철웅, 방은령, 송민경, 송병국, 오승근, 유진이, 조아미, 서정아 (2009).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순길, 이창호, 안희정, 조은경 (2000).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 실시에 관한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87).**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황순길, 장미경, 권해수, 김은영, 박관성, 강석영 (2005). **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자격검정 및 연수과목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인터넷 자료]

서울교육소식 보도자료 (2021.03.29.). 서울시교육청-교원양성기관 간 기초학력 지원 업무 협약,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966&step1=3&step2=1> (인출일: 2025.09.04.)

여성가족부 (2025.03.28.). 청소년상담사양성현황,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sSn=704778 (인출일: 2025.06.17.)

[참고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인출일: 2025. 04. 1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3조제4항 관련) [별표 2] (인출일: 2025. 04. 29.)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인출일 2025. 03. 28.)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 관련) (인출일: 2025.03.26.)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1] (인출일: 2025. 04. 14.)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2] (인출일 : 2025. 04. 29.)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3단 비교. (인출일: 2025. 09. 23.)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포털, <https://portal.scourt.go.kr>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 3조 관련). (인출일: 2025. 09. 2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 보수교육 (인출일: 2025. 03. 31.)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란? 급별역할. (인출일 : 2025. 03. 26.)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란? 정의 및 활동. (인출일 : 2025. 03. 27.)

한양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 <https://teacher.hanyang.ac.kr>

○ — 류무

부록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를 위한 FG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청년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2025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되어 온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제언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통계 처리되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내용은 FGI 참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되며 관련 지급이 완료된 이후 폐기합니다.

2025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좌동훈 선임연구위원(044-415-2216)

변주영 연구원(044-415-2205)

연구 참여 동의서

-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연구 활용(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및 조사 대가 지급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령, 성별, 소속기관, 부서(학교명-학과/학년), 직위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폐기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02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Q_1. 귀하께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현재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가 ‘학과 전공’과 ‘실무 경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학과·전공 관련 기준

-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위 10개 학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나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상담관련 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기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 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Q_1_1. 귀하께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현재의 ‘학과 중심’에서 ‘과목이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만약 과목이수제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Q_1_2. 현재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서는 ‘실무 경력’을 중요한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실무 경력’을 대체할만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대안 중 하나인 ‘상담 실습(수련)’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만약 상담 실습(수련)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Q_2. 현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3등급체계(1급/2급/3급)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기준 관련하여,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학력에 따른 실무 경력 차등이 학력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선 요구(**학력 차별 철폐를 위한 비전공자인 일반학사, 전문학사, 고졸의 실무 경력 동일하게 조정 필요**)가 제시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학력·경력 기준

•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4년 이상
- 2급 청소년상담사+실무경력 3년 이상

•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3년 이상
- 3급 청소년상담사+실무경력 2년 이상

•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2년 이상
- **비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2년 이상**(지적사항)
- **비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4년 이상**(지적사항)
- **고졸 취득자+실무경력 5년 이상**(지적사항)

Q_2_1. 귀하께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3등급 체계로 유지할 경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_2_2. 귀하께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2등급 체계로 조정할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Q_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서 필기/면접시험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 시험의 경우,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답변 해석의 차이 등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과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_3_1. 필기시험을 개선해야 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Q_3_2. 면접시험을 개선해야 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Q_4. 현재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는 총 100시간으로, 온라인 이러닝 연수와 집합 연수를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연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_4_1.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Q_4_2. 만약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시간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_5. 귀하께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수교육의 효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Q_6. 귀하께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성명		연령(만)	
소속기관 (학교명)		부서 (학과와 학년)	
직위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청년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2025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되어 온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제언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통계 처리되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동훈 선임연구위원(044-415-2216)

변주영 연구원(044-415-2205)

연구 참여 동의서

-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연구 활용(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및 조사 대가 지급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연령, 성별,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 관련 경력, 청소년상담사 자격 보유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025 년 월 일

성 명 :

(서명)

I.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요건

01.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학위 수준(학사·석사·박사)에 따른 응시 자격 부여 방식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적절성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혀 적절하지 않음 | 적절하지 않은 편임 | 보통 | 적절한 편임 | 매우 적절함 |

1-1. 현행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 자격으로 **박사학위**를 기준으로 두는 방식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급 (박사학위) 적절성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혀 적절하지 않음 | 적절하지 않은 편임 | 보통 | 적절한 편임 | 매우 적절함 |

1-2. 현행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 자격으로 **석사학위**를 기준으로 두는 방식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급 (석사학위) 적절성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혀 적절하지 않음 | 적절하지 않은 편임 | 보통 | 적절한 편임 | 매우 적절함 |

1-3. 현행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 자격으로 **학사학위**를 기준으로 두는 방식은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급 (학사학위) 적절성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혀 적절하지 않음 | 적절하지 않은 편임 | 보통 | 적절한 편임 | 매우 적절함 |

02.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현행 ‘학과·전공 기준(※아래 자료 참고)’과 ‘과목이수제 (핵심·공통 과목 이수 충족)’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학과·전공 관련 기준

-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위 10개 학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나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상담관련 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별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기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 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전반적인 의견

현행 학과명 중심 ⑤ ④ ③ ② ① ① ① ② ③ ④ ⑤ 과목 이수 중심
인정 ← ← 매우 바람직 매우 바람직 → → 인정

2-1.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으로 현행 ‘학과·전공 기준’과 ‘과목이수제 (핵심·공통 과목 이수 충족)’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급에 대한 의견

현행 학과명 ⑤ ④ ③ ② ① ① ① ② ③ ④ ⑤ 과목 이수 중심
중심 인정 ← ← 매우 바람직 매우 바람직 → → 인정

2-2.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으로 현행 ‘학과·전공 기준’과 ‘과목이수제 (핵심·공통 과목 이수 충족)’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급에 대한 의견

현행 학과명 ⑤ ④ ③ ② ① ① ① ② ③ ④ ⑤ 과목 이수 중심
중심 인정 ← ← 매우 바람직 매우 바람직 → → 인정

2-3.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으로 현행 ‘학과·전공 기준’과 ‘과목이수제 (핵심·공통 과목 이수 충족)’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급에 대한 의견

현행 학과명 ⑤ ④ ③ ② ① ① ① ② ③ ④ ⑤ 과목 이수 중심
중심 인정 ← ← 매우 바람직 매우 바람직 → → 인정

03. 귀하께서 선택하신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나 보완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04.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서는 실무경력을 중요한 응시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력에 따른 실무경력 요구 기준 차등 적용이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경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예: 상담 실습/수련 제도 등/교육부-교육실습, 교육봉사 등)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방안 도입 의견

- | | | | | |
|-----------------|-----------------|---------|-------------|-------------|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 ②
적절하지 않은 편임 | ③
보통 | ④
적절한 편임 | ⑤
매우 적절함 |
|-----------------|-----------------|---------|-------------|-------------|

※ 현행 청소년상담사 응시 자격 학력·경력 기준

•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4년 이상
→ 2급 청소년상담사+실무경력 3년 이상

•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3년 이상
→ 3급 청소년상담사+실무경력 2년 이상

• 3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2년 이상
→ 비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2년 이상(지적사항)
→ 비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실무경력 4년 이상(지적사항)
→ 고졸 취득자+실무경력 5년 이상(지적사항)

05. 만약 실습/수련 제도를 도입한다면, 운영 조건(시간, 인증 방식 등)에서 어떤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06. 실습/수련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도입해볼만한 제도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관식)

[답변 상자]

II.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체계

07.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을 현행 3등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또는 2등급 체계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등급체계 개편 의견]

현행 3등급 체계 유지 비람직	⑤ ④ ③ ② ① ① ① ② ③ ④ ⑤	2등급 체계(1급·2급) 개편
	← ← 매우 바람직	→ → 매우 바람직 → →

08. 귀하게서 선택하신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이나 보완 사항(예: 등급별 직무 명확화, 승급 요건 개선, 수퍼바이저 제도 도입, 실습/수련제도 강화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상자]

III.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체계

09. 현행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이 협장 직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검정과목 적절성]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	④ 적절한 편임	⑤ 매우 적절함
--------------	--------------	------	----------	----------

10.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의 필수·선택 구성을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택과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필수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등급체계 개편 의견



1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또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답변란)

※ (문항 09~11. 참고자료)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 검정 과목

등급		현행 청소년상담사 검정 과목		
1급	필수(3)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택(2)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필수(4)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선택(2)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필수(5)	·상담이론 ·발달심리 ·학습이론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선택(1)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IV.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전형 및 평가 방식

12.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기시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면접시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1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장·시례 중심 문항 강화, 직무역량 기반 문항 반영 등)

14.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면접시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면접관 표준 매뉴얼 구조화, 다면평가 방식 운영, 평가항목 구체화, 채점루브릭 개발 등)

15.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면접시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관식 문제와 병행 면접 실시, 면접관 표준 매뉴얼 구조화, 다면평가 방식 운영, 평가항목 구체화, 채점루브릭 개발 등)

V.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16.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원서접수→필기시험→면접시험→서류심사→최종합격→자격연수→자격증 교부” 절차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자격검정을 통해 최종 합격하더라도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격연수 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격증 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격연수 평가부언제도

(1)	(2)	(3)	(4)	(5)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1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 현행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의무대상 기관에서 청소년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수강해야 합니다. 보수교육과 자격증 갱신과 연계하는 것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교육자격증갱신 연계

(1)	(2)	(3)	(4)	(5)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편임	보통	적절한 편임	매우 적절함

19.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VI.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제도의 미래 방향

20.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예: 전문성 강화, 현장 적합성, 제도 운영의 공정성 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란]

21. 향후 10년을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비전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독자적 국가자격 정체성 강화, 타 전문자격과 연계 강화 등)

[답변란]

조사 참여자 개인 정보

연령(만)	() 세	성별	() ① 남 () ② 여		
소속기관	() ① 대학 ()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③ (초중고)학교 () ④ 기타(____)				
청소년상담 관련 경력	() 년 () 개월				
청소년상담사 자격 보유	() ① 1급 () ② 2급 () ③ 3급 () ④ 미취득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인 쇄 2025년 11월 10일

발 행 2025년 11월 1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